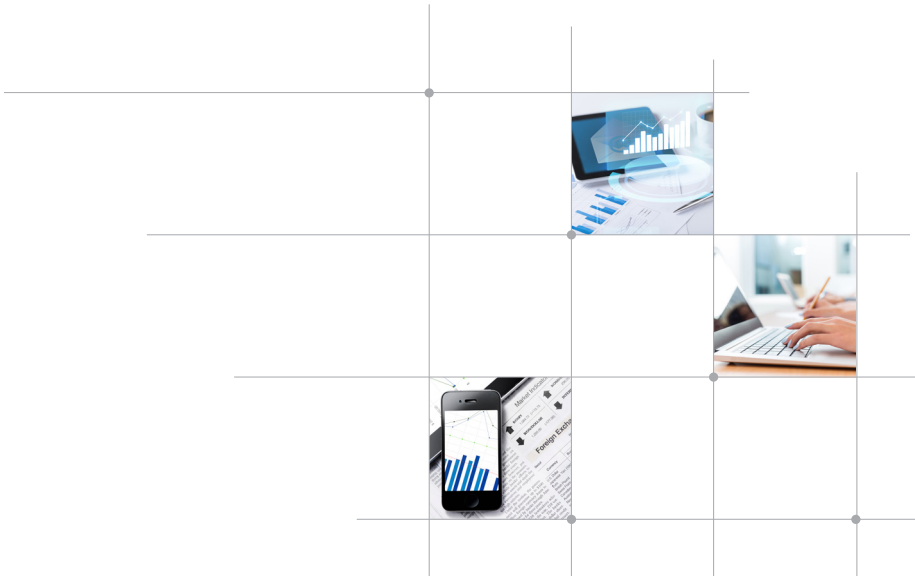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22. 12.

정다운·정재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22. 12.

정다운 · 정재호

서 언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따른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도입, 공제율의 변화 등은 정책 목적에 맞게끔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 평가는 기존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제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기존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논의에 새롭게 기여하였다.

본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사업자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이용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 도입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의 세 부담 변화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량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예외적 사항인 만큼, 예외 적용을 통한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객관적 분석은 향후 제도의 개선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의 분

석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귀속되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였으나, 중복과세 및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예외적 조항을 인정하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제도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다운 부연구위원이 연구의 책임을 맡았으며, 공동연구자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과정에서 원내 박사 및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은 본 연구를 완성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원내의 전병목 박사, 김빛마로 박사, 권성준 박사, 최인혁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외부의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동규 교수, 충남대학교 신상화 교수, 인천대학교 김지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준 익명의 평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22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따른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도입, 공제율의 변화 등은 정책 목적에 맞게끔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 평가는 기존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제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기존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도입 당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허용했던 여러 예외 조항들 및 면세 범위 등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단일세율의 효율적인 세제 구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등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외 조항으로 남아 있는 여러 제도들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역시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 조항이다. 면세 거래가 중간 거래 단계에 포함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조항을 허용함에 따라 단일세율

세계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희생하되, 경제적 왜곡의 시정을 통한 추가적인 편익을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기대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실증 검증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 등에 대한 실증 검토를 통해 정책의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기존의 수많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도입, 공제율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미시자료, 『국세통계연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 통계청의 「음식주점업 조사」 자료, 설문조사 자료,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행태를 검토한다. 가격 전가 행태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율(매출-매입/매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도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율의 변화 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도에 대한 반응, 궁극적으로는 가격 전가 등의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 전가되는 세 부담의 크기 등을 살펴본다.

1) 제도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부가가치세 실제 신고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사업체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제도 적용에 따른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행태를 먼저 살펴본다.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율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허용은 사업자들에게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 전가의 정도를 낮추게 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사업체 고정효과 이외에 업종고정효과 모형 등 다른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간이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에게서 나타났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가격 전가의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제 한도 도입이 적용된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공제 한도 도입은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업체에는 비용의 증가로 인식될 수 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새롭게 적용된 2014년 이후, 제도의 적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체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미 의제매입세액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가 도입되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업자들이 다음 단계로 전가하는 행태가 일부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전가를 줄이지만 이미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경우에는 이 부담을 일부 다음 거래로 전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율 및 공제 한도율의 조정효과도 검토하였다. 공제율 및 공제 한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 검토는 추후 연구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자체와 한도 도입의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된 것과는 달리,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공제율의 조정 및 공제 한도율의 조정을 통한 사업체의 행태 변화 효과는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다.

2) 제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자체의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귀속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등의 변화로 인해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로 받는 외식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공제 한도의 감소로 사업자들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들로의 가격 전가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제 한도의 증가로 사업자들의 비용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로의 가격 전가는 그 크기는 작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소비 항목별 유효세율의 변화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살펴보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 및 한도의 도입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측면에서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 및 한도율의 조정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3. 정책시사점 및 결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은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동 제도를 세액공제가 아닌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게 조정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두지 않고도 중복과세, 소비자 부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단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제매입을 이용하고 있는 한, 공제율의 조정을 통한 중

복과세 현상의 완화 등의 가능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 역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율도 마찬가지다. 공제 한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한도가 도입된 시점에는 일부 가격 전가의 완화효과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공제 한도율이 도입된 이후 한도율 변화를 통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율을 높여서 사업자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관찰 결과 가운데 하나는 사업자들의 행태는 공제율 및 한도율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칭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제율 및 한도율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든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든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예전과 같은 가격 혹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율 및 한도율의 주기적인 변화는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운영은 단순한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구조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면, 제도 대상의 폭을 좁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제도를 통한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역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일정 규모의 과표를 기준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여러 선진적인 시스템을 잘 흡수하여, 선진적으로 운영되는 세목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외적인 조항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세, 부가가치세제로 인한 경제 활동의 왜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최종 담세자는 소비자들이다. 지나친 예외 사항으로 인한 왜곡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원 및 세수의 확충을 위해, 소비자들의 납세 순응은 중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세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대체 가능한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 차

- I. 서론 17

- II. 선행연구 정리 21

- III. 의제매입세액공제 개념 및 제도 현황 26
 - 1. 개념적 정리(Conceptual Framework) 26
 - 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념 27
 -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거래 변화 과정 29
 - 2. 제도 현황 및 배경 35
 -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제매입세액공제 36
 - 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현황 42
 -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48
 - 라. 소결 52

- IV.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사업자 행태 53
 - 1. 기초 통계 53
 - 2. 제도 변화의 일반적 효과 57
 - 3. 제도가 사업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63
 - 가. 제도 적용에 따른 사업자 행태 분석 63
 - 나. 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 분석 75
 - 4. 추가 분석 96
 - 5. 소결 104

V.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	106
1.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분석	106
2. 소비자들의 세 부담 변화	111
VI.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설문조사 분석	115
VII.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28
부록	130

표목차

〈표 II-1〉 선행연구 정리	24
〈표 III-1〉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의 예시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	34
〈표 III-2〉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36
〈표 III-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38
〈표 III-4〉 연도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	39
〈표 III-5〉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변화	42
〈표 III-6〉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 현황	44
〈표 III-7〉 일반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 현황	46
〈표 III-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변화	49
〈표 IV-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사업체 수 연도별 분포	54
〈표 IV-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공제 금액	55
〈표 IV-3〉 특별매입세액 공제 관련 사업자들의 매출 및 매입 과표	56
〈표 IV-4〉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매출 및 매입금액 비교	60
〈표 IV-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매출 및 매입금액 비교 (과표 1천만원 이하 사업자)	62
〈표 IV-6〉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매출 및 매입금액 비교 (과표 1천만 초과~2천만원 이하 사업자)	62
〈표 IV-7〉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66
〈표 IV-8〉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67
〈표 IV-9〉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일반개인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68
〈표 IV-10〉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69
〈표 IV-11〉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69
〈표 IV-12〉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일반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70

CONTENTS

- 〈표 IV-13〉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71
- 〈표 IV-14〉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최종 소비자 거래 사업체) 72
- 〈표 IV-15〉 재활용폐자원 매입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73
- 〈표 IV-16〉 재활용폐자원 매입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일부 업종 대상) 74
- 〈표 IV-17〉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부가가치액) 81
- 〈표 IV-18〉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임차료) 82
- 〈표 IV-19〉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유형자산 잔액) 83
- 〈표 IV-20〉 공제 한도를 변화의 효과(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조사) - 법인사업자 ... 90
- 〈표 IV-21〉 공제 한도를 변화의 효과(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조사) - 개인사업자 ... 91
- 〈표 IV-22〉 공제율 변화의 효과(음식식품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개인사업자 · 93
- 〈표 IV-23〉 공제율 변화의 효과(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95
- 〈표 IV-24〉 공제율과 한도율의 변화 95

- 〈표 V-1〉 공제율과 한도 변화에 따른 지출액 변화 효과 - 외식 총액 110
- 〈표 V-2〉 공제율과 한도 변화에 따른 지출액 변화 효과 - 외식 횟수 통제 111

- 〈표 VI-1〉 일반업종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부가가치율 123
- 〈표 VI-2〉 일반업종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판매가격 123

그림목차

[그림 III-1] 거래 단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시	28
[그림 III-2]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현황	43
[그림 III-3]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 변화	45
[그림 III-4] 일반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현황	46
[그림 III-5] 일반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 변화	47
[그림 III-6] 법인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현황	50
[그림 III-7] 일반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현황	51
[그림 IV-1] 간이사업자의 매출-의제매입세액 적용 여부에 따라	58
[그림 IV-2] 음식료품제조업과 기타 제조업 비교 1	78
[그림 IV-3] 음식료품제조업과 기타 제조업 비교 2	80
[그림 IV-4]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1억원 기준, 2016~2020년)	85
[그림 IV-5]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1억원 기준, 2016~2018년)	85
[그림 IV-6]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1억원 기준, 2019~2020년)	86
[그림 IV-7]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2억원 기준, 2016~2020년)	87
[그림 IV-8]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2억원 기준, 2016~2018년)	87
[그림 IV-9]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2억원 기준, 2016~2018년)	88
[그림 IV-10]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1억원 기준, 최종 소비자 거래 사업체)	89
[그림 IV-11] 연도별 쌀 도매가격의 변화	97

[그림 IV-12]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쌀 도매가격 변화	98
[그림 IV-13]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배추 도매가격 변화	100
[그림 IV-14]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고등어 도매가격 변화	101
[그림 IV-15]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쌀 소매가격 변화	102
[그림 IV-16]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배추 소매가격 변화	103
[그림 IV-17]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고등어 소매가격 변화	104
[그림 V-1] 외식비 총액 추이	107
[그림 V-2] 외식비 및 식료품비 지출 추이 비교	108
[그림 V-3] 소비항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113
[그림 VI-1] 매입 시 부가가치세 미납부에 대한 인지 여부	117
[그림 VI-2]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117
[그림 VI-3]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118
[그림 VI-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의 변화 예상	119
[그림 VI-5] 일반업종 사업자들의 가격 설정 시나리오	120
[그림 VI-6] 중고차판매업 사업자들의 가격 설정 시나리오	121

I. 서론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매입금액의 일부를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해당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역사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상당히 오래된 제도이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는 기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도 없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입금액의 일부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 단계 거래의 매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였으나, 이들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와 관계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다.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상 과세만 존재하는 경제 거래에서는 사업자들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자일뿐, 이들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은 '0'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 부담을 우려한다. 면세사업자들은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과세사업자는 실제로는 기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매입금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함에 따라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면세사업자들은 본인의 세 부담을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할 유인이 있고,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 역시 기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본인들의 매입금액 일부를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담세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커지게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혹은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오랜 역사가 있는 제도이다 보니, 동 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많다. 제도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의, 공제 한도 및 공제 한도율과 관련한 연구 등 그 주제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세법, 세무학적 관점에서 제도를 평가하였다. 의제매입과 관련한 정량화된 자료가 부족한 현실 때문에 정량적 자료를 사용한 객관적 평가를 검토한 기존 연구는 드물다. 조세특례 심층평가로 수행된 전병목·류덕현(2016), 하세정 외(2018a), 하세정 외(2018b) 등이 설문조사 및 과세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소수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평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정당성 평가가 핵심이다. 첫째,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금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제’하여 그만큼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의 정당성 평가이다. 즉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사업자들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의 정당성 평가이다. 박명호(2012)에서 지적하듯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면세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거래 사업자에게 대한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금으로서의 정당성 평가도 기존 평가의 주요 내용이었다. 만약 보조금의 성격만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는 제도라면,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한 평가이다. 기존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도 주제는 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 수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적절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재 업종에 따라, 그리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더라도 과세사업자의 업종과 업체 규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었다. 보

조금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차등적 보조금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정당성을 살펴보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에 더해 기대할 수 있는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정성적 분석에 의존하는 반면,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정량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정량적 분석은 『국세통계연보』 등의 집계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국세청의 「사업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기존과 차별점을 둔다. 법인 및 개인(일반,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한다.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실제 미시 납세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찾아본다. 추가적으로 설문 등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적용 사업자들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일부 표본에 대해 검토하여 개별 미시 납세자료 분석을 보완하려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의 기본 배경은 중간 거래 단계에 면세사업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면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의 가격 전가를 가정한다는 점이다. 의제매입에 대한 평가 연구 및 부가가치세의 유효 세 부담을 추정하는 연구 등에서는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세액 전부를 다음 단계로 전가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전가의 크기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자의 매출과표, 부가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거래 과정에서의 가격 전가 정도를 추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이러한 실증분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평가 내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세

가지 목적과 관련이 있다. 첫째, 중간 단계에서 면세 거래가 포함되는 상황에서 이들과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은 면세로 인한 중복과세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중복과세 현상의 이면에는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자들의 이러한 가격 전가 유인을 조정하고자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의 예외적 사항인 면세 거래가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 거래로 인한 경제적 왜곡의 발생, 가격 전가 등의 가능성은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으로 소비자의 세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이후 단일세율을 통한 효율성 확보, 예외적 사항의 지속적인 정비 작업을 꾸준히 거쳐, 세목 중에서 선진적으로 운영되는 세제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통한 상호거래의 교차검증 기능 완비 등 세제와 관련한 세무 행정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세제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중복과세 문제 등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세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원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제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제Ⅱ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제도 현황 및 배경, 제Ⅳ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제Ⅶ장에서는 설문조사 분석, 제Ⅷ장에서는 정책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한다.

II. 선행연구 정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농산물 등에 대해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등에게 과·면세를 선택하게 한다. 앞선 서론의 예에서처럼 농산물 거래가 중간 거래 단계에 포함될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매입가액의 일정률을 면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재화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정률의 금액이 일종의 매입세액공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률을 지불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허용하여, 면세사업자가 중간 거래 단계에 포함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제거 혹은 완화한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업종별로, 업체 규모별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에 대한 검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 수준에 관한 연구 등 그 주제도 다양하다.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제도가 운영되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기존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1>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주요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서희열(1996), 안

창남(2002), 차삼준·김병일(2019) 등과 같은 기존 연구는 세법, 세무학 측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였다. 서희열(1996)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 취지가 소비세를 합리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누적효과 배제에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10%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창남(2002)은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재활용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과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안으로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차감한 마진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마진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차삼준·김병일(2019)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법적인 관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 이러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정부, 사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의 의견들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집계된 통계자료 혹은 설문조사를 활용한 자료의 정량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정량적 자료가 부족한 현실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영향평가를 다룬 연구가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준규·채상병(2006)은 14개 면세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2003년 매출액과 매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중간 단계 면세에 따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면세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매입세액 비율을 통해 누적효과는 면세사업자 매출액의 약 0.35% 또는 약 0.10%에 불과한 반면, 환수효과는 면세사업자 매출액의 약 9.65% 또는 9.90%에 달하는 것을 보였다. 이준규·채상병(2006)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원일(2014)은 가상적 상황을 가정한 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을 때와 공제율이 3/103, 6/106, 8/108, 10/110일 때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각각 얼마만큼 제거되는지, 기업의 수익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제율이 6/106일 때 누적효과는 모두 제거되지만 환수효과는 공제율이 6/106보다 더 높아야 제거가 되었으며, 기업 수익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었을 때와 대비하여 공제율이 8/108일 때는 약 15%, 공제율이

10/110일때는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인 전병목·류덕현(2016), 하세정 외(2018a), 하세정 외(2018b) 등은 설문조사 및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시도하였다. 전병목·류덕현(2016)과 하세정 외(2018b)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특례제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재활용 자원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 방향과 부합하는 제도이지만 공제율을 통한 재활용 규모의 정책적 조정효과는 크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자체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는 의제매입과 관련한 세법 이론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었다. 우선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의 정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한 공제 한도의 적정성, 공제율 설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매입금액의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기본 원리와 배치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차삼준·김병일(2019)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는 표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입장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이유는 거래 과정에서 면세 거래가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효과 혹은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적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차삼준·김병일, 2019). 첫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중복과세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명목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과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학설이다. 두 번째 학설

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를 모두 제거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표 II-1〉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론
서희열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목적이 환수효과 제거에 있는 것인지, 누적효과 제거에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서술함 두 경우 모두 적정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크기는 10%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및 제도 검토를 통한 연구
안창남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된 제도로 평가함 재활용품 등에 대한 의제매입 대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위해,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사례 및 문헌조사
이준규· 채상병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농산물 등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추정함 실제 일부 면세사업자를 조사하여 매입액 가운데 과세매입과 면세매입의 비중을 추정하였으며, 면세재화 생산업자의 경우 총 매입액 가운데 과세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7.32%이며, 면세재화 유통업자의 경우 그 비중은 평균 1.55%임 누적효과는 실제 자료상 크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환수효과 제거를 위한 제도로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사업자 14곳의 거래장부를 실제 조사하여, 매출액과 매입액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구원일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음식점업의 재료비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이 연구의 기여로는 기존에 검토하지 않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임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6/106에서 8/108로 증가할 경우 이익은 약 15% 증가하고, 10/110으로 증가하는 경우 18%까지 증가함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적 사례를 이용한 사례 분석
전병목· 류덕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심층평가 해외에서도 일정 부분 의제매입세액을 허용하고 있음 재활용 자원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 방향과도 부합하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재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산업연관분석 결과, 생산유발 측면에서 동 제도의 효과성이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내부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 이용한 분석 시나리오 분석 산업연관분석

〈표 II-1〉의 계속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론
하세정 외 (2018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특례제도를 검토하였으며, 공제율을 통한 재활용 규모의 정책적 조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통계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하세정 외 (201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매입 공제특례를 전반적으로 평가함 공제율의 변화가 외식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공제율 수준은 현행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간단한 통계분석을 제시
차삼준 · 김병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환수효과를 살펴본 바, 환수효과로 인해 음식값 등의 상승 우려를 제시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로 통일하고, 공제시기는 매출 시로, 그리고 공제대상금액은 매출 시의 매출원가로 하며, 공제 한도는 폐지하는 대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
조명환 · 송헌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차 거래시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분석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법인판매자의 후생에는 부정적이지만, 개인판매자, 중개업자 및 구매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부가가치세율이 높을수록, 중개업자 및 법인판매자의 비용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판매자의 비용이 낮을수록 상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모형 분석

자료: 저자 작성

Ⅲ. 의제매입세액공제 개념 및 제도 현황

1. 개념적 정리(Conceptual Framework)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과세사업자가 본인이 납부한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매입세액을 다음 단계의 공급가액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도 적용의 이유이다. 정부는 사실상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금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면세사업자 역시 본인의 매입 단계에서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거래에 매입세액을 전가하려는 유인이 있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면세사업자는 실제로 납부한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 유인은 이론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 거래 단계에 허용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과세되는 현상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거래의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실제 과세 당국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수가 다르다면, 이는 이러한 중복과세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중복과세 자체도 문제이지만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왜곡하여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 역시 문제이다. 이를 교정하려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 혹은 가산효과(cascade effect) 및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 혹은 취소효과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라는 것은

이미 과세된 부분이 다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며, 환수효과라는 것은 면세나 영세율 적용으로 과세가 포기된 부가가치세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중 어느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환수효과를 배제하여 면세의 효과가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전달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것인지, 누적효과를 배제하여 면세사업자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려는 것이 목표인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경우 모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가 포함된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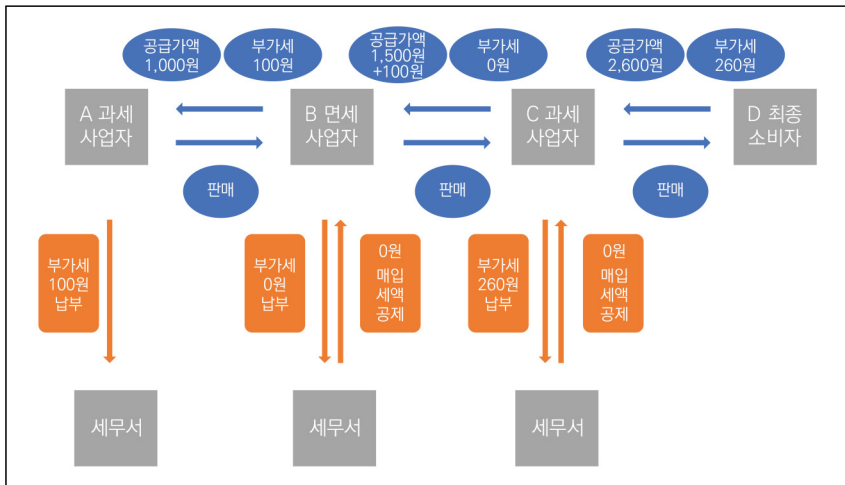
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념

[그림 Ⅲ-1]에 개념 정리를 위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거래 단계를 가정한다. A사업자(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천원, B사업자(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 C사업자(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천원이며, 최종 소비자는 D이다. 따라서 이 거래 과정에서 창출된 총 부가가치는 2,50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250원이다. 하지만 중간 거래 단계에 있는 면세사업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과세 당국이 건어야 했던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부분을 제외한 200원이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 C의 가격 전가 행위는 없다고 가정한다. 반면 매입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사업자 B의 경우에는 매입불공제 부분의 전부를 그대로 다음 거래 단계에 전가한다고 가정한다. 이럴 경우 [그림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 거래 전체에서 과세 당국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는 총 360원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이 거래 과정에서 건였어야 할 200원의 부가가치세보다 160원이 더 건힌 결과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간 단계의 면세 거래에 따른 중복과세 등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수가 10%와 괴리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추가로 건힌 160원의 구성을 살펴보자. 면세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는데 이 부분이 다음 거래 단계의 매출액에 포함되면서 세액 50원은 면세 취지와는 다르게 '환수'되었다(환수효과). 160원 중 나머지 110원은 면세사업자 B가 이미 사업자 A와의 거래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100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과세사업자 C와의 거래 단계에서 공급가액에 누적하여 포함함에 따라 100원 + 100원*10%=110원이 다음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로 건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누적되어 과세된 세금이다(누적효과). 따라서 중간 거래 단계의 면세사업자로 인해 중복과세되는 현상은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 거래 단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시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 C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과세사업자 C가 매입 시 지불하는 공급가액 1,600원(1,500원+100원)에 일정 부분, 예를 들어 현재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공제율인 8/108만큼 의제매입을 허용하게 되면, 사업자 C는 $1600 * 8 / 108 = 118.5$ 원을 매입세액공제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과세 당국이 확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241.5원이 되며, 이는 이론적으로 견뎌야 하는 부가가치세 200원보다는 여전히 41.5원을 더 견뎠으나,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덜 견게 되어 세제상의 왜곡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림 III-1]은 사업자 B의 매입세액이 100% 전가됨을 가정하고, 사업자 C의 경우에는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 이후 과세 당국이 견게 되는 실제 부가가치세수는 가상의 시나리오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까지 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더욱 복잡해진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사업자 B가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100원을 다음 단계로 온전히 전가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세사업자 C는 본인이 납부한 1,600원의 공급가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비율의 크기와 그로 인한 다음 단계로의 전가의 크기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이 사업자의 가격 전가 유인을 줄여준다면, 최종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제매입공제 제도 이외에도 정부의 각종 공제 제도가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행태에 영향을 준다면, 의제매입으로 인한 중복 과세 현상의 완화 양상은 복잡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작업이 과거에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거래 변화 과정

제IV장의 실증분석 전에 이번 장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른 거래의 변화 과정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의 예를 제시한다. 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 즉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부담을 추정하여 검토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유효세율의 개념은 기존에 주로 사용한 Gottfreid and Wiegard(1991)의 방법과 다르다. 본고에서 사용한 유효세율은 실제 납부세액과 가격 전가 등의 사업자 행태 변화가 없었을 경

우 소비자가 지불할 공급가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의 시나리오의 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따른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1) 정상적인 상황의 거래

〈표 Ⅲ-1〉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격 전가를 100% 한다고 가정한다. 즉 면세사업자는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매입세액 10%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가격에 포함하여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시나리오 분석에 그대로 사용한다.

먼저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경제의 최종 단계인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250원이고, 실질적으로 납부한 공급가액은 2,500원으로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A1 사업자는 순전히 부가가치를 1천원 창출하여 B1 사업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100원을 거래 징수한 후, 이를 과세 당국에 납부하였다. B1 사업자의 경우도 과세사업자로서, A1 사업자로부터 1천원의 재화를 매입한 이후, 이를 C1 사업자에게 공급대가 1,650원에 판매하였다. C1 사업자에게서 150원에 해당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과세 당국에 납부하였으며, B1 사업자가 A1 사업자에게서 재화를 매입할 때 기납부한 100원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았다. 결과적으로 B1 사업자는 자신이 납부한 100원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았다. C1 사업자는 2,500원의 공급가액에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250원을 거래징수하여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 마찬가지로 기납부한 매입세액 150원은 전액 공제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오직 최종 소비자만이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 대비 10%를 납부한다.

모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정상적인 표준 명목 부가가치세율을 부담

할 경우에는 모든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중간 거래 단계에 면세거래가 포함되면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의 크기는 10%와 달라진다. Panel B부터 Panel G까지는 중간 사업자 B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대한 예이다.

2) 면세사업자 전가

Panel B를 다음으로 살펴본다. 면세사업자인 B2 사업자는 1천원에 재화를 매입하고 1,600원에 재화를 판매한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B2 사업자는 재화를 매입할 때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지만, 본인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면세사업자는 본인이 공제받지 못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단계에 온전히 전가한다고 가정한다. 1천원의 매입금액에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과 공제받지 못한 100원의 매입세액을 다음 거래 단계 공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1,600원에 C2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다. C2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이지만,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실제로 C2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C2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B2로부터 1,600원에 재화를 매입하였으며, 자신의 부가가치 1천원을 더해 2,600원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C2 사업자 역시 가격 전가의 유인이 있을 수 있으나, Panel B에서는 가격 전가가 없다고 가정한다. 최종 소비자는 2,600원의 공급가액과 이에 해당하는 26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총 2,860원에 재화를 구매한다. 중간 단계의 면세 거래가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재화를 구매하게 된다. 면세 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격 전가의 행태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3) 면세사업자 및 이후 사업자의 전가

Panel C는 Panel B와 동일한 상황이되,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C3 사업자 역시 다음 거래 단계로 가격 전가를 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C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지만, 보통 사업자들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 일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에서의 가격 결정에 반영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C3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했을 것으로 가정하는 1,600원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45.5원($1,600 \times 10/110$) 전부를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직면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2,745.5원이 된다. 소비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74.6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3020.1원에 재화를 구매하게 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 금액은 앞선 Panel A의 정상거래 금액 2,500원은 물론이고, 과세사업자의 가격 전가가 없을 경우 지불했을 2,860원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이를 유효세율 개념으로 살펴보면, 실제 납부세액 274.6원을 C3 사업자의 가격 전가가 없었다면 직면했을 공급가액 2,600원과 비교하면 10.6%로 산출된다. 명목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실제로는 10%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Panel D에 제시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9/109로 가정한다. 모든 상황은 앞선 상황들과 동일하고,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C4 사업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를 가정한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C4 사업자는 B4 사업자로부터 1,600원에 재화를 매입하고 자신의 부가가치 1천원을 더해 다음 단계의 가격을 결정한다. Panel C와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고, 사업자 C4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만 여전히 본인이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매입세액 145.5원을 그대로 다음 단계

로 전가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직면하는 금액은 3,020.1원으로 앞선 Panel C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27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Panel C와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 다만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을 허용하여 132.1원의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세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 및 전가

Panel E는 사업자가 본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분은 다음 단계로 전가하지 않고,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거래 단계 가격에 전가한다고 가정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9/109이기 때문에 C4 사업자는 132.1원(1,600*9/109)만큼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원래 사업자가 기납부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세액의 크기는 Panel C에서 살펴보았듯이 145.5원이기 때문에, 이 145.5원과 의제매입세액의 크기인 132.1원과의 차이, 즉 13.4원만큼 다음 거래로 전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면 최종 소비자가 직면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2,613.4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261.3원이다. 최종 공급대가는 2,874.7원으로 Panel C와 Panel D의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Panel E와 Panel G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실제 사업자 본인이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매입세액의 차이보다 작게, 그리고 크게 전가한 경우에 대해 각각 시나리오 분석의 예시를 제시한다. 당연하겠지만 가격 전가가 클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커지고, 가격 전가가 작을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감소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했고, 또 그 크기는 매입세액 공제율, 즉 부가가치세율인 10%만큼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실제 전가율이 다를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제Ⅳ장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표 III-1〉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의 예시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

(단위: 원)

구분	매입 가액	부가 가치	추가 전가	공급 가액	명목 세율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공급 대가	유효 세율
Panel A. 정상거래										
A1	0	1000	0	1000	10%	100	0	100	1100	10%
B1	1000	500	0	1500	10%	150	100	50	1650	10%
C1	1500	1000	0	2500	10%	250	150	100	2750	10%
소비자				2500				250		10%
Panel B. 중간 단계 면세 거래 포함된 상황 + 면세사업자 전가 + C2 사업자는 전가 X + 의제매입 허용 X										
A2	0	1000	0	1000	10%	100	0	100	1100	10%
B2	1000	500	0	1600	0%	-	-	-	1600	0%
C2	1600	1000	0	2600	10%	260	-	260	2860	10%
소비자				2600				260		10%
Panel C. B3 중간 단계 면세 거래 포함된 상황 + 면세사업자 전가 + C3 사업자 전가 + 의제매입 허용 X										
A3	0	1000	0	1000	10%	100	0	100	1100	10%
B3	1000	500	0	1600	0%	-	-	-	1600	0%
C3	1600	1000	0	2745.5	10%	274.6	-	274.6	3020.1	10%
소비자				2745.5				274.6		10% (10.6%)
Panel D. B4 중간 단계 면세 거래 포함된 상황 + 면세사업자 전가 + C4 사업자 전가 + 의제매입 허용										
A4	0	1000	0	1000	10%	100	0	100	1100	10%
B4	1000	500	0	1600	0%	-	-	-	1600	0%
C4	1600	1000	0	2745.5	10%	274.6	132.1	142.5	3020.1	10%
소비자				2745.5				242.5		10% (10.6%)
Panel E. B5 중간 단계 면세 거래 포함된 상황 + 면세사업자 전가 + C5 사업자 전가(정상매입과 의제매입의 차이만큼 전가) + 의제매입 허용										
A5	0	1000	0	1000	10%	100	0	100	1100	10%
B5	1000	500	0	1600	0%	-	-	-	1600	0%
C5	1600	1000	0	2613.4	10%	261.3	132.1	129.2	2874.7	10%
소비자				2613.4				229.2		10% (10.05%)

〈표 III-1〉의 계속

구분	매입 가액	부가 가치	추가 전가	공급 가액	명목 세율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공급 대가	유효 세율
Panel F. B6 중간 단계 면세 거래 포함된 상황 + 면세사업자 전가 + C6 사업자 전가(정상매입과 의제매입의 차이보다 작게 전가) + 의제매입 허용										
A6	0	1000	0	1000	10%	100	0	100	1100	10%
B6	1000	500	0	1600	0%	-	-	-	1600	0%
C6	1600	1000	0	2605	10%	260.5	132.1	128.4	2865.6	10%
소비자				2605				228.4		10% (10.02%)
Panel G. B7 중간 단계 면세 거래 포함된 상황 + 면세사업자 전가 + C7 사업자 전가(정상매입과 의제매입의 차이보다 크게 전가) + 의제매입 허용										
A7	0	1000	0	1000	10%	100	0	100	1100	10%
B7	1000	500	0	1600	0%	-	-	-	1600	0%
C7	1600	1000	0	2700	10%	270	132.1	137.9	2970	10%
소비자				2700				237.9		10% (10.38%)

자료: 저자 작성

2. 제도 현황 및 배경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보완적인 제도로, 매입가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인 제도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면세 재화가 중간 거래 과정에 개입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누적 및 환수효과의 제거에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조명환·송헌재, 2021).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정은 면세농산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있다. 이번 제2절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의미, 연혁, 배경 등 전반에 관해 살펴본다. 그리고 면세농산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관련 의제매입에 대해 각각 살펴해보도록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로 공급할 때, 면세된 재화에 해당하는 매입금액 일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과세사업자가 실제로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즉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 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I-2〉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검색일자: 2022. 5. 2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매입세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¹⁾ 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증빙서류 등의 입증자료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이 요구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한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게 된다. 이는 면세농산물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는 것이다. 다만 사후에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재계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여 조정한다. 예를 들어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 가운데 일부만 다음 거래 단계의 과세재화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 경우,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에 해당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분은 추후 재계산 조정이 되는 것이다. 다만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물 혹은 작업폐물 등은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변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계산은 매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현재(2021년 12월 8일 이후) 기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표 Ⅲ-3>과 같다. 유흥업의 경우 의제매입공제율은 매입가액의 2%, 음식점업의 경우 매입가액의 8%를 공제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

1)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시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은 매입가액의 9%를 적용하여 혜택을 준다.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가액의 6%를 공제하며, 그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를 공제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한다. 제조업 부분에서 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 공제율은 2%를 적용한다. 음식점업 및 제조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제율 2%를 적용한다.

〈표 III-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구분		공제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통장소의 경영자	2/102
	나. 1.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나. 2.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6/10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2/10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2/102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2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과거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도입 당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매입가액의 10%, 즉 표준 부가가치세율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면세 재화인 농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

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애초 제도 설계 당시부터 사업자에 대한 보조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4〉는 연도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초창기 공제율은 10%에서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의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공제율의 크기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업종별·사업체의 규모별 공제율 차등 적용 등 세분화하여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에 유흥 음식점업의 공제율이 2019년의 4/104에서 2/102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공제율의 변화는 사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계산된 공제율의 반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공제율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경제적 왜곡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표 Ⅲ-4〉 연도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

시기	사업자 구분	공제율
1977~1983년	-	10/110
1984~1993년	-	5/105
1994~1999년	-	3/103
2000~2001년	음식점업	5/105
	기타(음식점업 외)	3/103
2002~2004년	음식점업	3/103
	기타	2/102
2005~2006년	음식점업	5/105
	기타	2/102
2007~2008년	음식점업	6/106
	기타	2/102
2009~2012년	음식점업(개인)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음식점업(유흥장소)	4/104
	기타	2/102

〈표 III-4〉의 계속

시기	사업자 구분	공제율
2013~2017년	음식점업(개인)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음식점업(유흥장소)	4/104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기타	2/102
2018~2019년	음식점업(소규모 개인 - 과표 2억원 이하)	9/109
	음식점업(기타 개인)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음식점업(유흥장소)	4/104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2021년~	음식점업(소규모 개인 - 과표 2억원 이하)	9/109
	음식점업(기타 개인)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음식점업(유흥장소)	2/102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떡류 제조업)	6/106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기타	2/102

자료: 하세정 외(2018b), pp. 29~3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2조>, 검색일자: 2022. 3. 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2014년도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실제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허용하는 예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부당한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한도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공제 한도율을 설정하여 공제 한도를 규정한다. 2014년 도입 당시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도율은 50%로 매출액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되며, 2억원 초과인 경우 공제 한도율은 40%로, 매출액의 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된다. 도입 당시 개인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공제 한도율을 60%까지 늘려 특례를 적용하는 예외를 두었다.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에만 한도를 적용하여 의제매입세

액을 결정한다.

공제를 변화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도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연도별 변화는 〈표 Ⅲ-5〉에 정리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다. 2022년 9월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기본 한도율은 과세표준 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5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로 도입 당시와 동일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30%를 적용하며 이 역시 도입 당시와 동일하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한도율은 75%,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 2억원 초과인 경우 60%를 적용한다. 음식점업 외의 기타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65%,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5%를 적용한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50%를 적용한다. 이러한 우대 한도는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우대 한도의 개정이 없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한도율이 적용된다.

다음 절에서는 각각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기초 통계 현황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수집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 항목에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항목의 정보가 집계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공제세액’ 항목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의 정보가 집계된다. 다만 언급했듯이 2021년 7월 이후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면서, 간이과세자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표 III-5〉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변화

(단위: %)

구분	과세표준 (연 매출 규모)	공제한도									
		2014. 1.1.~ 2014. 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8.6.30.		2018.7.1.~ 2022.6.30.		2022. 7.1.~ 2023. 12.31.		2024. 1.1.~
법인	매출액 관계없이 모든 법인	30	30		35		40		50		30
			음식점 업	그 외	음식점 업	그 외	음식점 업	그 외	음식점 업	그 외	
개인	매출액 1억원 이하	60	60		60		65		75		
	매출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0	55	50	55	50	60	55	70	65	55
	매출액 2억원 초과	40	45	40	45	40	50	45	60	55	40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현황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건수, 금액,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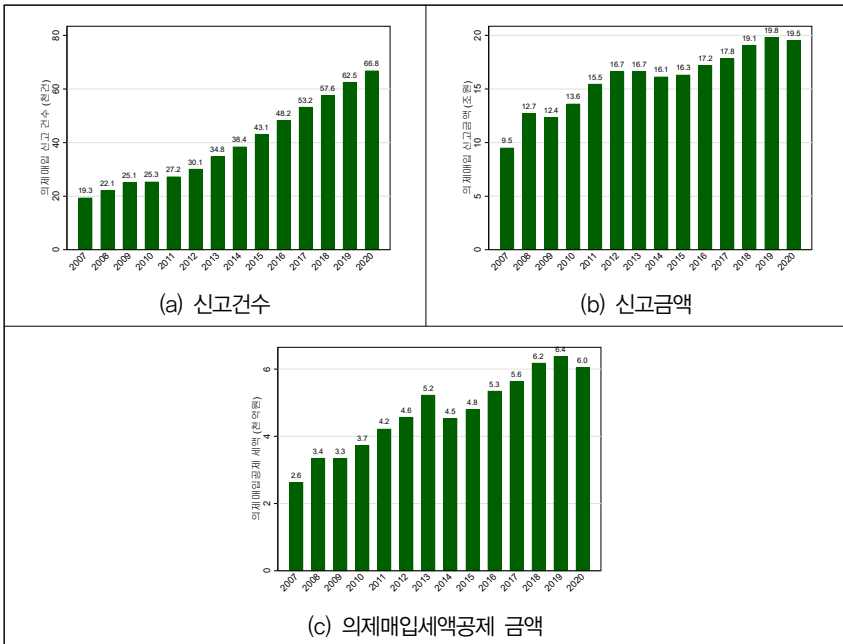
1)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인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2007년 약 2,631억원이었으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약 5,22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공제금액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약 6,377억원 수준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의 신고건수 역시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4년에 감소한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였다. 신고건수당 신고금액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2007년 기준 신고건수당 신고금액은 4.9억원에서 2011년 5.8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약 3.2억원까지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신고건수당 세액 규모도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2011년 신고건수당 세액은 약 1,500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1,02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1천만원 아래로 감소하였다.

[그림 III-2]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6〉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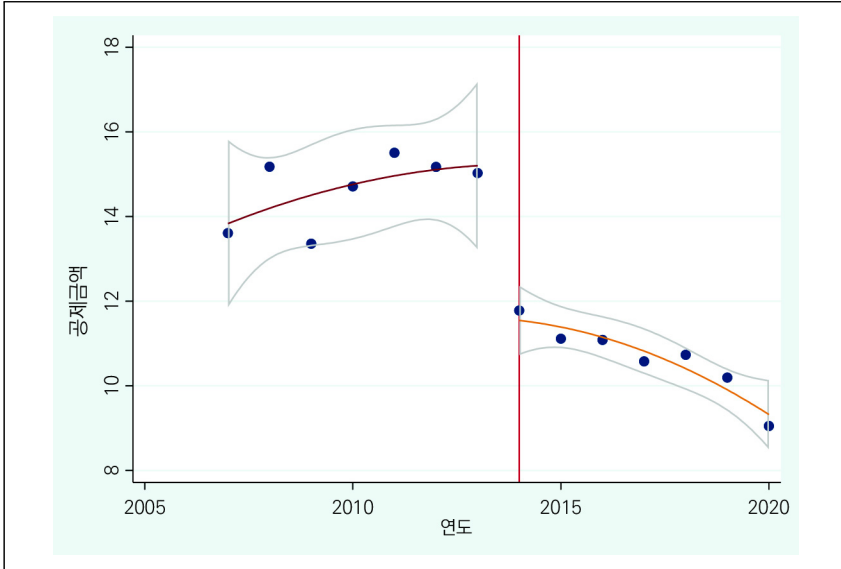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세액	신고건수당 신고금액	신고건수당 세액
2007	19,331	9,493,650	263,079	491.11	13.61
2008	22,092	12,703,467	335,282	575.03	15.18
2009	25,052	12,353,903	334,629	493.13	13.36
2010	25,303	13,602,310	372,250	537.58	14.71
2011	27,229	15,453,705	422,163	567.55	15.50
2012	30,133	16,652,665	457,166	552.64	15.17
2013	34,792	16,656,017	522,794	478.73	15.03
2014	38,441	16,130,695	452,814	419.62	11.78
2015	43,109	16,311,385	479,092	378.38	11.11
2016	48,236	17,208,366	534,652	356.75	11.08
2017	53,243	17,841,360	563,195	335.09	10.58
2018	57,575	19,085,856	618,023	331.50	10.73
2019	62,546	19,825,130	637,677	316.97	10.20
2020	66,817	19,547,400	604,682	292.55	9.0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2014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4년에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 설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과도한 세 부담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매출액의 30~60%)를 도입함에 따라 전체적인 공제 금액의 규모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의 규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인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한도율이 적용됨에 따라 한도금액이 낮아져서 2014년을 전후하여 법인사업자의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3]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 변화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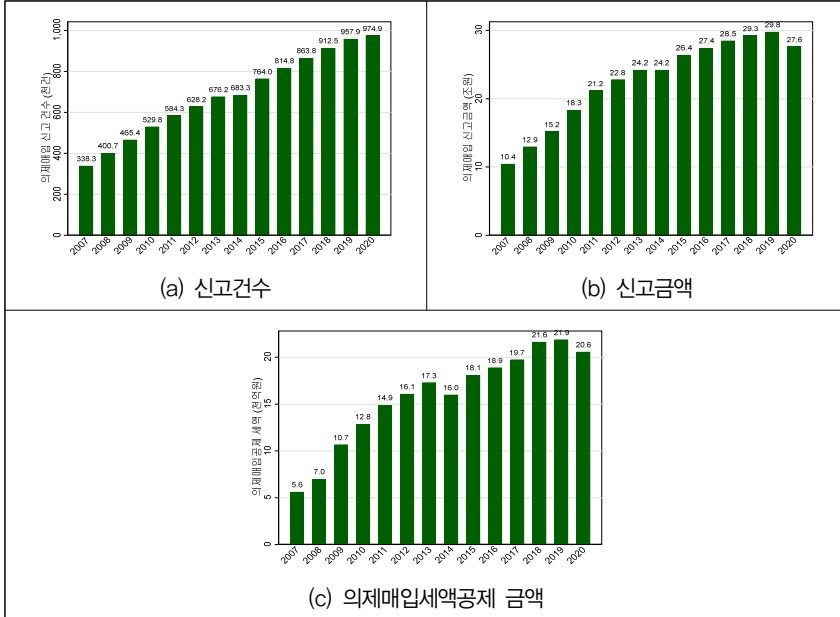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일반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07년 일반사업자가 적용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약 5,696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약 1조 7천억원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까지 다시 증가하여 공제 금액은 약 2조 2천억원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사업자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규모 역시 감소하였다. 의제매입 신고건수당 신고금액은 2011년과 2012년에 약 3,62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에는 약 2,800만원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의제매입 신고건수당 세액 금액 역시 2012년을 전후하여 약 2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에는 약 211만원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III-4] 일반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7> 일반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세액	신고건수당 신고금액	신고건수당 세액
2007	338,338	10,425,499	559,585	30.81	1.65
2008	400,659	12,943,833	695,727	32.31	1.74
2009	465,353	15,192,833	1,066,356	32.65	2.29
2010	529,769	18,314,486	1,283,357	34.57	2.42
2011	584,288	21,193,532	1,485,900	36.27	2.54
2012	628,210	22,789,268	1,606,030	36.28	2.56
2013	676,205	24,184,244	1,729,152	35.76	2.56
2014	683,300	24,181,336	1,598,726	35.39	2.34
2015	764,021	26,379,128	1,806,803	34.53	2.36
2016	814,802	27,384,616	1,888,575	33.61	2.32
2017	863,787	28,480,636	1,973,346	32.97	2.28
2018	912,479	29,253,312	2,162,200	32.06	2.37
2019	957,912	29,758,286	2,188,180	31.07	2.28
2020	974,867	27,628,620	2,056,889	28.34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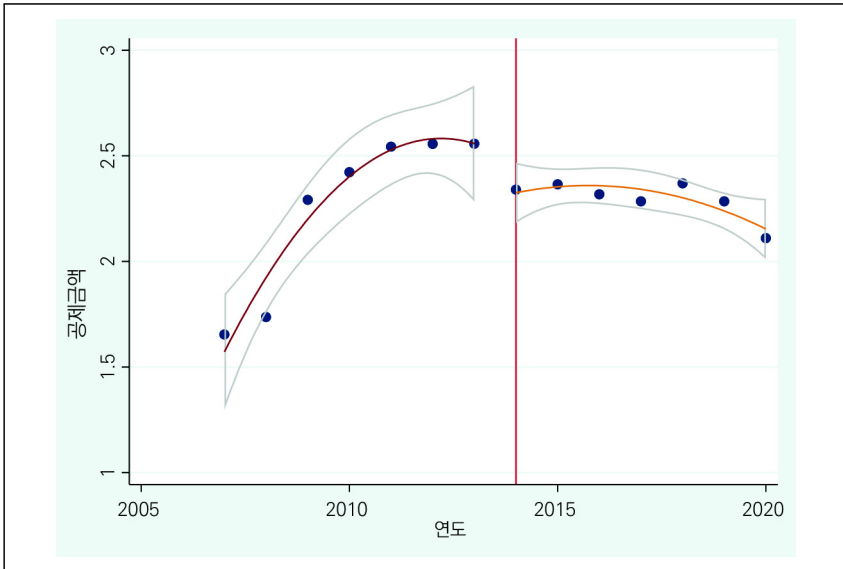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2014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에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 설정에 의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림 Ⅲ-2]와 [그림 Ⅲ-6]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의 규모 차이가 뚜렷한 반면, 일반사업자의 경우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의 크기가 감소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감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도율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한도율이 적용됨에 따라 한도금액이 낮은 점이 2014년을 전후하여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5] 일반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 변화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살펴본다. 재활용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1992년 10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 폐업한 사업자 등의 경우가 공급하는 자일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이 공제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자일 경우 공급받는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율 및 변화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현재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Ⅲ-8>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를 시점별로 제시한다. 1994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된 후 매년 특례가 연장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공제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증감을 반복하다 현재는 10/110을 유지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고물상 등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제율을 감소하였다. 이는 하세정 외(2018a)에서 추론하듯이, 재활용폐자원은 이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소비재 및 설비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은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거래의 최초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럴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논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전가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공제율을 쉽게 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사업자들의 조세 전가 현상을 관찰한 실증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적 추측일 뿐이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로 공제율의 조정이 조세 전가 및 가격 전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와 같이 여러 중고자동차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가격 결정 과정에서 매입세액 전가가 큰 이슈가 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I-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변화

연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1994	10/110	10/110
2002	8/108	8/108
2004	8/108	10/110
2007	6/106	10/110
2010	6/106	9/109
2014	5/105	9/109
2016	3/103	9/109
2018	3/103	10/110

자료: 하세정 외(2020), p. 25 〈표 2-2〉; p. 27 〈표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법인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공제 현황(중고자동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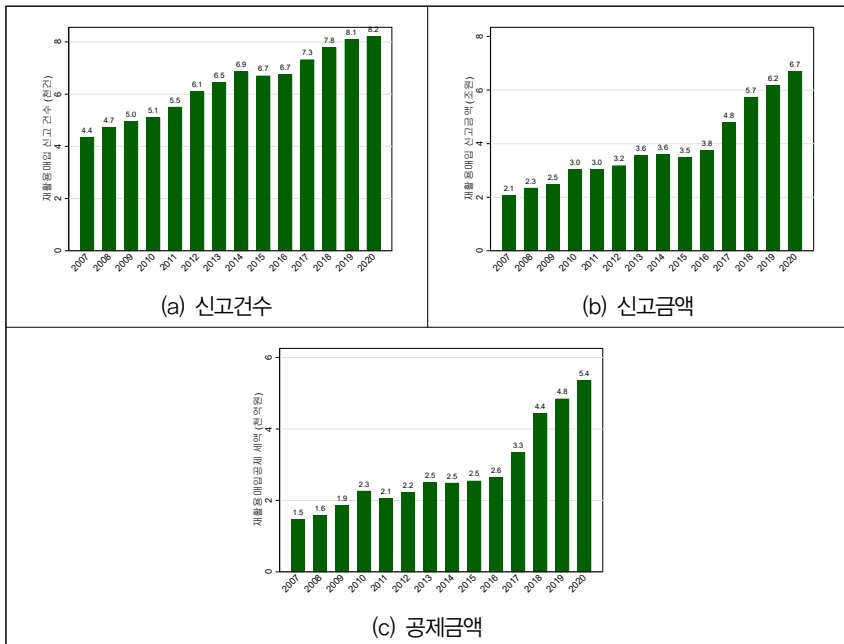
법인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신고건수, 신고금액,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연도별로 상승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5,400 억원이며, 신고금액은 약 6.7조원까지 증가하였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

자료에서는 이를 구분할 수 없다. 하세정(2018a)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이용한 사업자 수는 2016년에 2만 4천여 명인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약 5,500명이기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는 약 1만 9천명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활용폐자원 등 공제특례제도를 이용한 사업자 2만 4천여 명 중, 일반사업자가 2만 1천여 명이고 법인사업자 수는 3,400여 명 수준으로 언급하였다. 일반사업자가 약 86%, 법인사업자가 14%를 차지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들의 신고금액이 후술한 일반사업자의 신고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고자동차 사업자 중에서 법인사업자들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법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반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I-6] 법인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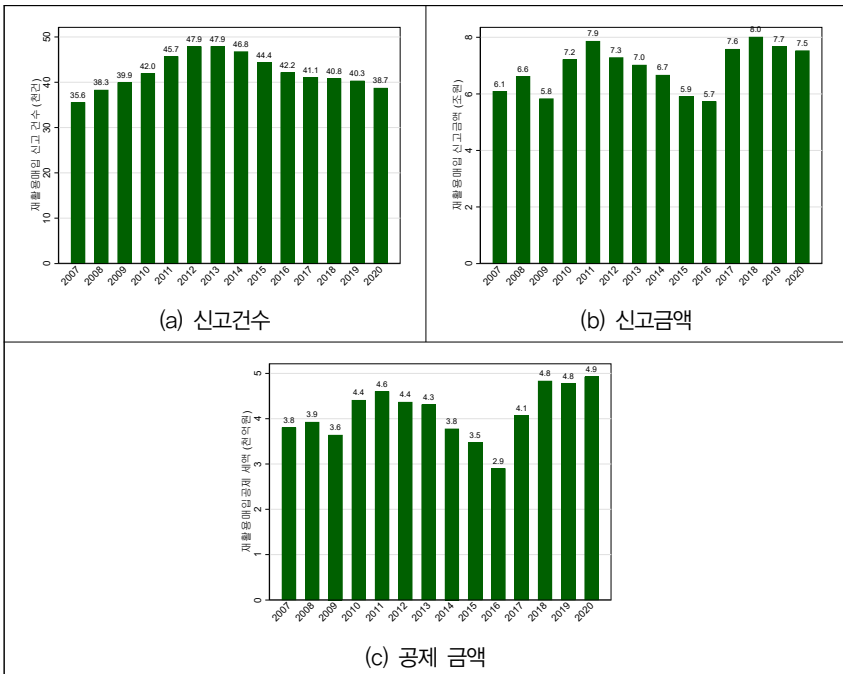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일반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공제 현황(중고자동차 포함)

일반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공제 현황은 법인사업자와 다른 추세를 보인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신고건수, 신고금액, 공제 금액의 뚜렷한 추세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2020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의 규모는 약 4,900억원이며, 신고금액은 약 7.5조원 수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활용폐자원 등 공제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반사업자가 2만 1천여 명이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는 약 1만 9천 명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일반사업자의 대부분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매입세액 공제율도 3/103으로 낮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다수인 법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7] 일반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소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제도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 혹은 환수효과를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인 면세농산물 매입,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의 매입공제 총규모는 2020년 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1조 4천억원, 일반사업자의 경우 약 2조 7천억원이다. 이 둘의 규모를 합하면 약 4조원이 넘는다. 부가가치세 세입이 2020년 약 65조원임을 감안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는 부가가치세 세입 대비 약 6.2%로 높은 편이다. 4조원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세 수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주세 등과 비교해 볼 때 더 큰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신고건수, 신고금액, 공제 금액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의제매입공제공제율과 한도율의 변화가 어느 정도 사업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사업자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행태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의제매입 적용 여부, 한도율 변화 등에 따라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등도 실증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IV.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 - 사업자 행태

이번 제IV장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IV장 분석의 주요 내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행위, 그리고 중복과세 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된 자료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연구는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 실증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장의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증 분석을 위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표본을 활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표본에는 사업자들의 업종코드,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 정보 등 부가가치세 서식 제21호(일반과세자), 제44호(간이과세자)의 내용 모두가 포함된다. 제1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과 제도와 관련된 기초 통계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일반적 효과를 살펴본다. 일반적 효과는 단순 기초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의제매입세액 적용 여부에 따른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비교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3절에서부터 사업자들의 행태를 비교 분석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가격 전가 정도의 효과, 부가가치 크기의 비교 등을 통해 사업자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초 통계

사업자의 행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체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절에서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앞

장에서 사용한 부가가치세 횡단면 표본자료이며, 다른 한 가지는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2016년 귀속부터 2020년까지의 귀속 자료로서 2016년 귀속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사업체들의 패널(panel)자료이다.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가 모두 포함된 자료이며, 해당 자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다. 패널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의제매입을 받던 사업자가 받지 않게 되거나, 받지 않았던 사업자가 받게 되는 등의 변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일반 매입공제를 받는 사업자들을 추적하여 비교하고자 함이다. 본 장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실증자료 중 첫 번째 자료는 앞 장에서 사용하였던 자료와 동일하며, 두 번째 자료는 다르다.²⁾

〈표 IV-1〉은 연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포함된 사업체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2016년의 사업체 63만 1,889개를 기준으로 이들을 패널자료로 구축하였으며, 2020년에 패널자료에 포함된 사업체는 40만 425개이다. 총 관측 수는 249만 9,580개이다. 이들 사업체 가운데 5개년 모두 관측된 사업체는 195만 3,345개로, 전체 사업체의 78.15%가 패널자료 5개년에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패널로 구성된 사업체 수는 총 39만 669개 사업체이다. 반면 전체 사업체의 7.28%는 4개 연도에서만 관측이 되었고, 전체 사업체의 6.11%는 3개 연도, 전체 사업체의 5.33%는 2개 연도, 그리고 전체 사업체의 3.13%는 1개 연도에서만 관측되었다.

〈표 IV-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사업체 수 연도별 분포

(단위: 개, %)

부가가치세 귀속연도	사업체 수	비중
2016	631,889	25.28
2017	548,848	21.96
2018	482,011	19.28
2019	436,407	17.46
2020	400,425	16.02
계	2,449,580	1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제Ⅲ장에서는 사업자들의 대표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횡단면으로 대표 표본을 뽑은 자료인 점에서 제Ⅳ장에서 사용하는 자료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체 관측 수 가운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관측 수는 42만 7,757개로 전체 관측 수의 17.11%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관측 수 가운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관측 수는 1만 8,051개로 전체 관측 수의 0.92%에 불과하다. <표 IV-2>는 의제매입세액 금액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그리고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및 매입세액공제 금액의 2016~2020년의 집계 통계를 보여준다. 의제매입 금액의 평균은 1억 1천만원을 상회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의 평균 값은 613만원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의 경우 평균 약 4억 2천만원이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금액의 평균은 약 2,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공제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중간값
의제매입 금액	11,760.0	3,399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612.9	242
재활용폐자원매입 금액	42,251.8	16,60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금액	2,488.7	488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3>은 특별 매입세액 공제(의제매입+재활용폐자원매입) 관련 사업자들의 매출 및 매입 과세표준의 기초 통계를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의제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사업자들의 평균 매출 과세표준 금액은 13억 940만원이었으며, 평균 매입 과세표준 금액은 9억 5천만원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의 매출 과세표준 금액의 평균은 약 6억 3천만원으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들의 절반 수준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의 매입 과세표준 금액의 평균은 약 4억 9천만원이다. 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의 매출 과세표준 금액은 15억원을 넘어, 특별매입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의 매출 과세표준 평균 금액을 상회한다. 이들의 매입 과세표준 평균 금액은 14억 9천만원으로 역시 특별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들의 매입 과세표준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별세액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사업자들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특별매입세액 공제 관련 사업자들의 매출 및 매입 과표

(단위: 만원)

구분	특별매입세액 없는 사업자	의제매입 O + 폐자원 X	의제매입 X + 폐자원 O	의제매입 O + 폐자원 O
2016년				
매출	130,940 (327,057)	63,863.04 (59,828)	153,530.6 (3,784)	-
매입	95,945.74 (327,057)	49,866.27 (59,828)	149,663 (3,784)	-
2017년				
매출	144,121.1 (327,064)	76,092.35 (59,927)	196,897 (3,674)	104,812.5 (4)
매입	105,974.2 (327,064)	57,475.02 (59,927)	188,081.1 (3,674)	230,129 (4)
2018년				
매출	147,815.5 (327,308)	80,404.7 (59,714)	209,156.2 (3,643)	9,029.25 (4)
매입	107,986.6 (327,308)	59,221.76 (59,714)	196,474.4 (3,643)	7,625.5 (4)
2019년				
매출	145,742.3 (327,632)	73,675.15 (5,9492)	205,060.4 (3,541)	32,662.75 (4)
매입	106,030 (327,632)	52,044.86 (59,492)	195,552.5 (3,541)	27,827.75 (4)
2020년				
매출	140,549.5 (329,503)	72,959.94 (57,769)	213,296.2 (3,394)	11,720.67 (3)
매입	100,301.5 (329,503)	51,693.19 (57,769)	193,684.8 (3,394)	10,455 (3)

주: () 안은 인원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제도 변화의 일반적 효과

일반적 효과 분석은 특별세액을 적용받는 사업자와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들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는 검토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특별매입세액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을 보조하는 재정정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별세액을 적용받는 사업자와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의 비교를 통해 제도로 인한 지원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실제로 보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실제 매입세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에서는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본 절에서의 분석은 간이사업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그 이유는 세가지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집단의 사업자들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체적인 분석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현 단계에서는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하되, 직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집단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제도의 혜택 여부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 본 절의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 다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취지 중 하나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세성이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간이사업자에 대한 분석이 본 절에서의 분석 목적에 적합하다. 마지막 이유는 간이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기 때문에,³⁾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자와 의제매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일부 받는 사업자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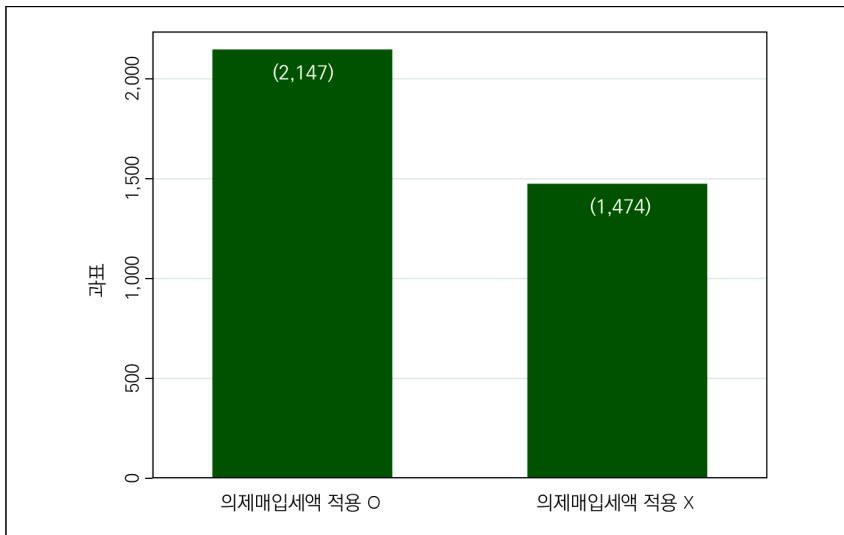
이러한 간이사업자 위주의 분석을 하기 위해, 자료는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횡단면 대표 표본자료를 사용한다. 우선 의제매입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단순 비교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이 실질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사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초 분석으로 간이사업자들의 매출 금액이

3) 2021년부터 개편된 간이과세제도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들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검토한다. [그림 IV-1]을 살펴 보면, 간이사업자들 가운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과세표준 평균 금액은 2,147만원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과세표준 평균 금액은 1,474만원으로 약 673만원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앞선 <표 IV-3>과 대비된다. 앞선 <표 IV-3>의 기초 통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포함된 반면, [그림 IV-1]은 매출 규모가 유사한 간이사업체들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IV-1] 간이사업자의 매출 - 의제매입세액 적용 여부에 따라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매출이 증가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제도의 부차적인 목적이었던 보조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원래 매출이 많았던 사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면, 보조금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매출과표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거래 단

계의 공급가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오히려 가격 전가를 유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줄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단순한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은 사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유리한 사업 여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인지를 자료로 분간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비교 분석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와 관련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는 <표 IV-4>에 제시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번의 조정과정이 있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증가가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공제율의 증가는 영세 사업자들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의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한다. 우선 회귀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의 평균값을 2×2 행렬에 제시하여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2017년에는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8분의 8이었다. 2018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영세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9분의 9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4/104로 변화 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제율의 변화가 없었다. 음식점업과 제조업이 정확한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분석은 내생성으로 인한 추정의 편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입금액이 별도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로 별도로 계산하도록 한다. 간이사업자 신고 서식에 나와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금액과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을 합하여 매입금액으로 가정한다.

<표 IV-4>에서 매출금액을 먼저 비교해 본다. 2017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율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8년에 음식점업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다. 전후 비교를 해 보니 음식점업의 매출액은 약 14만원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약 175만원 증가하였다. 만약 두 업종이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식별된 집단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 이후 매출금액은 오히려 약 160만원 감소하게 된다. 간이사업자라는 공통된 특성과 간이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적절한 비교대상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매입금액의 경우는 2017년에 음식점업은 약 74만원, 제조업은 약 21만원이다. 매입금액의 규모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의 한계 때문이다.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부터 총 매입금액을 알 수 없다. <표 IV-4>의 분석 목적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변화한 이후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매입금액 추이를 비교하는 데 있다. 음식점업은 의제

〈표 IV-4〉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매출 및 매입금액 비교

구분	2017년	2018년	차이
A. 매출금액(단위: 만원)			
음식점업	1,469.9 (1,152.8)	1,484.5 (991.3)	14.64*** (3.65)
제조업	1,634.2 (1,030.2)	1,809.3 (1,071.6)	175.1*** (2.62)
차이	-165.1*** (3.18)	-325.4*** (3.09)	-160.4*** (3.03)
B. 매입금액(단위: 만원)			
음식점업	74.48 (0.64)	59.56 (0.42)	-14.9*** (0.75)
제조업	21.72 (0.18)	16.67 (0.11)	-5.05*** (0.21)
차이	52.75*** (0.53)	42.89*** (0.35)	-9.85*** (0.64)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 1%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2018년에 오히려 매입 규모가 약 15만원 정도 감소하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변화가 없었던 제조업도 매입 규모는 약 5만원 감소한다. 이 둘의 차이를 감안한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로 인해 매입금액은 약 9.9만원 감소한다.

제한된 분석이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이 사업체의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공제율의 조정이 매출 및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보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체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면, 정책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매출 구간별로 나누어 <표 IV-4>와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다. <표 IV-5>와 <표 IV-6>은 매출금액이 1천만원 이하, 그리고 1천만원 초과 및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들을 비교한 결과이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조정 이후 음식점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입은 여전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의 차이로 부가가치를 판단하면, 의제매입공제율의 증가에 따라 사업자의 부가가치는 증가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단순히 통계 결과로는 이들의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매우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과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 매출 과표 1천만원이 영세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조정이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

〈표 IV-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매출 및 매입금액 비교
(과표 1천만원 이하 사업자)

구분	2017년	2018년	차이
A. 매출금액(단위: 만원)			
음식점업	519.3 (1.12)	532.2 (1.10)	12.91*** (1.57)
제조업	665.9 (0.89)	673.1 (0.93)	7.26*** (1.28)
차이	-146.6*** (1.41)	-141.0*** (1.42)	5.65*** (1.33)
B. 매입금액(단위: 만원)			
음식점업	19.85 (0.89)	13.35 (0.49)	-6.50*** (1.01)
제조업	2.92 (0.25)	1.74 (0.18)	-1.18*** (0.31)
차이	16.93*** (0.83)	11.61*** (0.25)	-5.32*** (0.57)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 1%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6〉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매출 및 매입금액 비교
(과표 1천만 초과~2천만원 이하 사업자)

구분	2017년	2018년	차이
A. 매출금액(단위: 만원)			
음식점업	1,467.1 (1.27)	1,471.3 (1.20)	4.17*** (1.75)
제조업	1,425.3 (0.79)	1,439.1 (0.85)	13.88*** (1.16)
차이	41.87*** (1.47)	32.07*** (1.46)	-9.71*** (1.55)
B. 매입금액(단위: 만원)			
음식점업	57.6 (0.71)	48.3 (0.49)	-9.31*** (0.85)
제조업	3.18 (0.12)	2.62 (0.06)	-0.56*** (0.14)
차이	54.43*** (0.50)	45.67*** (0.37)	-8.75*** (0.42)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 1%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간이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및 공제율 한도 조정에 따른 효과를 통계 비교로 살펴보았다. 본 절의 분석만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대한 지원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결론 내기 어렵다. 집계 통계자료만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사업자에 미치는 행태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기초 분석 결과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3. 제도가 사업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변화가 사업자들에게 미친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도 변화의 내용은 공제 한도의 변화, 공제율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 사업자들의 세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인 데 반해, 이에 관한 실증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본 절의 분석은 이에 대해 기여하고자 한다.

가. 제도 적용에 따른 사업자 행태 분석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의제매입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와 받지 않는 사업자를 비교한다. 이 분석은 제2절의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2절의 분석은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횡단면 대표 표본 자료를 사용한 반면, 이번 절에서의 분석은 제1절에서 사용한 2016년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5개년 패널로 구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비교한다. 의제매입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체의 부가가치율이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후 매입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전가 행태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매출과 매입의 차이는 실제 부가가치와 여기에 더해 사업자가 추

가로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의제매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전가 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별 전략 두 가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첫 번째는 의제매입을 지시변수로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의제매입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식 (IV-1)에서 사업체의 부가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 매입금액 및 매출과표의 규모, 각종 공제 규모, 가산세액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여러 통제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내생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추가로 업종고정효과(industry fixed effect)를 사용하여 업종 간 이질적 영향을 통제하고,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사용하여 연도별 변화를 통제한다. 군집표준오차는 업종 단위에서 계산되었다.

$$\text{부가가치}_{ijt} = \alpha \text{의제매입}_{ijt} + \theta_t + \delta_j + X_{ijt} + \epsilon_{ijt} \quad \text{식 (IV-1)}$$

두 번째 식별 전략은 식 (IV-1)에서 우려되는 내생성 부분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 식 (IV-1)의 식별 전략에 개별 사업체의 사업체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자료이며, 사업체 가운데 의제매입을 적용받다가 받지 않는 사업체, 반대로 의제매입을 적용받지 않다가 의제매입을 적용받는 사업체가 존재하여 이들의 변이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사업체고정효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이질적 특성에서 오는 여러 관찰되지 않는 특성들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된다.

$$\text{부가가치}_{ijt} = \alpha \text{의제매입}_{ijt} + \theta_t + \gamma_i + X_{ijt} + \epsilon_{ijt} \quad \text{식 (IV-2)}$$

<표 IV-7>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열과 (3)열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표본 132만 1,357개 사업체

에 대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며, (2)열과 (4)열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체까지 포함한 총 133만 9,432개 사업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체는 의제매입을 받지 않는 사업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열과 (2)열은 연도고정효과와 업종고정효과를 사용한 모형이며, (3)열과 (4)열은 연도고정효과와 사업체고정효과를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분석 대상에 재활용폐자원 업체를 포함시키는지는 여부는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업체고정효과를 사용하였을 경우 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고정효과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약 11%p에서 15%p 낮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율이 본래 낮은 사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 등 내생성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사업체의 부가가치 여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의 인과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1)열과 (2)열의 식별 전략을 고려하면, 분석 대상은 의제매입을 적용받는 사업자와 의제매입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추정 계수의 해석은 의제매입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일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약 11%p 낮다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효과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반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1)열과 (2)열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체와 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체를 비교하고 있어, 분석의 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체에 대한 반사 실적 상황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율이 11%p 낮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격 전가가 11%p만큼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다른 조건, 매입, 각종공제, 가산세 등의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의제매입 적용 여부의 조건만 달라질 경우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에 대한 동의가 어렵다면, 정상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는 경우는 사실 정상 매입사업체의 부가가치보다 더 큰 전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우 11%p는 추정 계수의 하한값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체고정효과를 사용하여 분석한 (3)열과 (4)열의 결과는 (1)열과 (2)열의 결과와 유사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다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부가가치율은 약 15%p 감소한다. 횡단면으로 분석한 (1)열과 (2)열의 결과에 비해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계수의 해석은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전환된 경우 혹은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더해 추가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이들의 가중 평균의 값이 약 15.74~15.79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7〉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의제매입 적용	-11.66*** (4.09)	-11.79*** (4.06)	-15.79*** (4.11)	-15.74*** (4.08)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0	0	X	X
사업체고정효과	X	X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매입 대상 업체 포함	X	0	X	0
관측 수	1,321,357	1,339,432	1,321,357	1,339,432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앞서 해석 과정에서 우려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사업자들의 범위를 간이사업자로 좁혀 분석하도록 한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사업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간이사업자들 표본만으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가 <표 IV-8>에 제시되었다. 앞선 <표 IV-7>과 마찬가지로 (1)열과 (2)열은 업종고정효과를 사용한 분석 결과이며, (3)열과 (4)열은 사업체고정효과를 사용한 분석 결과이다. 간이사업자로만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하여도 분석 결과의 함의는 앞선 논의와 동일하다. 업종고정효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은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비해 약 32%p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활용폐자원 업종의 간이사업자들의 분석 대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 사업체고정효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비해 약 22%p 낮게 나타났다. 다만 그 크기는 업종고정효과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약 10%p 더 작게 나타났다. 간이사업자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분석한 앞선 결과의 계수값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간이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가격 전가의 정도는 훨씬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의제매입 적용	-32.20** (15.13)	-32.17** (15.05)	-22.28* (11.23)	-22.24* (11.16)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0	0	X	X
사업체고정효과	X	X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매입 대상 업체 포함	X	0	X	0
관측 수	267,750	270,436	267,750	270,436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동일한 분석을 일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한정하여 <표 IV-9>와 <표 IV-10>에 이질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일반개인사업자의 경우 분석 결과는 앞선 결과들과 해석이 비슷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한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약 14%p 정도 작다. 분석 모형과 분석 대상에 상관없이 결과는 동일하다.

<표 IV-9>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일반개인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의제매입 적용	-3.73* (2.22)	-3.72* (2.21)	-14.96*** (2.97)	-14.94*** (2.94)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0	0	X	X
사업체고정효과	X	X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매입 대상 업체 포함	X	0	X	0
관측 수	1,039,537	1,054,872	1,039,537	1,054,872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반면 <표 IV-10>에서 살펴본 법인사업자 경우의 분석 결과는 앞선 경우와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업종고정효과를 사용하였을 경우 의제매입 적용여부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업체고정효과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의제매입 적용을 받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제매입을 받은 후 오히려 가격 전가 등의 전가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법인사업자들에게는 일반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은 법인사업자에게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사점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표 IV-10〉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의제매입 적용	-0.31 (4.09)	-0.32 (4.09)	23.43** (9.26)	23.43** (9.26)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0	0	X	X
사업체고정효과	X	X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매입 대상 업체 포함	X	0	X	0
관측 수	14,094	14,100	14,094	14,100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추가적인 이질성 분석으로는 사업자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 분석한다. 매출 규모에 따른 전가의 정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 정책 시사점 도출에 중요하다. 의제매입공제율의 차등 적용 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한 결과만 제시한다. 〈표 IV-11〉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매출 하위 25~75% 구간의 사업체들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상·하위 25% 구간에 있는 사업체들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표 IV-11〉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매출 규모 구분	하위 25%	하위 25~50%	하위 50~75%	상위 25%
의제매입 적용	-3.01 (3.31)	-8.99** (4.56)	-11.37** (5.05)	-9.14 (11.98)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X	X	X	X
사업체고정효과	0	0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매입 대상 업체 포함	0	0	0	0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적용의 효과가 나타났던, 일반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를 매출 규모에 따라 동일한 이질성 분석을 진행한다. <표 IV-12>는 일반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매출과표에 따라 이질성 분석을 한 결과이다. 매출과표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가격 전가가 더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상위 50%의 매출을 올린 일반사업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앞선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서 하위 매출 사업자에서만 효과가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앞선 전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의제매입세액공제 이후 가격 전가가 더 크게 나타난 법인 사업자가 포함되어, 일반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차이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2>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일반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매출 규모 구분	하위 25%	하위 25~50%	하위 50~75%	상위 25%
의제매입 적용	-11.70*** (3.42)	-7.98* (4.59)	-3.18 (6.06)	-2.94 (10.44)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X	X	X	X
사업체고정효과	0	0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매입 대상 업체 포함	0	0	0	0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특징이 비슷한 간이사업자들을 매출 규모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IV-13>에 제시한다. 매출과표 하위 25%에 속하는 간이사업자 가운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에 비해 약 59%p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즉 가격 전가의 크기가 그만큼

낮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매출과표 하위 25~50% 구간의 사업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상위 50%의 매출과표 구간에 속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이 전가 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반사업자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표 IV-13〉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매출 규모 구분	하위 25%	하위 25~50%	하위 50~75%	상위 25%
의제매입 적용	-59.01*** (20.56)	-58.38*** (21.45)	-48.59 (49.11)	-9.07 (14.67)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X	X	X	X
사업체고정효과	0	0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매입 대상 업체 포함	0	0	0	0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도 적용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업체의 범위를 더욱 좁혀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고의 관심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최종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즉 세 부담 경감의 정도를 살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음식점업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체들 가운데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확률이 높은 사업체들에 대한 이질성 분석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으로는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체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거의 없는 사업체는 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확률이 높은 사업체를 선별한다. 이들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앞선 분석들과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다.

〈표 IV-14〉는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과표의 크기에 따라 앞선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앞선 논의의 결과와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매출 하위 그룹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받지 않는 사업체에 비해 약 2.9%p 부가가치가 낮다. 매출 하위 75% 사업체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오며, 매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효과의 크기는 작아진다.

〈표 IV-14〉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최종 소비자 거래 사업체)

부가가치율	(1)	(2)	(3)	(4)
매출 규모 구분	하위 25%	하위 25~50%	하위 50~75%	상위 25%
의제매입 적용	-2.91*** (0.32)	-2.83** (1.37)	-1.56** (0.75)	1.06 (7.79)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X	X	X	X
사업체고정효과	0	0	0	0
통제변수	0	0	0	0
재활용폐자원 매입 대상 업체 포함	0	0	0	0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사업자들의 전가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지막 분석으로 재활용폐자원 사업체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재활용폐자원 역시 의제매입세액으로 재활용 업체, 중고자동차 업체 등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들 사업체들에 대한 분석도 앞선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업종고정효과와 사업체고정효과를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고, 분석대상도 앞선 분석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표 IV-15〉의 (1)열과 (3)열은 의제매입을 적용받는 사업체 등 모든 사업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열과 (4)열은 의제매입 대상 업체를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열과 (2)열은 업종고정효과를 적용하였고, (3)열과 (4)열은 사업체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앞선 방법과 동일한 분석 모

형과 통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을 적용받는 사업체의 부가가치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는 앞선 분석과 뚜렷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격 전가 등의 사업자 행태에는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IV-15〉 재활용폐자원 매입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율	(1)	(2)	(3)	(4)
재활용폐자원 매입 적용	-7.64 (7.82)	-8.42 (6.99)	-11.61 (12.68)	-11.59 (11.30)
연도고정효과	0	0	0	0
업종고정효과	0	0	X	X
사업체고정효과	X	X	0	0
통제변수	0	0	0	0
의제매입 대상 업체 포함	X	0	X	0
관측 수	1,039,537	1,054,872	1,039,537	1,054,872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활용폐자원 매입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업종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재생용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도매업(업종코드: 514971), 중고상품 소매업(업종코드: 524091), 중고자동차판매업(501202)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해 본다. 분석 모형은 사업체고정효과를 사용하였다. 즉 각각의 업종 내에서 사업체들의 재활용폐자원 매입 적용이 연도별로 변이가 있고, 이 변이를 활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의 효과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표 IV-16〉의 (1)열은 재생용재료 및 기타 상품 도매업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이며, (2)열은 중고상품소매업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3)열은 중고자

동차판매업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이다. 재생용재료 및 기타 상품 도매업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율은 15.76%p 감소하였다. 중고상품소매업 내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율은 21.38%p 감소하였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규모인 6.77%p 감소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업종에서는 매입세액이 적용됨에 따라 부가가치율 혹은 사업자들의 전가 행태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의 변화가 작은 규모로 관찰되었는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가격 전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16〉 재활용폐자원 매입 적용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일부 업종 대상)

부가가치율	(1)	(2)	(3)
업종코드	514971	524091	501202
재활용폐자원 매입 적용	-15.76*** (1,551)	-21.38*** (8,214)	-6.77*** (1,391)
연도고정효과	0	0	0
사업체고정효과	0	0	0
통제변수	0	0	0
관측 수	15,958	1,851	2,652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금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 가격 전가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찾기 어렵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특히 매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체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의제매입이 없었다면,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를 더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복 과세 현상을

방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단계의 소비자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목표는 일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체를 살펴보았을 때도, 의제매입으로 가격 전가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규모 기준은 거의 두지 않고 업종 기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규모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이끄는 데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 분석

1) 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 분석

다음으로 제도의 세부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절에서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공제 한도의 변화가 사업자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부터였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효과 자체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제도 도입 이후 제도가 폐지되고 다시 도입되지 않아, 연구에 필요한 변이(variation)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토했듯이 2014년부터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각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이용하여 한도 도입 효과를 살펴본다.

이는 앞서 [그림 Ⅲ-1]과 [그림 Ⅲ-3]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변화가 면세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들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면세사업자 역시

간접적으로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태 변화 역시 관찰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과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적 가설을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제 한도가 설정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기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던 부분에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 공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2014년을 전후하여 이들의 실제 매입 공제 크기가 줄었다면, 이 감소분만큼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을 대체할 다른 매입 출처를 찾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부담을 다음 거래 단계에 전가시킴으로써 본인의 실질적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할 것이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한 면세농산물 등을 대체할 다른 매입 출처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경제적 전가의 형태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매입금액 조정 등에 대한 협상을 통해 본인의 매입세액공제 한도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자료로 분석해 본다.

기초 분석자료는 우선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주요 활용 변수는 제조원가, 연간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의 변수이다. 이때 부가가치액은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투입비인 원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연료비,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계정상에서 정의하는 부가가치액과 차이가 있다. 국민계정상에서 정의하는 부가가치액은 중간투입액 전체를 차감하는 것이 차이이다. 본고의 분석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 대상 업체가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지, 사용한다면 매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애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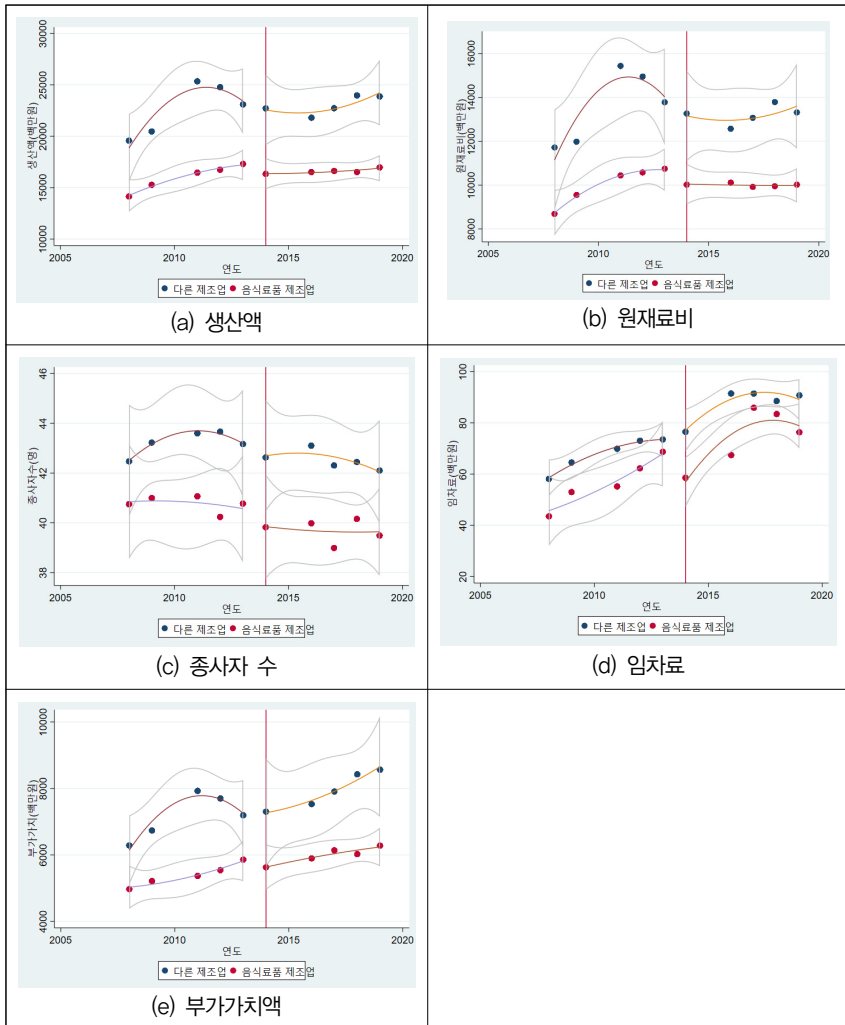
제도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료는 저자가 파악하기로 없다. 참고로 앞절의 분석에 사용된 부가가치세 신고 표본자료는 2014년 전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도 도입 자체에 대한 효과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는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와 통계청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자료로 구분한다.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는 공개된 시계열 연도는 더 길지만, 산업이 중분류로만 분류되어 산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좀 더 세세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통계청 서버에 접속하여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하였다.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은 중분류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른 제조업 부분, 예를 들어 섬유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의 경우 면세농산물을 매입할 가능성이 적다. 세분류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에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음료 제조업에는 발효주 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우선 공개된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과 기타 다른 제조업 전체를 비교해 본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다른 제조업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교 대상을 설정하였다. 물론 산업의 특징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를 통한 결론 도출은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이전에 주요 변수들에 대해 비교 대상 그룹 간 시계열 추이가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림 IV-2]는 2014년을 기준으로 생산액, 원재료비, 종사자 수, 임차료, 그리고 부가가치액에 대해 비교한 그림이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것이 음식료품 제조업을 나타내고,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것은 기타 다른 제조업을 의

미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두 업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d) 임차료 부분만이 기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감소가 확인되지만,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2] 음식료품제조업과 기타 제조업 비교 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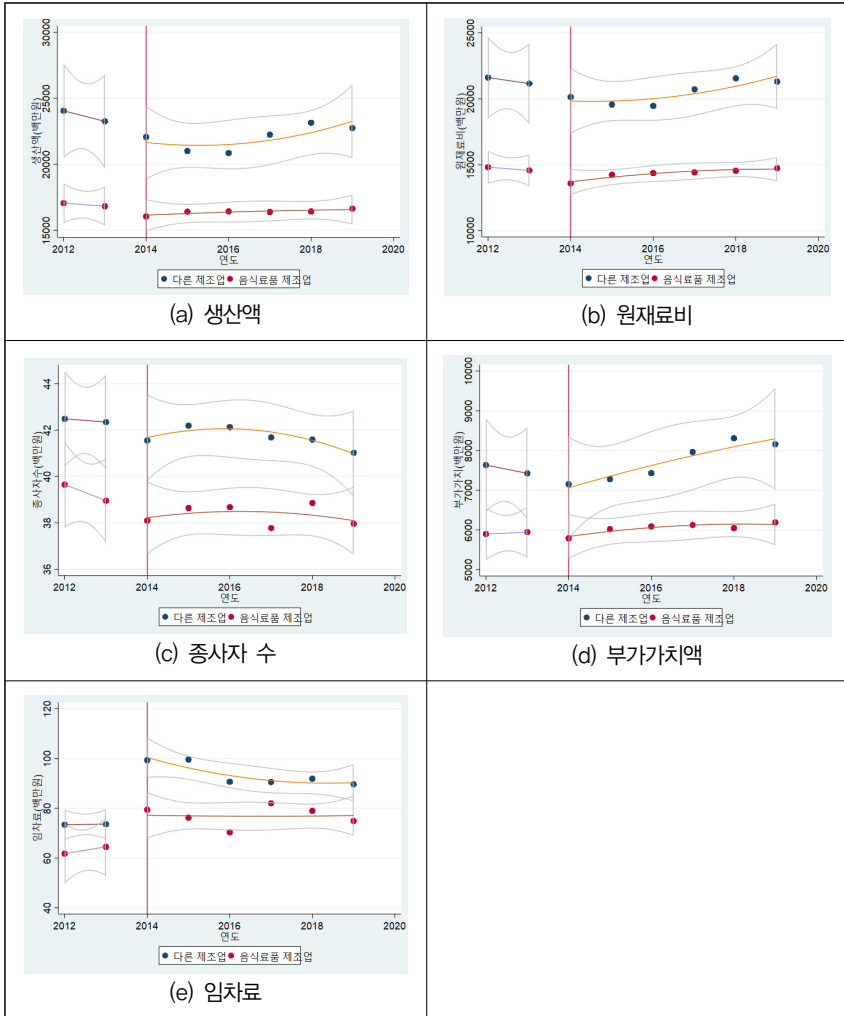
좀 더 세분화된 산업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통계청 서버자료를 사용하여 [그림 IV-2]와 유사한 분석을 [그림 IV-3]에서 검토하였다. [그림 IV-3]에는 음식료품 제조업과 유사한 특성의 제조업을 선별하여 생산액, 원재료비, 종사자수, 임차료, 부가가치액 등에 대해 2014년 공제 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두 산업 간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은 업종이 그렇지 않은 업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림 분석만으로는 뚜렷한 추세의 변화를 관찰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그래프 분석의 한계는 여러 통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분석이라는 점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효과를 회귀분석으로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법 형태의 분석을 통해 공제 한도 도입 이후 사업체의 매출과표와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식 (IV-3) 참조). 식별 전략은 전형적인 이중차분법 형태의 방정식이다.

$$y_{ijt} = \alpha_{\text{음식료품 제조업}} + \beta_{2014\text{년}} + \gamma_{\text{음식료품}} * 2014\text{년} + \theta_t + \delta_j + X_{ijt} + \epsilon_{ijt} \quad \text{식 (IV-3)}$$

이 식에서 i 는 사업체를, j 는 사업체가 속한 산업(중분류), t 는 연도를 의미하며, y_{ijt} 는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부가가치를 사용하였으나 여기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로그변수로 변환한 값을 사용한다. 음식료품제조업과 2014년은 각각 지시변수를 의미한다. 음식료품제조업인 경우 지시변수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2014년 이후이면 지시변수 1의 값을 갖고, 이전이면 0의 값을 갖는다. 통제변수 X 는 각 사업체의 영업비용, 원재료비, 종사자 수, 인건비, 자산 잔액 규모, 재고금액, 연료비, 세금과 공과금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θ_t 는 연도고정효과, δ_j 는 산업고정효과를 의미한다.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는 산업 단위에서 계산하였다. 이 회귀식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효과를 포착(capture)하는 계수는 γ 이다.

[그림 IV-3] 음식료품제조업과 기타 제조업 비교 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먼저 [그림 IV-3]에서 사용한 음식료품제조업과 기타제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V-17>에 제시한다. (1)열과 (2)열은 음식료품제조업을 비롯하여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에 포함된 모든 조사 대상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열과 (4)열은 음식료품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을 선별하여 분석 표본을 구성하였다. 유사한 업종 선별은 매출, 매입, 종사자 수, 인건비 등 자료의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로 유사도를 분류하여 유사한 제조업종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열과 (4)열 분석의 목적은 보다 비슷한 업종들을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1)열과 (3)열은 산업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2)열과 (4)열은 산업고정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IV-17〉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부가가치액)

로그부가가치액	(1)	(2)	(3)	(4)
교차항(음식료품*2014년)	0.018*** (0.006)	0.019*** (0.006)	0.026*** (0.009)	0.025*** (0.009)
음식료품제조업 더미	-0.140*** (0.005)	-0.148*** (0.005)	-0.180*** (0.008)	-0.174*** (0.008)
2014년 이후 더미	0.050*** (0.003)	0.101*** (0.003)	0.035*** (0.010)	0.104*** (0.008)
연도고정효과	0	0	0	0
산업고정효과	X	0	X	0
통제변수	0	0	0	0
성향점수로 표본 선택	X	X	0	0
관측 수	487,509	487,509	65,608	65,608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모형에서 저자가 관심 있는 계수는 교차항이며, 공제 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기타 다른 비슷한 업종과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교차항의 값은 모든 사업체를 분석 표본으로 한 (1)열과 (2)열 및 (3)열과 (4)열의 분석 결과는 절대적인 크기에서 차이가 있으나,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공제 한도가 도입된 이후 부가가치, 본고에서 간주하는 가격 전가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이 확인된다. 즉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적용을 받아, 다른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던 기타 업종에 비해 전가의 크기

가 약 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와 [그림 IV-3]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회귀분석상에서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다.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해 기타 다른 변수에 대해 동일한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임차료의 경우 부가가치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림 IV-2]에서 일부 차이가 관찰된 만큼 이에 대해 검토한다. <표 IV-18>에서는 교차항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공제 한도 설정 이후, 다른 업종에 비해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는 등의 행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자들이 매입세액공제를 부담했다고 간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본인의 부담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매입 당시 일부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임차료 부분은 다음 거래가 아닌 현재 거래에서 거래 전 단계 사업자와의 협상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이에 뚜렷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선 결과들과 연결하여 해석하자

<표 IV-18>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임차료)

임차료(백만원)	(1)	(2)	(3)	(4)
교차항(음식료품*2014년)	-8,008 (10,531)	-9,051 (10,524)	-20,823 (14,121)	-19,249 (13,107)
음식료품제조업 더미	-7,220 (9,105)	-3,780 (9,156)	-1,245 (9,574)	-0,157 (9,650)
2014년 이후 더미	17.06*** (4,934)	12,554*** (4,731)	29,515*** (11,531)	26,061** (11,235)
연도고정효과	O	O	O	O
산업고정효과	X	O	X	O
통제변수	O	O	O	O
성향점수로 표본 선택	X	X	O	O
관측 수	487,509	487,509	65,608	65,608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면 의제매입공제 한도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 전 단계 사업자와의 가격 협상 등의 조정이 아닌,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로 제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를 위해, 유형자산 합계 잔액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선형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 도입과 유형자산 등의 규모가 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관계가 나타난다면, 한도 도입 시점에 음식료품제조업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앞선 회귀 분석의 결과들의 추정치는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IV-19>에서 교차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는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유형자산 세부 항목별, 재고 자산, 재고 자산 항목별 등에 대해서도 강건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교차항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IV-19>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유형자산 잔액)

유형자산 잔액(백만원)	(1)	(2)	(3)	(4)
교차항(음식료품*2014년)	-127.52 (171.93)	-141.41 (171.93)	-390.62 (313.11)	-400.90 (388.76)
음식료품제조업 더미	-316.87** (148.63)	-224.19 (149.56)	56.65 (76.43)	75.45 (77.10)
2014년 이후 더미	115.38 (80.78)	353.72*** (77.30)	416.51*** (92.83)	856.58*** (90.80)
연도고정효과	0	0	0	0
산업고정효과	X	0	X	0
통제변수	0	0	0	0
성향점수로 표본 선택	X	X	0	0
관측 수	487,509	487,509	65,608	65,608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결과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제도의 적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체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미 의제매입세액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가 도입되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업자들이 다음 단계로 전가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전가를 줄이지만, 이미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경우에는 이 부담을 일부 다음 거래로 전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제 한도율 조정의 효과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이 변화되었을 때의 사업자 행태 변화이다. <표 Ⅲ-5>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사업자 가운데 음식점업 등의 경우, 매출과표 1억원과 2억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율의 변화가 있다. 다시 요약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식점업 등의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율이 60%이며, 매출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매출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한도율은 45%이다. 음식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경우 한도율은 매출액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50%, 2억원 초과는 40%이다. 한도율은 2018년 7월부터 각각 10%p씩 증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점을 이용한 분석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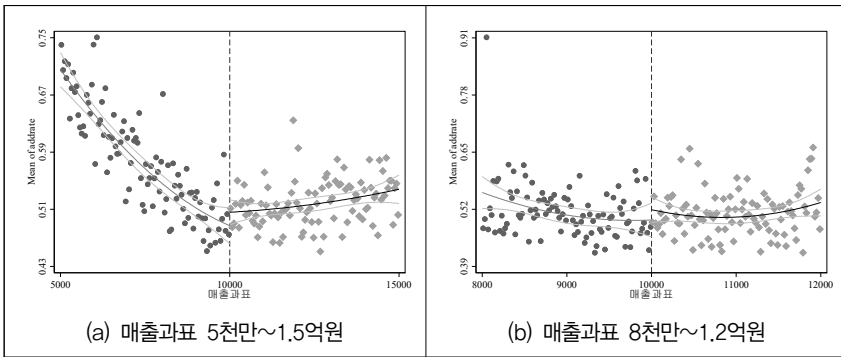
<그림 Ⅳ-4>는 음식점업 등의 2016년부터 2020년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매출과표 1억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Ⅳ-4>의 (a)는 매출과표 5천만원에서 1.5억원까지 표본을 대상으로 그렸으며, <그림 Ⅳ-4> (b)는 매출과표 8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좁혀서 그렸다. 매출과표 1억원 근방에서의 사업체들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체라고 가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1억원 주변에서의 공제 한도율 차이로 인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부가가치율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제 한도율 변화에 따른 뚜렷한 효과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추세 자체를 살펴보면, 매출과표 1억원 근방에서 부가가치율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한도율이 5%p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율의 크기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앞선 논의와 연결시킨다면, 사업체들이 비용 부담의 일

부를 전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도율의 변화가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앞선 분석 대상을 2016년부터 2018년, 2019년부터 2020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 [그림 IV-5]와 [그림 IV-6]에서도 역시 매출과표 1억원을 기준으로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율이 한도율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추세 자체가 매출과표 1억원을 중심으로 소폭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다.

[그림 IV-4]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1억원 기준, 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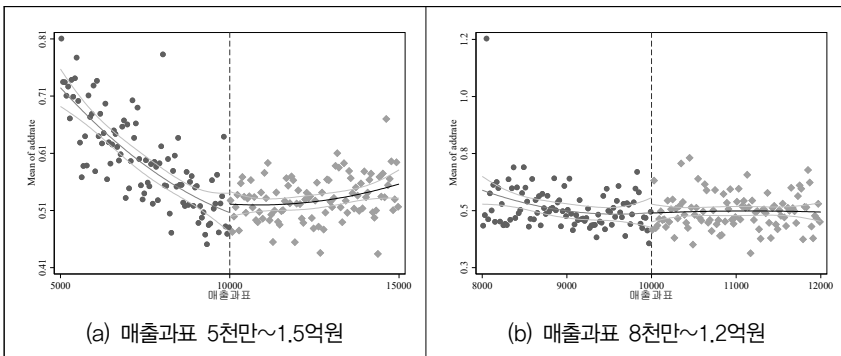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5]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1억원 기준, 2016~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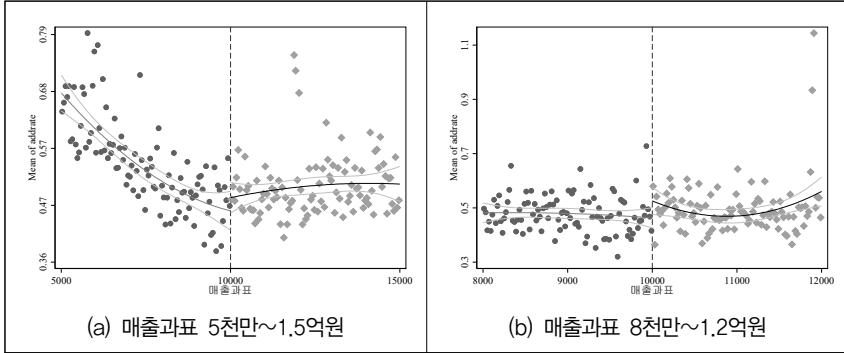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6]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를 비교
(1억원 기준, 2019~2020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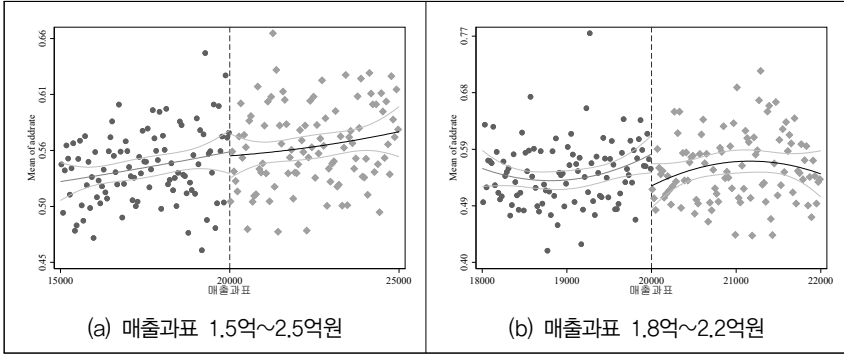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7]부터 [그림 IV-8]은 앞선 그림들과 동일한 분석을 매출과표 구간 2억원에 대해 검토한다. 매출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근방의 사업자들이 비교 가능한 집단임을 가정할 때, 한도율의 차이에 따라 관찰되는 부가가치율의 변화를 식별한다. 분석 결과, 2억원을 하회하는 사업체에서 2억원을 상회하는 사업체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오히려 높은 경향이 관찰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제 한도율의 차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행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본고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통계적 유의수준을 5%, 10%로 확대하더라도 매출과표 2억원 근방에서 사업체들의 부가가치율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지는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앞서 논의대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면,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들이 제도 변화에 따라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림 IV-6]의 분석대로 매출과표가 낮은 구간에서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등의 행태가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7]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2억원 기준, 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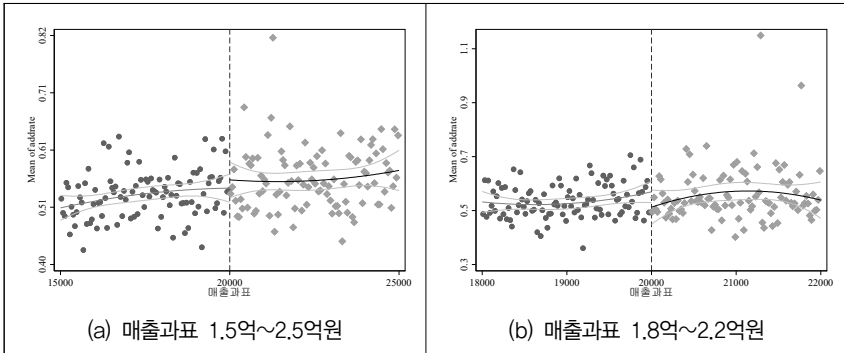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8]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2억원 기준, 2016~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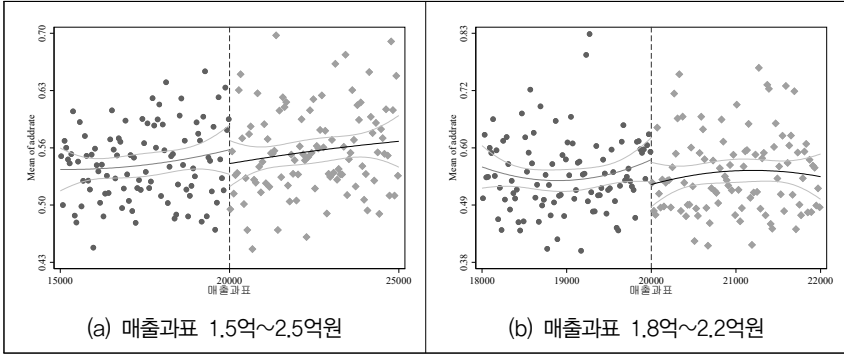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9]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2억원 기준, 2016~2018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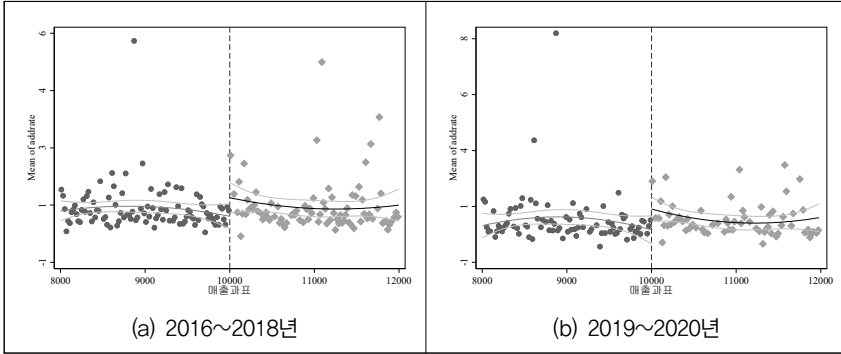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0]의 분석으로 앞서 논의에 사용된 것처럼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만을 선별하여 분석해 본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체들의 경우 매출과표 2억원 근방에서는 많이 관측되지 않아, 매출과표 1억원 근방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그림 IV-10]의 (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하였으며, (b)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한 그림이다. 매출과표 구간은 8천만원에서 1.2억원 구간을 사용하였다. 매출과표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을 상회하는 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하회하는 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비록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해석과 유사하게 공제 한도율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의 가격 전가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공제 한도율의 변화가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한도율의 차이가 5%p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행태 변화를 야기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IV-10] 음식점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
(1억원 기준, 최종 소비자 거래 사업체)

(단위: %, 만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분석에 더해, 회귀분석을 통해 공제 한도율에 따른 가격전가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조사 자료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이다. 공제 한도율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에 한도율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더 앞서서는 음식점업 등의 매출과표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한도율이 5%p 증가하였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에 더해 2016년에 공제 한도율이 30%에서 35%로 조정된 바 있다. 이를 모두 분석에 고려하고자 한다.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를 분석한다. 식별 전략은 앞선 식별 전략과 유사하다. 참고로 2015년 서비스업 조사는 「경제총조사」로 실시되어 표본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너무 많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표 표본을 별도로 추출하였다.

$$\begin{aligned} \text{부가가치율}_{ijt} = & \alpha \text{법인사업자}_{ijt} + \beta 2016\text{년} + \gamma \text{법인} * 2016\text{년} \\ & + \theta_t + \delta_j + X_{ijt} + \epsilon_{ijt} \end{aligned} \quad \text{식 (IV-4)}$$

식 (IV-4)에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이며, 2016년 이후에는 1을 갖는 변수, 2016년 이전은 0을 갖는 변수로, 앞선 분석과 동일

한 통제변수, 연도고정효과, 산업고정효과를 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을 사용한다. 2015년부터 2018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 한도율에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에 조정된 바 있다.

〈표 IV-20〉은 법인사업자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음식주점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평균적으로 일반개인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사업체들의 부가가치율은 상승하였다. 이는 모두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 본고의 관심인 교차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관측되지는 않았다.

〈표 IV-20〉 공제 한도율 변화의 효과(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조사)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율	(1)	(2)
교차항(법인사업자*2016년)	-0.012 (0.009)	0.004 (0.012)
법인사업자 더미	-0.139*** (0.006)	-0.147*** (0.007)
2016년 이후 더미	0.396*** (0.009)	0.385*** (0.009)
산업고정효과	X	O
연도고정효과	O	O
사업체지역고정효과	O	O
통제변수	O	O
관측 수	77,390	77,390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 개인 음식주점업 사업체에 대해 분석한다. 식별 전략은 식 (IV-4)와 유사하다. 개인 음식주점업 사업체의 경우에는 2015년에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공제율 변화가 상이하다. 따라서 규모를 기준으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식별 전략에 반영한다.

$$\text{부가가치율}_{ijt} = \alpha \text{매출1억초과}_{ijt} + \beta 2015\text{년} + \gamma 1\text{억초과} * 2015\text{년} \\ + \theta_t + \delta_j + X_{ijt} + \epsilon_{ijt} \quad \text{식 (IV-5)}$$

매출과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에 공제한도율이 각각 5%p씩 증가한 반면, 매출과표 1억원을 하회하는 경우 한도율은 60%로 변화가 없다. 분석 대상에 사용된 조사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2018년부터 개인 사업자들의 한도율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변이를 활용하기 위해 2017년까지의 자료를 검토한다. <표 IV-21>의 교차항 계수를 살펴보면 양(+)의 값을 갖고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매출과표 1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주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공제 한도율이 상향 조정된 이후 0.096%p만큼 소폭 부가가치를 조정하는 등의 행태 변화가 관찰된다. 공제 한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감소의 혜택이 있음에도 소폭 비용 감소에 따른 전가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전가의 증가가 관찰된다. 이는 앞선 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21> 공제 한도율 변화의 효과(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조사)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율	(1)	(2)
교차항(매출 1억원 초과*2015년)	0.096*** (0.007)	0.095*** (0.007)
매출과표 1억원 초과	-0.339*** (0.004)	-0.325*** (0.004)
2015년 이후 더미	-0.163*** (0.007)	-0.165*** (0.008)
산업고정효과	X	0
연도고정효과	0	0
사업체지역고정효과	0	0
통제변수	0	0
관측 수	62,136	62,136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에 대한 설명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연구는 Benzarti et al.(2020)이다. Benzarti et al.(2020)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하와 세율 인상이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 행태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제시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단기적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면, 이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여 소비자 가격 인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인하될 때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표 IV-21>의 결과와 앞선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과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공제 자체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가 행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의 전가 행태는 상황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제 한도 도입 자체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로 이어지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율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감소가 전가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3) 공제율 및 한도의 효과 분석

다음으로 공제율 조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2018년에 매출과표를 기준으로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이를 활용하여 공제율 조정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표 표본자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이다. 분석 표본으로는 비슷한 사업체들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음식료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가운데 매출과표가 1.5억원에서 2억원 혹은 1.8억원에서 2.2억원인 사업자들만 선택하였다. 식별 전략은 앞서 사용하였던 식별 전략들과 동일하다.

$$\begin{aligned} \text{부가가치율}_{ijt} = & \alpha \text{매출2억이하}_{ijt} + \beta 2018\text{년} + \gamma 2\text{억이하} * 2018\text{년} \\ & + \theta_t + \delta_j + X_{ijt} + \epsilon_{ijt} \end{aligned} \quad \text{식 (IV-6)}$$

매출과표 2억 이하는 지시변수이며, 2018년은 2018년 이후 1을 갖는 지시

변수이다. 연도고정효과, 산업고정효과는 기본적으로 통제하였고, 앞서 사용한 통제변수들과 동일한 변수들로 통제하였다. 식별 전략의 가정은 음식점업 사업체들 가운데 매출 2억원 전후의 사업체들의 부가가치율이 비슷한 추세를 따르고, 공제율에 변화가 있었던 2018년 이후 매출과표 기준으로 그 추세 혹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표 IV-22>는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1)열은 매출과표를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2)열은 매출과표 1.8억원에서 2.2억원으로 더 좁혀 분석한 결과이다. (1)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 분석의 관심 계수인 교차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의 변화가 1%p보다 작게 상향 조정된 것이 행태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제율 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비용 감소를 다음 거래 단계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앞선 결과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2> 공제율 변화의 효과(음식식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율	(1)	(2)
교차항(매출과표 2억원 이하*2018년)	0.006 (0.004)	0.002 (0.004)
매출과표 2억원 이하	-0.692*** (0.004)	-0.225*** (0.005)
2018년 이후 더미	0.003 (0.003)	0.003 (0.004)
산업고정효과	0	0
연도고정효과	0	0
사업체지역고정효과	0	0
통제변수	0	0
관측 수	42,585	16,417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비슷한 방법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업체에 대해 공제율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16년 이후로 매입세액공제

율이 3/103으로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 반면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2018년에 9/109에서 10/110으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16년에 공제율이 5/105에서 3/103으로 조정되어 공제율 하향 조정의 효과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의 기간이 2016년 이후라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기 어렵다. 식별 전략은 앞선 식별 전략과 동일하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체만 선별하여 이들을 분석한다. 식별 전략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체의 부가가치율은 공제율 변화 이전에 비슷한 추세를 가정한다.

$$\text{부가가치율}_{ijt} = \alpha \text{중고자동차}_{ijt} + \beta 2018\text{년} + \gamma \text{중고자동차} * 2018\text{년} + \theta_t + \delta_j + X_{ijt} + \epsilon_{ijt} \quad \text{식 (IV-7)}$$

식 (IV-7)에서 중고자동차는 중고자동차 업체를 의미하는 지시변수이며, 재활용폐자원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2018년은 2018년 이후를 의미하는 지시변수이다. 회귀분석 식에 연도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는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표 IV-23>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교차항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된다. 공제율이 약 0.6%p 상향 조정되어 사업체들에게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겠지만, 다음 단계로의 전가는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록 그 크기는 소폭 증가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업체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거래 단계에도 그 유리한 방향이 계속하여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3〉 공제율 변화의 효과(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부가가치율	(1)
교차항(중고자동차*2018년)	0.312*** (0.012)
중고자동차	-0.612*** (0.010)
2018년 이후 더미	0.124*** (0.011)
산업고정효과	0
연도고정효과	0
통제변수	0
관측 수	18,051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공제율 및 공제 한도와 관련한 마지막 분석으로 공제율과 한도율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공제율과 한도율 변수를 각 사업체에 맞게끔 배정하고, 이를 변수로 그대로 분석한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율과 한도율의 변수 값은 0을 갖는다. 기본적인 식별 전략은 앞선 방법들과 동일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정치에 편이의 가능성은 있다.

〈표 IV-24〉 공제율과 한도율의 변화

부가가치율	(1)	(2)	(3)	(4)
공제율	-19.73*** (1.30)	-18.15*** (1.75)	-2.56* (1.42)	-3.77* (2.02)
한도율	-1.66*** (0.32)	-1.86*** (0.21)	-1.23 (1.02)	-1.45 (1.25)
산업고정효과	X	0	X	0
연도고정효과	0	0	0	0
통제변수	0	0	0	0
관측 수	215,810	215,810	143,223	143,223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4〉는 공제율과 한도율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1)열과 (2)열은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 분석 결과이며, (3)열과 (4)열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들만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1)열과 (2)열에서는 공제율이 올라갈수록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의 크기는 작아지고, 한도율의 경우도 증가함에 따라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추정되며 계수의 크기도 크게 추정된다. 반면에 (3)열과 (4)열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만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계수의 크기도 많이 작아진다. 앞선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자체와 한도 도입의 효과는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영향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정책 자체는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 행태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율 및 한도율의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인하는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4. 추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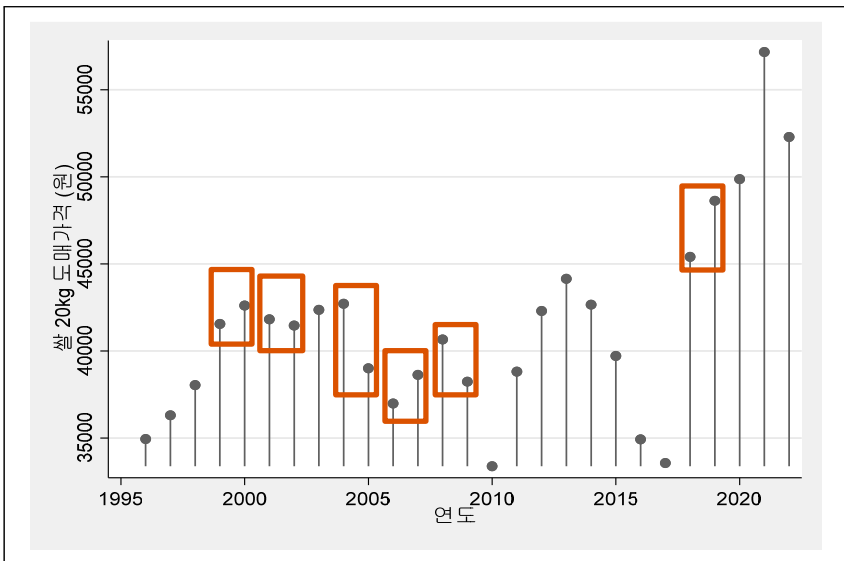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의 보완 차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 앞선 분석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최종 소비자로 연결되는 거래 과정의 부가가치율 혹은 가격 전가의 행태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의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 받는 과세사업자가 전 단계 거래 과정에서는 가격 전가 등의 행태 변화 여부이다. 만약 전 단계 거래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 행태 등에 변화가 발생하면, 과세사업자의 가격 전가 등 앞서 살펴본 효과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순(net) 효과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추정된 계수 값에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 등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직전 거래 사업자

인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재화 등의 가격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 단계 거래 사업자인 면세사업자와의 협상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IV-11]은 쌀 도매가격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준다. 쌀 도매가격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과세사업자가 매입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빨간색 상자로 표시한 부분은 연도별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연도를 나타낸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 방향과 쌀의 도매가격의 변화 방향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3/103에서 5/105로 상승한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쌀 도매가격이 소폭 상승하였고, 공제율이 5/105에서 3/103으로 하락한 2001년과 2002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공제율이 3/103에서 다시 5/105로 상승한 2004년과 2005년에는 오히려

[그림 IV-11] 연도별 쌀 도매가격의 변화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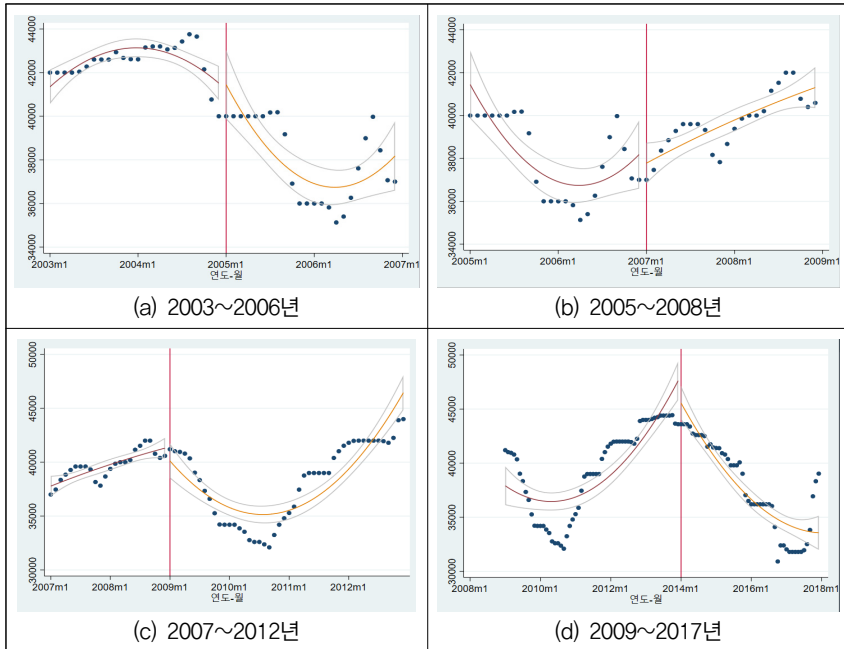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쌀 도매가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과 2009년에도 공제율은 6/106에서 8/108로 증가하였으나 쌀 도매가격은 하락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과세사업자가 구입하는 쌀 가격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통한 가격효과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최종 거래 단계인 소비자와의 거래 단계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가격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IV-12]에 연도별로 구간을 나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와 한도의 변화가 있었던 해를 중심으로 가격의

[그림 IV-12]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쌀 도매가격 변화

(단위: 만원)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절(discontinuity) 현상이 발생되는지 살펴본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서 제공하는 월별 전국 쌀 도매가격을 수집하여, 이를 월별로 평균을 산출한 후 비교하였다. [그림 IV-12] (a)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을, (b)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c)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d)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쌀 도매가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a)의 2005년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에서 3/103으로 감소한 시점이었고, (b)의 2007년에는 공제율이 5/105에서 6/106으로 증가한 시점이었다. (c)의 2009년에는 공제율이 6/106에서 8/108로 증가한 시점이었다. (d)는 공제율이 8/108로 유지된 2009년부터 2017년을 보여주며, 2014년에는 공제 한도가 적용된 시점이었다. 쌀 도매가격의 경우 등락을 거듭하지만, 공제율의 변화시점 혹은 공제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시점에 맞춰 가격 변화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그림 IV-1]에서 살펴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해석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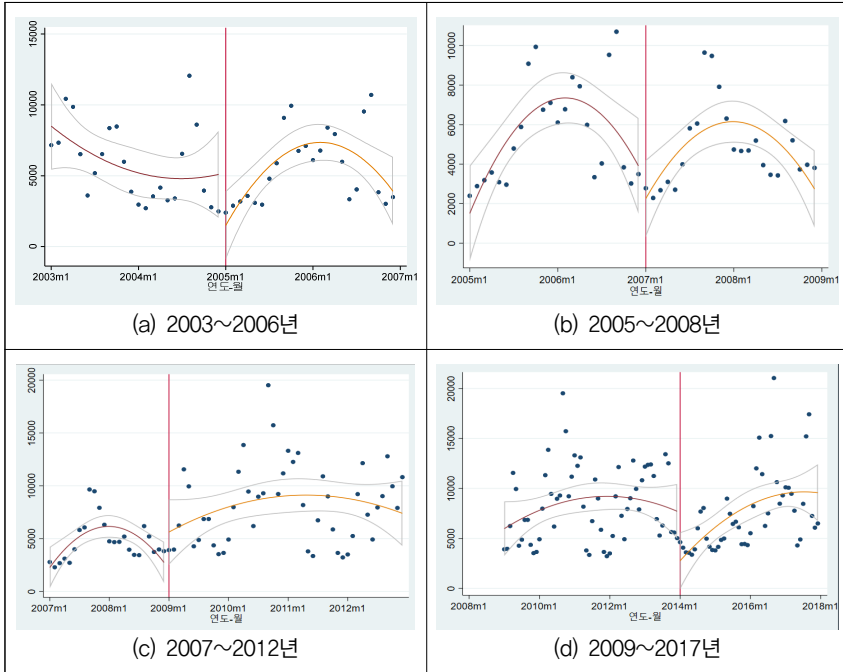
쌀 도매가격 외에 추가로 배추 도매가격과 고등어 도매가격에 대해서도 [그림 IV-13]과 [그림 IV-14]에서 살펴본다. 배추 및 고등어 도매가격도 공제율 변화에 따른 가격의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도율이 도입된 2014년을 기점으로 배추 가격 및 고등어 가격이 하락한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하락이 아니어서, 의미 있는 해석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래프 분석상에서는 공제율 조정, 공제 한도의 도입이 도매가격 자체에 영향을 준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 절에서 살펴본 과세사업자의 가격 전가 행태는 앞선 거래 단계에서의 영향에 따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의 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영향이 대부분 최종 거래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앞선 분석과 유사한 분석을 소비자 소매가격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이 분석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면세사업자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만약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 과정에서 가

[그림 IV-13]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배추 도매가격 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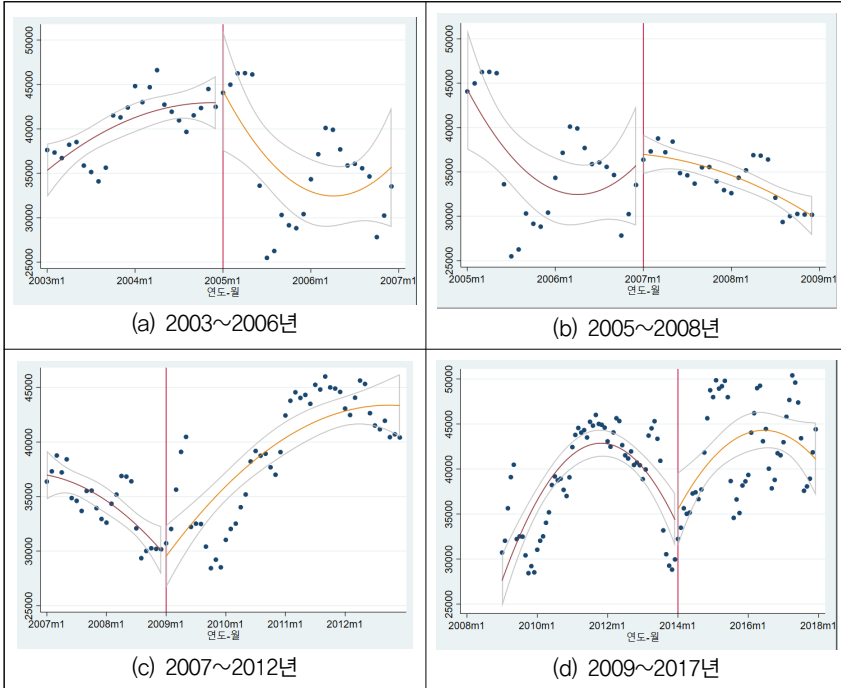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가격 전가 등의 행태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앞서 살펴본 과세사업자의 최종 거래 단계로의 가격 전가 등의 행태 변화 효과에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의 도입 및 변화로 인해 면세사업자의 최종 거래 단계의 행태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은 최종 거래 단계에서의 과세사업자의 가격 전가로 추정할 추정 값이 과세사업자의 행태 변화와 면세사업자의 행태 변화를 모두 포함한 값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앞서 추정한 값을 제도의 변화에 따른 과세사업자의 행태 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소매가격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IV-14]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고등어 도매가격 변화

(단위: 만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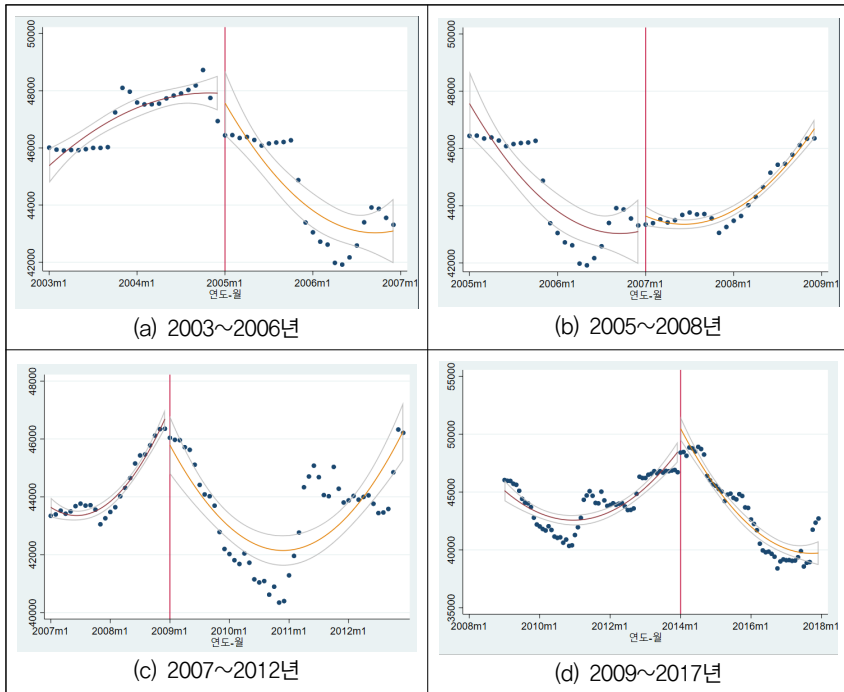
[그림 IV-15]부터 [그림 IV-17]은 쌀, 배추, 고등어 소매가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 앞선 도매가격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에 따른 쌀, 배추, 고등어 등의 소매가격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공제 한도 도입 이후 고등어 소매가격은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고등어 소매가격의 경우, 2014년 직후 약 6개월 정도 높은 수준이 지속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쌀과 배추 소매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제율과 한도 도입 시점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에 주목할 만한 가격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공제율 변화 전

후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한도율 도입 이후 고등어 소매가격의 인상이 관찰된다. 물론 고등어 소매가격 인상이 의제매입의 한도 도입에 따른 효과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식별 전략을 통한 회귀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적 사항, 소득, 소비, 그리고 이러한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림 IV-15]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쌀 소매가격 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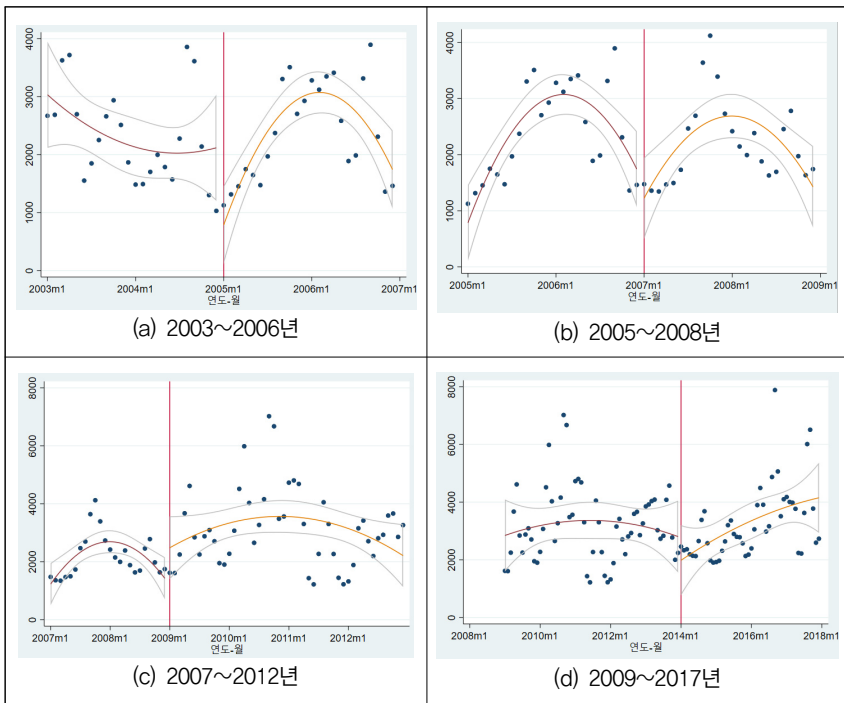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선 논의들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과세사업자의 행태 변화에 따른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의 변화에 따른 과세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전 단계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해소시키는 것이 아닌, 다음 거래 단계인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V-16]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배추 소매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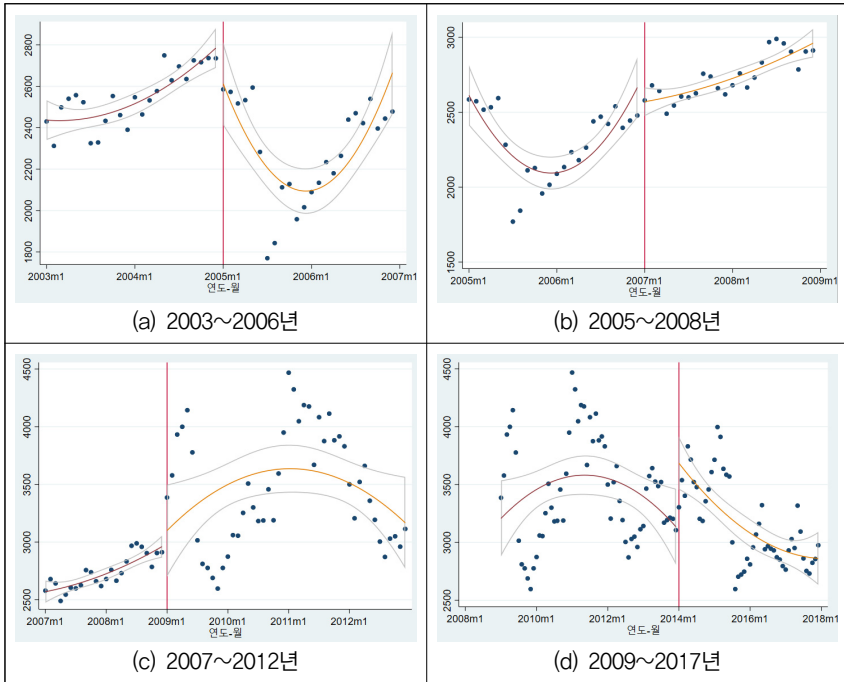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7] 공제율 및 한도 도입 변화에 따른 고등어 소매가격 변화

(단위: 만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소결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사업자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행태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의제매입 적용 여부, 한도율 변화 등에 따라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행태 변화가 공제 한도율 및 공제율 변화의 방향과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의 효과는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제매입을 이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조정을 통해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개념적 정리의 시나

리오 분석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하지 않는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은 세수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지원 목적으로 공제율을 과대하게 적용할 경우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중간면세 등으로 인한 중복과세로 더 걷은 세금을 다시 사업자에게 지원금의 형태로 주면서 세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면세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이라는 목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앞선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림잡은 계산(back-of-the-envelope)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체들을 살펴볼 때, 의제매입을 허용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가격 전가율은 2%p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제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금액의 10/110을 전부 전가한다고 가정하고 의제매입세액을 허용하게 되면, 의제매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허용하는 경우의 차이만큼 전가한다고 가정한다. 앞선 제Ⅱ장의 시나리오 분석에서의 검토 내용을 따르면, 이론적으로 가격 전가의 크기는 $100 * \frac{10}{110}$ - 의제매입세액공제율'만큼 될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9/109인 경우에는 그 크기는 0.834%p일 것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108인 경우에는 1.684%p일 것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인 경우에는 4.329%p일 것이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으로 인해 공제율이 9/109인 경우에는 0.834%p만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8/108인 경우에는 1.684%p만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는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이보다 더 큰 감소가 관찰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이론적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 전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인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10%의 매입세액과의 차이보다 더 크게 전가한다.

V.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소비자의 부가가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앞선 사업자 분석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자의 가격 전가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제율 및 한도율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가격 전가의 행태는 뚜렷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제율 및 한도율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될 경우 다음 거래 단계에 그 유리한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실제 가격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의 크기를 추정하여, 유효 세부담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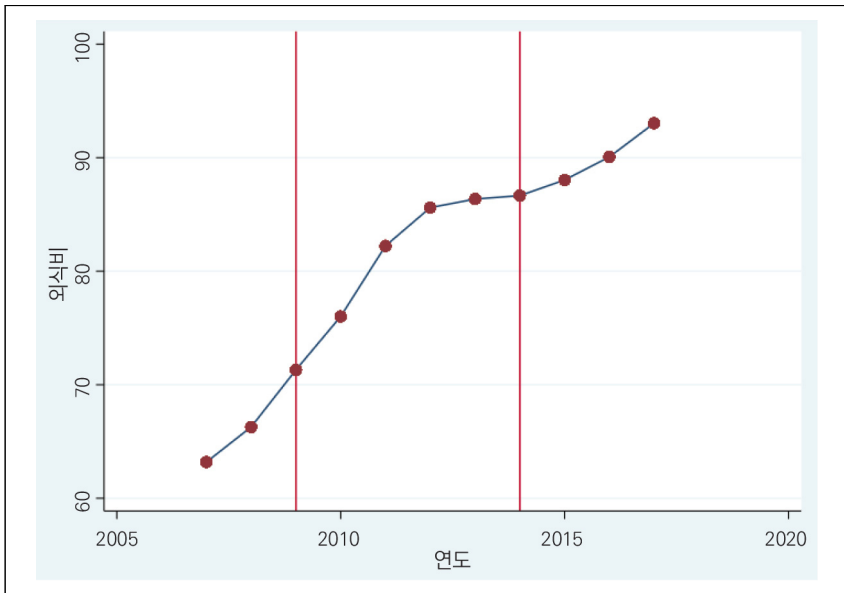
1.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분석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외식비를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변화에 따른 외식비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외식비 정보를 활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가계동향조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V-1]은 응답자들의 평균 외식비 총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빨간색 실

선으로 표시된 시점은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2009년과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을 의미한다. 외식비 총액의 경우 추세상으로는 2012년 이후부터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 도입에 따른 제도와는 그림상 큰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림 V-1] 외식비 총액 추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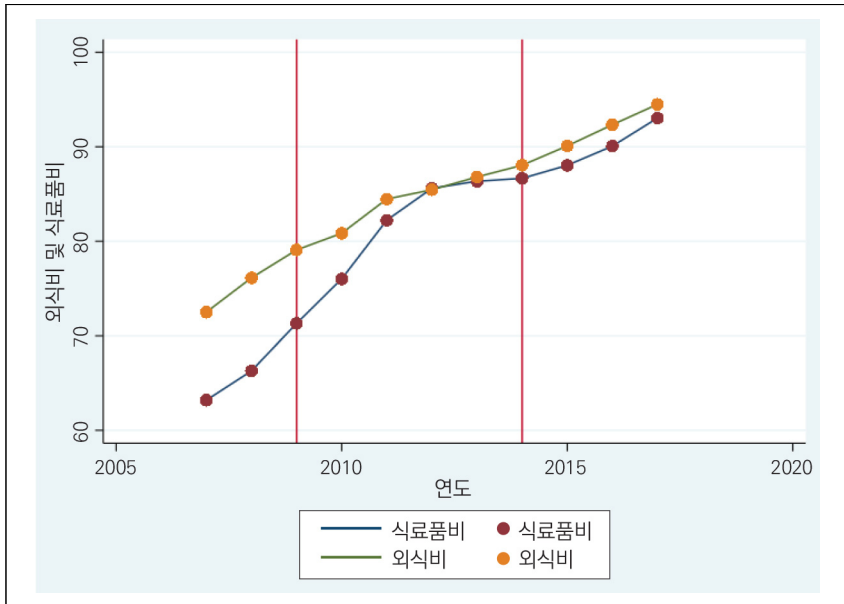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내부 인가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외식비와 식료품비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면세사업자의 최종 거래 과정에서의 가격 전가 등의 행태 변화는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식료품비 지출의 변화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작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소비자의 외식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식료품비와의 비교가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림 V-2]에서 외식비와 식료품비 지출 추이를 비교하였다. 2012년 전에는 외식비의 증가 속도가 식료품비의 증가 속도보다 빨랐으나,

2012년 이후에는 외식비의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두 항목의 총지출에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림 V-2] 외식비 및 식료품비 지출 추이 비교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내부 인가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변화가 소비자의 외식비 총액 및 식료품비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해 본다. 우선 2009년의 공제를 변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기간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정하고, 2009년 이전·이후를 지시변수로 활용하고 외식비와 식료품비도 각각 지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아이디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가 외식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식료품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제도 변화 이후 소비자의 지출액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하고 분석하였으며, 각 연도의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연도의 특성을 통제한다. 추가적으로 식 (V-2)에서는 2014년의 한도 도입 효과를 살펴본다. 기본적인 분석 방법과 아이디어는 식 (V-1)과 동일하며, 2014년의 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지시변수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으로 한다. 분석의 기본 가정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변화 시점 전후에 외식비 지출과 식료품비 지출의 추이가 평행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그림 V-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전에는 두 항목의 지출 추이가 비교적 평행하고, 2014년 이전의 추이의 평행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2009년 분석의 경우 본 분석의 식별 전략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고, 2014년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text{지출액} = \alpha \text{외식비}_{ijt} + \beta 2009\text{년} + \gamma \text{외식비} * 2009\text{년} + \theta_t + X_{ijt} + \epsilon_{ijt}$$

식 (V-1)

$$\text{지출액} = \alpha \text{외식비}_{ijt} + \beta 2014\text{년} + \gamma \text{외식비} * 2014\text{년} + \theta_t + X_{ijt} + \epsilon_{ijt}$$

식 (V-2)

〈표 V-1〉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조정된 2009년 이후 외식비의 총 지출액은 식료품비 총 지출액에 비해 8%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경감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비자들은 높은 지출을 부담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V-1〉의 (3)열과 (4)열의 결과는 2014년 공제 한도 도입 이후 외식비 및 식료품비 총 지출액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한 (4)열의 값을 해석하면, 2014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 이후 외식비 지출액은 식료품비 지출액에 비해 19%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소

비자에게 크게 전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열 및 (2)열의 결과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고, 비용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전가의 크기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외식 횟수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총액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앞선 식 (V-1)과 식 (V-2)에 외식 횟수를 추가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식료품비 지출 횟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해 통제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이지만, 식료품비 지출 횟수의 경우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것을 가정한다.

〈표 V-2〉는 외식 횟수를 통제한 후 〈표 V-1〉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외식 횟수를 통제하고도 식 (V-1)과 식 (V-2)의 관심 계수인 교차항의 계수값은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변화가 외식 횟수를 통한 조정이 아닌, 외식 가격 조정을 통해 외식비 총액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1〉 공제율과 한도 변화에 따른 지출액 변화 효과 - 외식 총액

로그 지출액	(1) 2009년 더미	(2) 2009년 더미	(3) 2014년 더미	(4) 2014년 더미
연도 더미(2009년 또는 2014년)	-0.112** (0.034)	0.100 (0.245)	0.002 (0.024)	0.250** (0.094)
외식비	-1.589*** (0.020)	-1.493*** (0.119)	-1.294*** (0.059)	-1.221*** (0.044)
교차항	0.059*** (0.012)	0.080** (0.029)	0.200** (0.065)	0.190*** (0.039)
연도고정효과	X	X	O	O
통제변수	O	O	O	O
관측 수	108,935	108,935	124,346	124,346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내부 인가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 공제율과 한도 변화에 따른 지출액 변화 효과 - 외식 횟수 통제

로그 지출액	(1) 2009년 더미	(2) 2009년 더미	(3) 2014년 더미	(4) 2014년 더미
연도 더미 (2009년 또는 2014년)	0,014 (0,048)	-0,150 (0,216)	-0,061 (0,050)	0,062 (0,060)
외식비	-1,441*** (0,039)	-1,504*** (0,100)	-1,272*** (0,050)	-1,257*** (0,050)
교차항	0,053*** (0,011)	0,088** (0,042)	0,197*** (0,055)	0,195*** (0,049)
연도고정효과	X	X	O	O
통제변수	O	O	O	O
관측 수	108,935	108,935	124,346	124,346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내부 인가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앞선 사업자 분석 결과의 해석과 유사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등의 변화로 인해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소비자들의 외식 지출이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편이 소비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소비자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소비자들의 세 부담 변화

소비자 부담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과거 박명호·정재호(2014)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 추정을 통해 검토되었다.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의 경영 지원 차원의 목적을 갖는 제도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도입 목적은 중복 과세 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예에서처럼 만약 사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따라

전가의 크기를 다르게 취할 경우, 정책 목적 달성은 요원하다. 예를 들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작을수록 사업자 자신이 실제 부담했다고 생각하는 매입세액의 크기와 차이가 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 전가를 더 심하게 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더 커지게 된다.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은 소비 항목별 유효세율을 산출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한 중복과세 등을 고려한 실질적 세 부담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지만, 본 절에서 직접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과세사업자가 최종 거래 단계인 소비자에게의 가격 전가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세율 추정을 통해 비교할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를 마지막 거래 단계의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의제매입공제로 인한 추가 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절에서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항목별 유효세율의 크기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Gottfried and Wiegard(1991)와 기존 선행 연구를 따라 한국은행의 2016년과 2019년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값을 이용하여 검토한다.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서 해당 거래 단계까지 발생한 부가가치를 차감한 후, 해당 거래 단계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중간 거래 단계의 면세에 대해 다음 거래 단계에 과세가 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유효세율의 크기는 0%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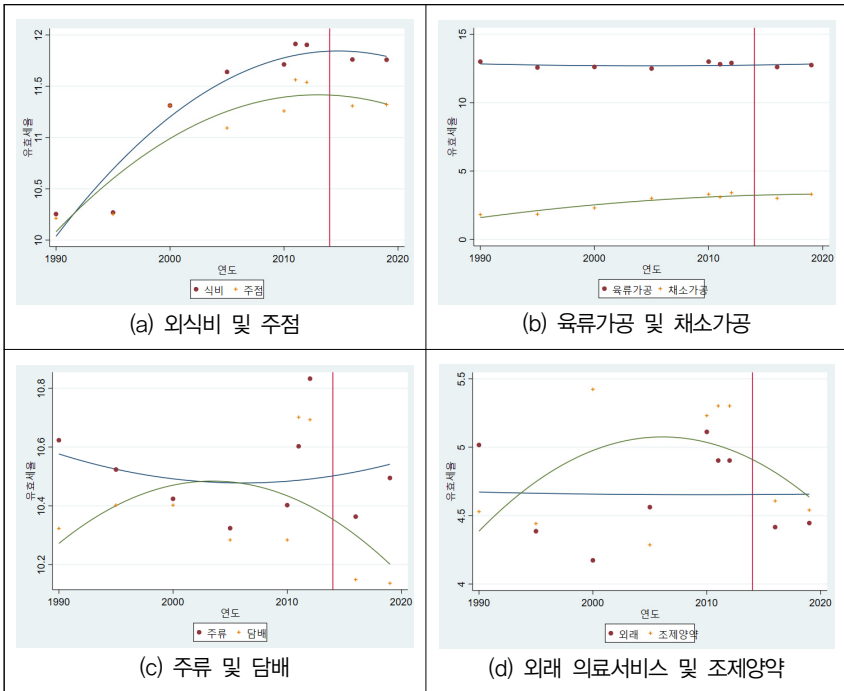
박명호·정재호(2014)에서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비항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대해 추정하였다. 곡물 등의 소비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효세율은 약 1~3%로 추정이 되었고, 교육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유효세율은 3%대로 추정되었다. 본고에서는 과거 연구의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효세율

추정치와 앞선 연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 추정한 2016년과 2019년의 유효세율을 사용하여, 총 9개 연도의 유효세율 값으로 분석한다.

[그림 V-3]은 일부 소비 항목별로 유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V-3] (a)는 외식비 및 주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내고, (b)는 육류가공 및 채소가공, (c)는 주류 및 담배, (d)는 외래 의료서비스 진료 및 조제양약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보여준다. 육류가공 및 채소가공, 주류 및 담배, 외래 의료서비스 및 조제양약의 경우에는 유효세율의 뚜렷한 추이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반면 외식비 및 주점의 경우 2000년에 유효세율이 1990년 및 199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2000년도에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변화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업종별 공제율의 차등 적용이 도입된 점이다.

[그림 V-3] 소비항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단위: %)



자료: 박명호·정재호(2014), pp. 115~154 유효세율 자료 및 저자 추정치를 사용하여 작성

음식점업은 공제율이 3/103에서 5/105로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들은 3/103으로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다. 특히 외식비 및 주점과 육류가공 및 채소가공을 비교해 보면, 2000년 이후의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사업자들에게는 비용 절감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유효세 부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이 관찰된다. 그 이후 2005년, 2007년, 2009년 모두 음식점업의 공제율은 상향 조정되었는데, 오히려 소비자의 외식비 및 주점의 유효세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따라서 [그림 V-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사업자들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있어도,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인 지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V-3] 중간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2014년이다. 2014년에는 앞서 논의했듯이, 공제 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 공제 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 앞서 논의의 결과 소비자들에게 일부 전가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그림 V-3]의 (a)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 및 한도의 도입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VI.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설문조사 분석

제VI장에서는 앞선 정량 분석 결과 이외에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제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한다. 또한 앞선 정량 분석 자료를 통해 도출한 연구의 시사점이 설문조사 결과와 논리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 제도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 인식하는 제도와 실제 사업자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대상은 일반업종(음식점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과 중고차판매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⁴⁾ 일반업종은 의제매입세액 적용 대상인 업종을 의미하며, 중고차판매업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 적용 대상인 업종을 의미한다. 제도 적용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업종도 설문에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일반 업종은 총 응답 사업체 수는 230개이며, 중고차판매업 등의 설문대상 업종은 총 20개이다. 일반업종 응답 사업체 230개 중 일반사업자는 215개(93.5%), 간이사업자는 10개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 업종을 살펴보면 일반업종 응답 사업체 가운데, 16%인 36개는 유흥주점업, 63%인 146개는 일반음식점업, 21%인 48개는 휴게음식점업에 종사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 대상 응답 업종은 모두 중고차판매업이다. 일반업종 응답자 가운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122명으로 응답 표본의 53%였으며,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응답 표본 20명 전부 의제매입세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업종 응답자 가운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

4) 설문내용과 설문 관련 통계 및 보고서는 부록에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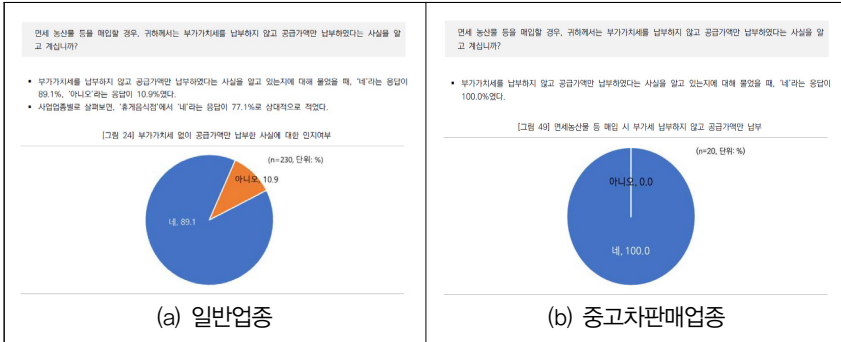
고 있는 사업자들의 91.2%가 공제율 9/109를 적용받고 있고, 7.9%는 8/108을 적용받고 있다. 중고차판매업 응답자의 경우에는 100% 모두 9/109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평균 약 391만원이었으며, 의제매입이 전체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9%로 나타났다. 일반업종의 사업 업종별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살펴보면, 유흥주점업이 약 454만원, 일반음식점은 약 490만원, 휴게음식점은 약 35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를 전체 매입금액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40.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유흥주점업은 17.5%, 휴게음식점은 8.4%였다. 중고차판매업은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약 3,629만원을 받았고, 전체 매입에서 의제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3%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과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의제매입이 전체 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이들 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혜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Ⅶ장에서는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업자의 행태 변화와 관련한 설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지한 사업자의 비중은 89%를 넘었으며, 특히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지 비중은 약 93%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자들의 경우에는 100%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그림 Ⅶ-1).

[그림 VI-1] 매입 시 부가가치세 미납부에 대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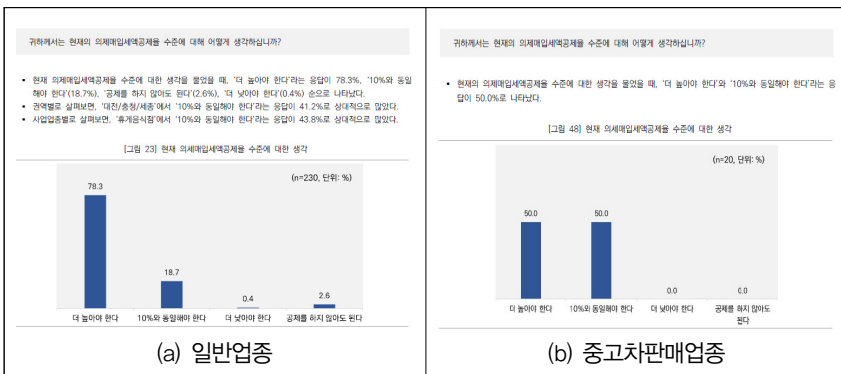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10%보다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VI-2). 이는 사실상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본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

[그림 VI-2]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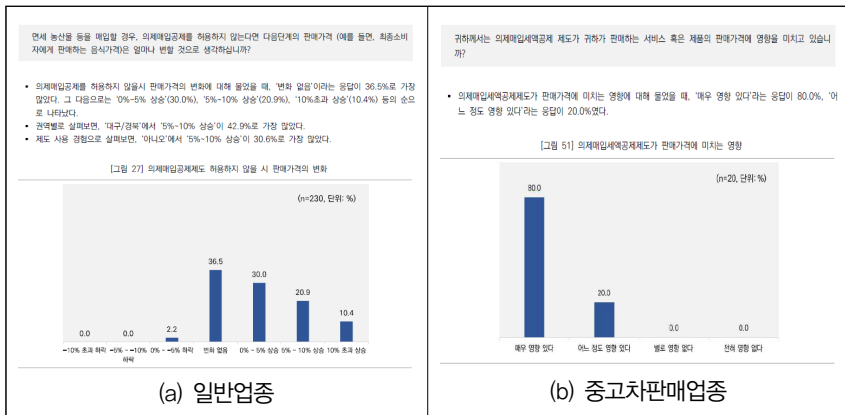


자료: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금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편이 어려웠던 것은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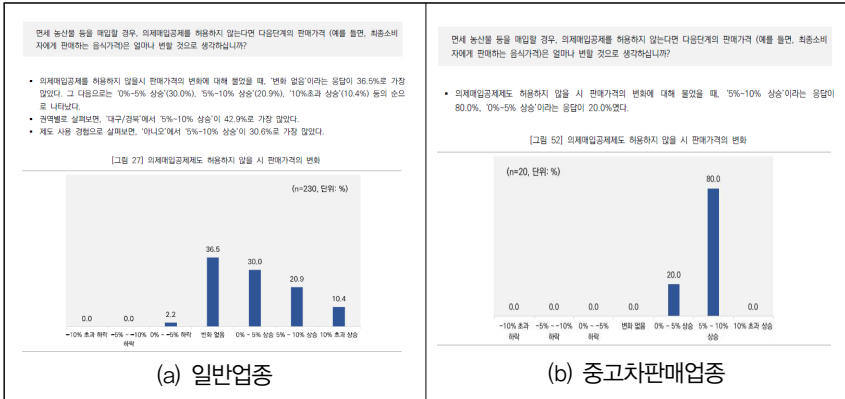
본고의 주요 관심사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매입가격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업종의 경우 28%,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100%이다.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업종의 경우 7.8%, 중고차판매업은 80%,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업종은 20%, 중고차판매업도 20%이다. 만약 의제매입을 받지 않게 되면 예상되는 다음 거래 단계에서의 가격 변화에 대해 일반업종은 0~5% 하락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 변화 없음은 36.5%, 0~5% 상승은 30%, 5~10% 상승은 20.9%, 10% 초과 상승은 10.4%로,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60%가 넘는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0~5%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5~10%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로 응답자 모두 다음 거래 단계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VI-3), [그림 VI-4]).

[그림 VI-3]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료: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그림 VI-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의 변화 예상



자료: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행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묻는 질문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어 매입 당시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의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최종 가격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설문의 응답자들에게 제공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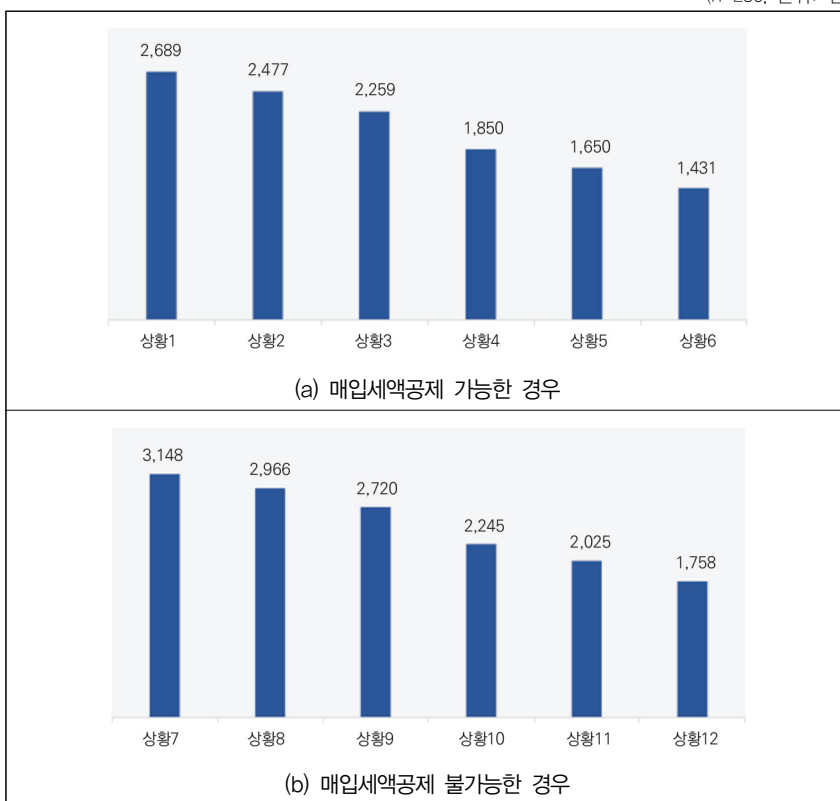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상품을 A원에 매입하여, B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본 상황에 더해 몇 가지 다른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상황 3을 예로 들면, 상품 매입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한 경우, 귀하께서는 이제 얼마에 판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의 상황에 대해 판매금액 B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매입(A)	판매(B)	부가가치세 납부
기본 1	1,000	2,000	100원
상황 1	1,300	()	매입세액은 130원
상황 2	1,200	()	매입세액은 120원
상황 3	1,100	()	매입세액은 110원
상황 4	900	()	매입세액은 90원
상황 5	800	()	매입세액은 80원
상황 6	700	()	매입세액은 70원

구분	매입(A)	판매(B)	부가가치세 납부
상황 7	1,3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8	1,2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9	1,1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0	9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1	8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2	700	()	매입세액은 0원

[그림 VI-5] 일반업종 사업자들의 가격 설정 시나리오

(n=230,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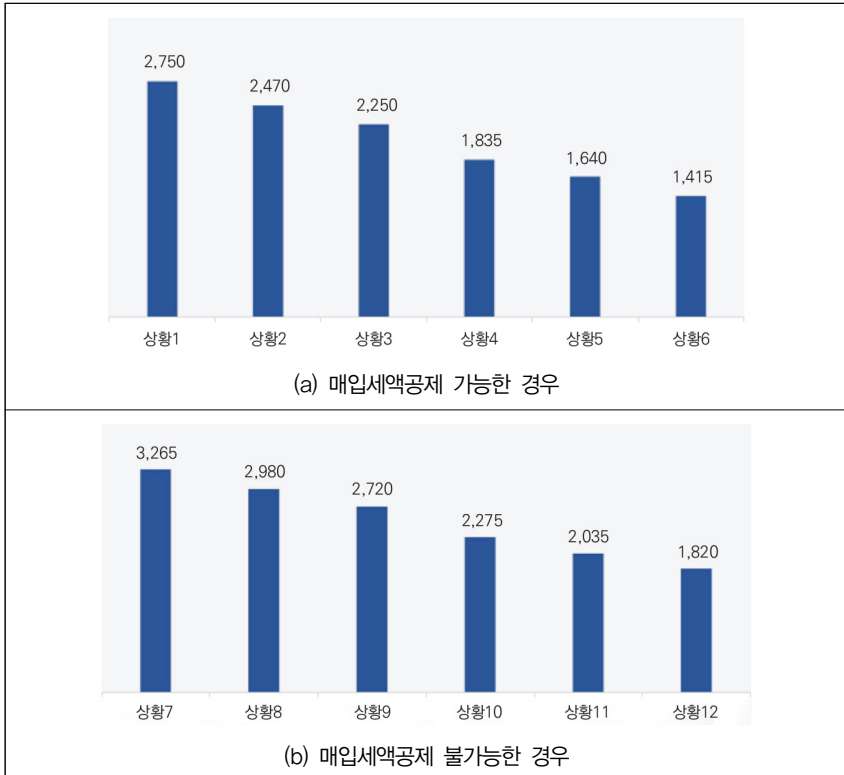
자료: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그림 VI-5]와 [그림 VI-6]은 일반업종과 중고차판매업자들의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분포를 보여준다. 상황 1과 상황 7은 서로 대칭되는 상황으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만 다르다. 마찬가지로 상황 2와 상황 8, 상황 3과 상황 9, 상황 4와 상황 10, 상황 5와 상황 11, 상황 6과 상황 12가 서로 대칭적인 상황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판매 가격을 상승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 1의 경우, 매입세액을 허용할 경우 1,300원에 매입한 재화의 판매 가격은 2,689원이었으며, 매입세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3,148원으로 높아졌다. 상황 6의 경우에도 700원에 매입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판매 가격이 평균 1,431원이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그림 VI-6] 중고차판매업 사업자들의 가격 설정 시나리오

(n=20, 단위: 만원)



자료: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평균 약 1,758원이었다. [그림 VI-6]에서 중고차판매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양상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상황 1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3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의 평균적인 판매가격은 2,750만원이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 3,265만원이었다. 상황 6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7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의 판매가격은 평균 1,415만원이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판매가격은 평균 약 1,820만원으로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높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자들의 행태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앞선 가상의 질문에서 기본적인 상황은 재화를 1천원에 매입하여 2천원에 판매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1천원이며, 부가가치율은 100%(100*부가가치 1천원/매입가격 1천원)이다.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 평균적으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표 VI-1>과 같다. 이 분석은 일반업종에만 한정하여 분석한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표본 수가 작아서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일반업종의 결과와 동일하다. 상황 1과 7의 경우 재화를 1,300원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인데,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경우에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율은 평균 106.63%인 반면,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율의 평균은 142.14%로 그 차이가 약 35%p이다. 매입가격에 따른 다른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결과의 해석은 동일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판매 가격이 낮고 부가가치율이 작다는 점이다. 이는 앞 장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사업자들이 비용의 감소를 인지하고 다음 거래 단계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의제매입을 허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의 부가가치율(100%)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율이 산정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성이 있는 것 역시 제V장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표 VI-1〉 일반업종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부가가치율

(단위: %, %p)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입세액 불공제	차이(%p)
상황 1, 7	106.83	142.14	35.31
상황 2, 8	106.41	147.14	40.73
상황 3, 9	105.38	147.23	41.85
상황 4, 10	105.56	149.47	43.91
상황 5, 11	106.25	153.15	46.90
상황 6, 12	104.41	151.12	46.71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추가적으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의 부가가치율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검토한 이론적인 분석을 적용하여 이론적인 판매가격과 응답자가 답변한 판매가격을 비교한다. 〈표 VI-2〉의 첫 번째 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응답한 판매가격의 평균을 표시하였으며, 두 번째 열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응답한 판매가격의 평균을 표시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림 VI-5〉의 값과 동일하다. 세 번째 열은 두 판매가격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네 번째 열은 상황 1부터 상황 6까지의 경우에 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열은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의 차이를 의미한다.

〈표 VI-2〉 일반업종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판매가격

(단위: 원)

구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경우의 판매가격(A)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의 판매가격(B)	차이 (C=B-A)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경우의 매입세액(D)	가격 전가 (E=C-D)
상황 1, 7	2,688.69	3,147.83	459.14	130	329.14
상황 2, 8	2,476.96	2,965.65	488.69	120	368.69
상황 3, 9	2,259.13	2,719.57	460.44	110	350.44
상황 4, 10	1,850	2,245.22	395.22	90	305.22
상황 5, 11	1,650	2,025.22	375.22	80	295.22
상황 6, 12	1,430.87	1,757.83	326.96	70	256.96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2〉에서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매입세액의 크기만큼 다음 단계로 전가할 유인이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상황 1과 7을 비교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평균 2,688.69원에 판매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매입세액의 크기만큼 다음 거래 단계에 전가할 유인이 있고, 이럴 경우 판매가격은 2,818.69원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전가의 크기는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크기의 비용보다 더 큰 규모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을 〈표 VI-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예상한 2,818.69원보다 329.14원 더 많은 3,147.83원에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표 VI-2〉의 마지막 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받게 되는 매입세액의 크기보다 2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 더 많은 부담을 다음 거래 단계에 전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매입금액이 커질수록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적인 가격 전가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들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격 전가의 크기를 줄여 소비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율, 즉 가격전가의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표 VI-1〉의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매입금액의 크기가 작을수록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커지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앞선 결과의 해석에 보충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 앞 장의 분석 내용이었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외연적(extensive) 효과, 그리고 이질적(heterogeneous) 효과 등의 결과를 보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설문에서는 공제를 변화에 따른 효과에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아 내연적(intensive)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후속연구로 남겨 둔다.

VII. 정책 시사점 및 결론

본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의 이용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인 정량 분석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실증분석과 설문 분석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만 이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공제율 및 한도 조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유인 구조 변화, 소비자들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의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면세거래가 포함된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제도의 예외적 적용사항이기 때문에, 면세를 통한 정책적 목적 달성 여부가 면밀히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제에 있어 예외적 적용은 조세의 형평성과 경제 주체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간 단계의 면세 거래로 인한 중복과세 현상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면세의 혜택을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려는 정부의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목적 달성보다는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경감해 주는 실질적인 사업자 지원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다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자들 역시 이 제도를 사업자 지원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세액공제에 대한 선호는 강한 것을 볼 때, 이 제도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한 중복과세 문제의 해결보다는 제도

의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사업자들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와 설문자료를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연구에 새로운 부분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은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는 매입세액불공제 규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동 제도를 세액공제가 아닌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게 조정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두지 않고도 중복과세, 소비자 부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단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제매입을 이용하고 있는 한, 공제율의 조정을 통한 중복과세 현상의 완화 등의 가능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 역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율 역시 마찬가지다. 분석 결과, 공제 한도율의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한도가 도입된 시점에는 일부 가격 전가의 완화효과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공제 한도율이 도입된 이후 한도율 변화를 통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율을 높여서 사업자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관찰 결과 가운데 하나는 사업자들의 행태는 공제율 및 한도율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칭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제율 및 한도율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든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든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예전과 같은 가격 혹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대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율 및 한도율의 주기적인 변화는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운영은 단순한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구조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면, 제도의 대상의 폭을 좁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역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의 과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여러 선진적인 시스템을 잘 흡수하여 선진적으로 운영되는 세목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외적인 조항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세, 부가가치세제로 인한 경제 활동의 왜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최종담세자는 소비자들이다. 지나친 예외 사항으로 인한 왜곡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원 및 세수의 확충을 위해 소비자들의 납세 순응은 중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세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대체 가능한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구원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따른 외식기업의 영향도에 관한 연구」, 『관광래저연구』, 제26권 제4호, 2014, pp. 205~220.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2020년 각 연도.
- 박명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194호, 2012, pp. 24~41.
- 박명호·정재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서희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무학연구』, 제7호, 1996, pp. 185~213.
- 안창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선방안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18집, 2002, pp. 41~60.
- 이준규·채상병,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적정성」, 『조세법연구』, 제12권, 제1호, 2006, pp. 213~233.
- 전병목·류덕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조명환·송헌재, 「중고차 시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후생효과 분석」, 『세무와 회계연구』, 제10권 제1호, 2021, pp. 183~215.
- 차삼준·김병일,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제8권 제2호, 2019, pp. 71~110.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7~2019년 각 연도.
- _____, 「광업·제조업 조사」, 2005~2020년 각 연도.

하세정·정재호·성명재,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재할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a.

하세정·홍성훈·구자은·구원일,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b.

하세정·정재호·송헌재,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6.

_____, 「산업연관표」, 2019.

〈외국 문헌〉

Benzarti, Y, Carloni, D., Harju, J., and Kosonen, T., “What goes up may not come down: Asymmetric incidence of Value-Added Tax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12), 2020, pp. 4438~4474.

Gottfried, P. and Wiegard, W., “Exemption versus zero rating: A hidden problem of VA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3), 1991, pp. 307~328.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검색일자: 2022. 5. 24.

_____,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검색일자: 2022. 5. 24.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관리사업자(2016. 12월 말)」,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437&h>, 검색일자: 2022. 3.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item.do>, 검색일자: 2022. 3. 12.

부 록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보고서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전반의 효과성 평가와 가격 전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대상

- 음식점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사업자

3. 조사 진행 경과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 2022년 10월 1일~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음

4. 조사 내용

분류	내용
응답자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연도• 성별• 거주 지역• 최종학력

분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수 • 월평균 가구소득 • 월평균 개인소득
사업자 현황 (일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사업 업종 • 사업의 주력 분야 • 사업장 위치 • 사업 운영 연수 • 상용직원의 수 • 무급가족의 수 • 사업장의 점유 형태 • (임대인 경우) 월 임차료 • 세무 대리인 여부 • 연간 평균 총 매출액 • 연간 평균 총 매입액 • 연간 평균 총 매입액 중 현금 매입액 비중 • 연간 총 경비 • 연간 평균 총 급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소득세 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사용 경험 (일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 •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 •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연간 보장받지 못한 매입 금액 • 연간 총 매입액 가운데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의제매입공제율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 신용카드 등을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 영수증 수취분을 통한 취득금액과 매입세액 공제액 • 계산서 수취분을 통한 취득금액과 매입세액 공제액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한 사실 인지 여부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 시 의제매입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판매가격의 변화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상황 1~상황 6)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상황 7~상황 12)

분류	내용
<p>사업자 현황 (중고차판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사업 업종 • 사업의 주력 분야 • 사업장 위치 • 사업 운영 연수 • 상용직원의 수 • 무급가족의 수 • 사업장의 점유 형태 • (임대인 경우) 월 임차료 • 세무 대리인 여부 • 연간 평균 총 매출액 • 연간 평균 총 매입액 • 연간 평균 총 매입액 중 현금 매입액 비중 • 연간 부가가치세 규모
<p>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사용 경험 (중고차판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 •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 •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연간 보장받지 못한 매입 금액 • 연간 총 매입액 가운데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의제매입공제율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 신용카드 등을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 영수증 수취분을 통한 취득금액과 매입세액 공제액 • 계산서 수취분을 통한 취득금액과 매입세액 공제액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한 사실 인지 여부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 재활용 폐자원 매입 시 의제매입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판매가격의 변화 • 중고자동차 매입 시 개인과 사업자 간에 매입가격 차이 •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하는 정도 • 사업자에게 더 비싸게 매입하는 정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시행 • 매출신고 축소사례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상황 1~상황 6)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상황 7~상황 12)

5. 응답자 특성

〈부표 1〉 응답자 특성_일반업종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230)	100.0
성별	남자	(117)	50.9
	여자	(113)	49.1
연령대	30대 이하	(22)	9.6
	40대	(49)	21.3
	50대	(78)	33.9
	60대 이상	(81)	35.2
권역	서울	(39)	17.0
	경기/인천	(44)	19.1
	대전/충청/세종	(51)	22.2
	광주/전라	(32)	13.9
	대구/경북	(14)	6.1
	부산/울산/경남	(27)	11.7
최종학력	강원/제주	(23)	10.0
	초졸	(0)	0.0
	중졸	(17)	7.4
	고졸	(134)	58.3
	대졸	(79)	34.3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유형주점업	(36)	15.7
	일반음식점	(146)	63.5
	휴게음식점	(48)	20.9
	과자점업	(0)	0.0
	도정업	(0)	0.0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0)	0.0
기타	(0)	0.0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미만	(58)	25.2
	450만~600만원 미만	(45)	19.6
	600만~800만원 미만	(59)	25.7
	800만원 이상	(68)	29.6
월평균 개인소득	250만원 미만	(60)	26.1
	250만~400만원 미만	(47)	20.4
	400만~550만원 미만	(64)	27.8
	550만원 이상	(59)	25.7
제도 사용경험	네	(122)	53.0
	아니오	(108)	47.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 응답자 특성_중고차판매업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20)	100.0
성별	남자	(11)	55.0
	여자	(9)	45.0
연령대	30대 이하	(2)	10.0
	40대	(4)	20.0
	50대	(11)	55.0
	60대 이상	(3)	15.0
권역	서울	(9)	45.0
	경기/인천	(7)	35.0
	대전/충청/세종	(1)	5.0
	광주/전라	(0)	0.0
	대구/경북	(0)	0.0
	부산/울산/경남	(0)	0.0
최종학력	강원/제주	(3)	15.0
	초졸	(0)	0.0
	중졸	(1)	5.0
	고졸	(11)	55.0
	대졸	(8)	40.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사업업종	중고차판매업	(20)	100.0
	자동차부품 도매업	(0)	0.0
	기타	(0)	0.0
월평균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6)	30.0
	1천만~1,400만원 미만	(6)	30.0
	1,400만~1,800만원 미만	(5)	25.0
	1,800만원 이상	(3)	15.0
월평균 개인소득	900만원 미만	(6)	30.0
	900만~1,400만원 미만	(6)	30.0
	1,400만~1,750만원 미만	(4)	20.0
	1,750만원 이상	(4)	20.0
제도 사용경험	네	(20)	100.0
	아니오	(0)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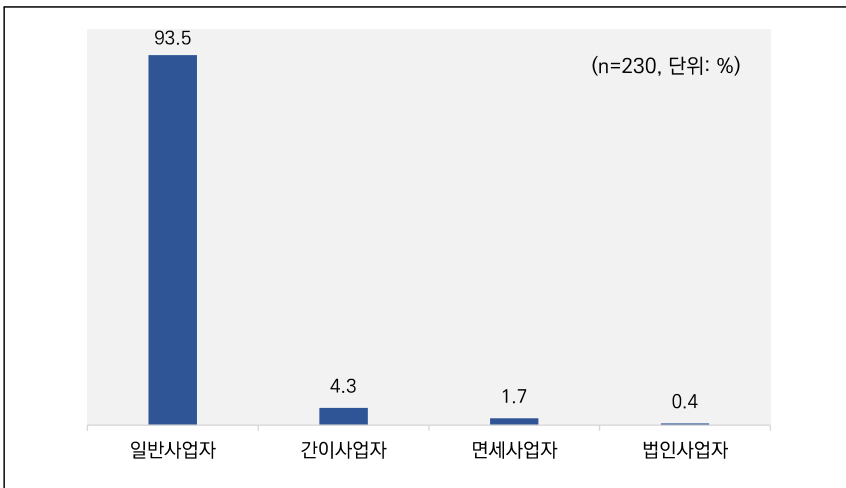
1. 사업자 현황(일반업종)

1) 사업 유형

귀하의 사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 사업 유형에 대해 물었을 때, '일반사업자'가 9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간이사업자'(4.3%), '면세사업자'(1.7%), '법인사업자'(0.4%) 순이었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면세사업자'가 10.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그림 1] 사업 유형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 사업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체	(230)	93.5	4.3	1.7	0.4	
성별	남자	(117)	92.3	3.4	3.4	0.9
	여자	(113)	94.7	5.3	0.0	0.0
연령대	30대 이하	(22)	95.5	4.5	0.0	0.0
	40대	(49)	93.9	6.1	0.0	0.0
	50대	(78)	94.9	2.6	2.6	0.0
	60대 이상	(81)	91.4	4.9	2.5	1.2
권역	서울	(39)	79.5	7.7	10.3	2.6
	경기/인천	(44)	95.5	4.5	0.0	0.0
	대전/충청/세종	(51)	94.1	5.9	0.0	0.0
	광주/전라	(32)	96.9	3.1	0.0	0.0
	대구/경북	(14)	92.9	7.1	0.0	0.0
	부산/울산/경남	(27)	100.0	0.0	0.0	0.0
	강원/제주	(23)	100.0	0.0	0.0	0.0
최종학력	초졸	(0)	0.0	0.0	0.0	0.0
	중졸	(17)	100.0	0.0	0.0	0.0
	고졸	(134)	89.6	7.5	2.2	0.7
	대졸	(79)	98.7	0.0	1.3	0.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36)	100.0	0.0	0.0	0.0
	일반음식점	(146)	93.2	3.4	2.7	0.7
	휴게음식점	(48)	89.6	10.4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미만	(58)	91.4	8.6	0.0	0.0
	450만~600만원 미만	(45)	93.3	4.4	2.2	0.0
	600만~800만원 미만	(59)	91.5	5.1	1.7	1.7
	800만원 이상	(68)	97.1	0.0	2.9	0.0
월평균 개인소득	250만원 미만	(60)	91.7	8.3	0.0	0.0
	250만~400만원 미만	(47)	87.2	8.5	2.1	2.1
	400만~550만원 미만	(64)	96.9	1.6	1.6	0.0
	550만원 이상	(59)	96.6	0.0	3.4	0.0
제도 사용경험	네	(122)	91.0	4.9	3.3	0.8
	아니오	(108)	96.3	3.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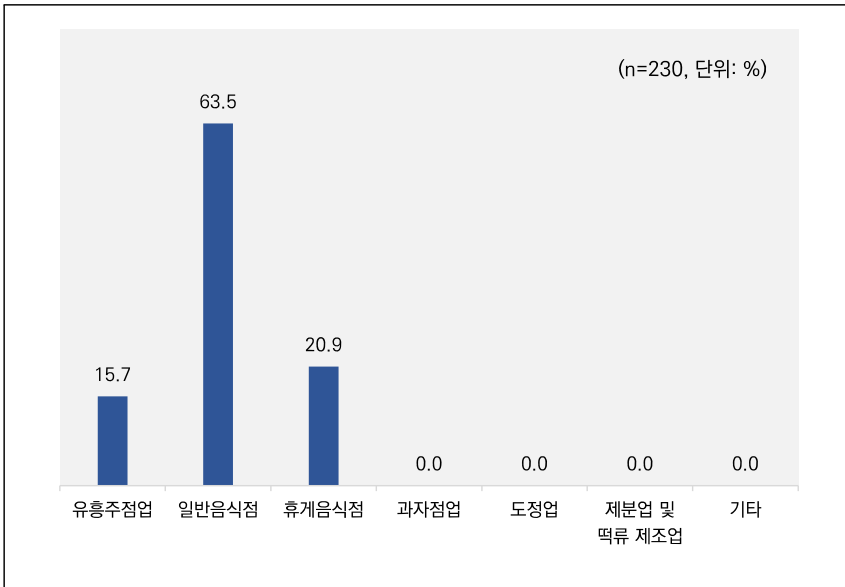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사업 업종

귀하의 사업 업종은 무엇입니까?

- 사업 업종에 대해 물었을 때, ‘일반음식점’(63.5%), ‘휴게음식점’(20.9%), ‘유흥주점업’(15.7%)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휴게음식점’이 50.0%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2] 사업 업종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 사업 업종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유흥 주점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과자점 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기타
전체		(230)	15.7	63.5	20.9	0.0	0.0	0.0	0.0
성별	남자	(117)	23.1	61.5	15.4	0.0	0.0	0.0	0.0
	여자	(113)	8.0	65.5	26.5	0.0	0.0	0.0	0.0
연령대	30대 이하	(22)	9.1	40.9	50.0	0.0	0.0	0.0	0.0
	40대	(49)	22.4	46.9	30.6	0.0	0.0	0.0	0.0
	50대	(78)	20.5	61.5	17.9	0.0	0.0	0.0	0.0
	60대 이상	(81)	8.6	81.5	9.9	0.0	0.0	0.0	0.0
권역	서울	(39)	10.3	84.6	5.1	0.0	0.0	0.0	0.0
	경기/인천	(44)	18.2	65.9	15.9	0.0	0.0	0.0	0.0
	대전/충청/세종	(51)	23.5	31.4	45.1	0.0	0.0	0.0	0.0
	광주/전라	(32)	18.8	71.9	9.4	0.0	0.0	0.0	0.0
	대구/경북	(14)	0.0	85.7	14.3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27)	18.5	59.3	22.2	0.0	0.0	0.0	0.0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4.3	73.9	21.7	0.0	0.0	0.0	0.0
	초졸	(0)	0.0	0.0	0.0	0.0	0.0	0.0	0.0
	중졸	(17)	23.5	76.5	0.0	0.0	0.0	0.0	0.0
	고졸	(134)	19.4	73.9	6.7	0.0	0.0	0.0	0.0
	대졸	(79)	7.6	43.0	49.4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0.0	0.0	0.0
	450만원 미만	(58)	13.8	69.0	17.2	0.0	0.0	0.0	0.0
	450만~600만원 미만	(45)	26.7	55.6	17.8	0.0	0.0	0.0	0.0
	600만~800만원 미만	(59)	16.9	57.6	25.4	0.0	0.0	0.0	0.0
월평균 개인 소득	800만원 이상	(68)	8.8	69.1	22.1	0.0	0.0	0.0	0.0
	250만원 미만	(60)	15.0	70.0	15.0	0.0	0.0	0.0	0.0
	250만~400만원 미만	(47)	19.1	44.7	36.2	0.0	0.0	0.0	0.0
	400만~550만원 미만	(64)	20.3	60.9	18.8	0.0	0.0	0.0	0.0
제도 사용 경험	550만원 이상	(59)	8.5	74.6	16.9	0.0	0.0	0.0	0.0
	네	(122)	9.0	70.5	20.5	0.0	0.0	0.0	0.0
	아니오	(108)	23.1	55.6	21.3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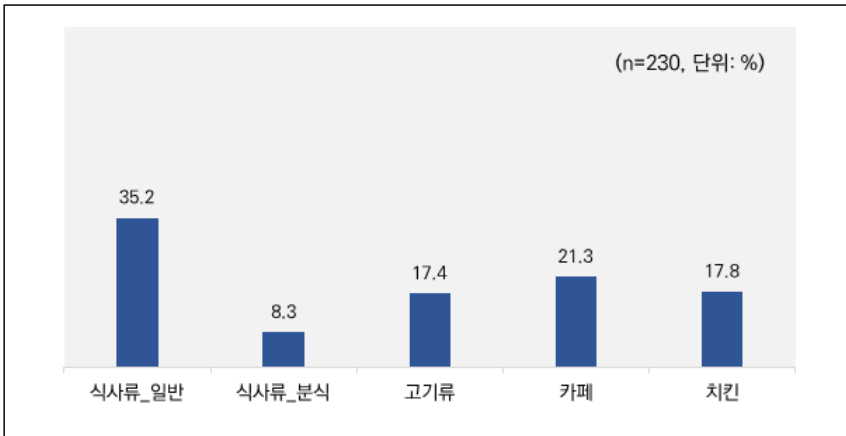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사업의 주력 분야

귀하의 사업의 주력 분야는 무엇입니까? (예시: 고기집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의 소고기 판매 등)

- 주력 분야를 크게 ‘식사료_일반’, ‘식사료_분식’, ‘고기류(주류 포함)’, ‘카페(디저트 등 포함)’, ‘치킨(맥주 등 포함)’으로 나누었을 때 ‘식사료_일반’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카페’(21.3%), ‘치킨’(17.8%), ‘고기류’(17.4%), ‘식사료_분식’(8.3%) 순으로 나타났다.
- ‘식사료_일반’에는 ‘매운탕집’, ‘갑오징어불고기’, ‘흙염소탕’ 라는 응답이 있었고, ‘카페’에는 ‘커피’, ‘전통차’, ‘수제디저트’ 등의 응답이 있었다.

[부그림 3] 사업의 주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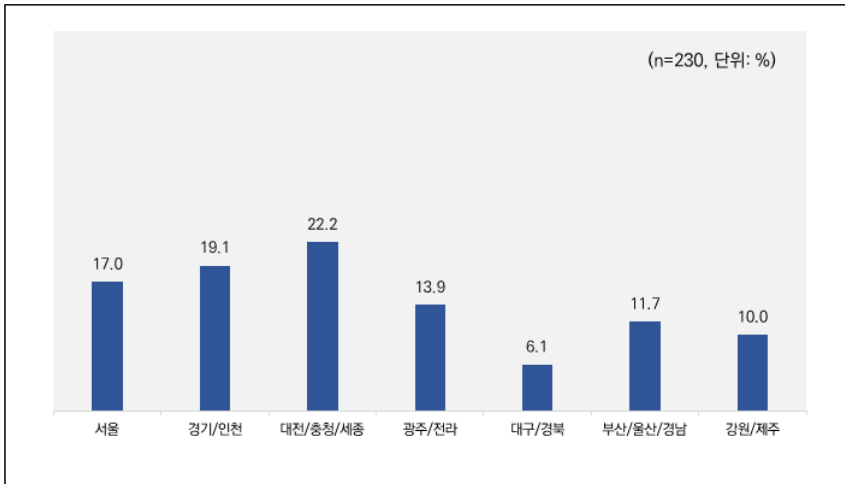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사업장 위치

귀하의 사업장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을 때, '대전/충청/세종'이 2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인천'(19.1%), '서울'(17.0%), '광주/전라'(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서울'에서 22.6%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4] 사업장 위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5〉 사업장 위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체		(230)	17.0	19.1	22.2	13.9	6.1	11.7	10.0
성별	남자	(117)	23.1	18.8	19.7	15.4	4.3	10.3	8.5
	여자	(113)	10.6	19.5	24.8	12.4	8.0	13.3	11.5
연령대	30대 이하	(22)	22.7	27.3	36.4	0.0	4.5	9.1	0.0
	40대	(49)	30.6	16.3	22.4	6.1	2.0	14.3	8.2
	50대	(78)	12.8	21.8	19.2	17.9	3.8	10.3	14.1
	60대 이상	(81)	11.1	16.0	21.0	18.5	11.1	12.3	9.9
최종 학력	초졸	(0)	0.0	0.0	0.0	0.0	0.0	0.0	0.0
	중졸	(17)	5.9	23.5	11.8	23.5	11.8	11.8	11.8
	고졸	(134)	17.2	17.2	20.9	16.4	7.5	13.4	7.5
	대졸	(79)	19.0	21.5	26.6	7.6	2.5	8.9	13.9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0.0	0.0	0.0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36)	11.1	22.2	33.3	16.7	0.0	13.9	2.8
	일반음식점	(146)	22.6	19.9	11.0	15.8	8.2	11.0	11.6
	휴게음식점	(48)	4.2	14.6	47.9	6.3	4.2	12.5	10.4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8)	22.4	22.4	25.9	10.3	3.4	6.9	8.6
	450만~600만원 미만	(45)	11.1	11.1	35.6	13.3	4.4	15.6	8.9
	600만~800만원 미만	(59)	18.6	22.0	16.9	20.3	8.5	5.1	8.5
	800만원 이상	(68)	14.7	19.1	14.7	11.8	7.4	19.1	13.2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20.0	20.0	20.0	13.3	6.7	8.3	11.7
	250만~400만원 미만	(47)	10.6	19.1	40.4	12.8	6.4	6.4	4.3
	400만~550만원 미만	(64)	15.6	18.8	15.6	15.6	7.8	17.2	9.4
	550만원 이상	(59)	20.3	18.6	16.9	13.6	3.4	13.6	13.6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23.8	20.5	23.0	9.0	2.5	6.6	14.8
	아니오	(108)	9.3	17.6	21.3	19.4	10.2	17.6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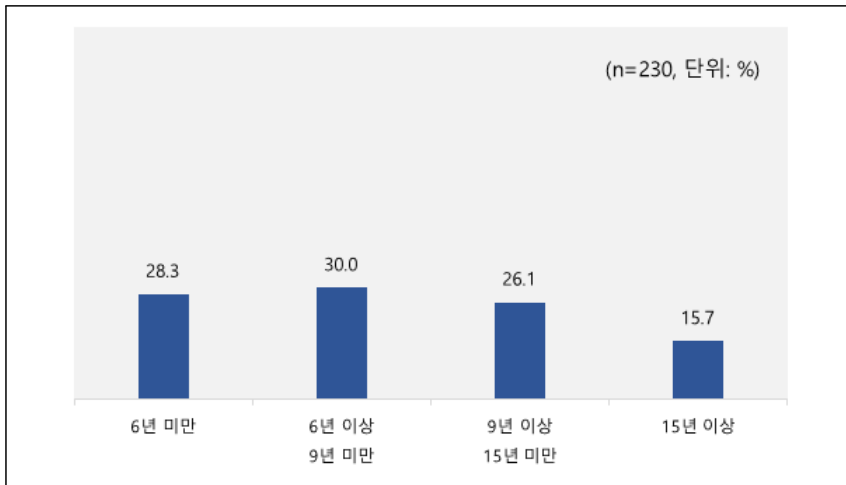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

귀하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운영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를 물었을 때 '6년 이상 9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6년 미만'(28.3%), '9년 이상 15년 미만'(26.1%), '15년 이상'(15.7%)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업종별로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은 '6년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5]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6〉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 수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평균
전체		(230)	28.3	30.0	26.1	15.7	10.4
성별	남자	(117)	31.6	30.8	21.4	16.2	10.4
	여자	(113)	24.8	29.2	31.0	15.0	10.5
연령대	30대 이하	(22)	72.7	18.2	0.0	9.1	6.6
	40대	(49)	34.7	38.8	24.5	2.0	8.0
	50대	(78)	28.2	32.1	28.2	11.5	9.7
	60대 이상	(81)	12.3	25.9	32.1	29.6	13.7
권역	서울	(39)	43.6	25.6	20.5	10.3	9.2
	경기/인천	(44)	31.8	25.0	18.2	25.0	11.9
	대전/충청/세종	(51)	27.5	33.3	27.5	11.8	9.6
	광주/전라	(32)	15.6	21.9	43.8	18.8	11.8
	대구/경북	(14)	21.4	35.7	21.4	21.4	10.8
	부산/울산/경남	(27)	25.9	44.4	18.5	11.1	9.3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21.7	30.4	34.8	13.0	11.1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7)	23.5	23.5	23.5	29.4	13.3
	고졸	(134)	20.1	32.1	29.1	18.7	11.2
	대졸	(79)	43.0	27.8	21.5	7.6	8.5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유흥주점업	(36)	25.0	41.7	22.2	11.1	9.4
	일반음식점	(146)	24.7	24.7	29.5	21.2	11.8
	휴게음식점	(48)	41.7	37.5	18.8	2.1	7.2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8)	36.2	29.3	25.9	8.6	8.6
	450만~600만원 미만	(45)	35.6	24.4	17.8	22.2	10.8
	600만~800만원 미만	(59)	27.1	37.3	23.7	11.9	9.7
	800만원 이상	(68)	17.6	27.9	33.8	20.6	12.4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28.3	28.3	30.0	13.3	10.1
	250만~400만원 미만	(47)	40.4	29.8	21.3	8.5	8.5
	400만~550만원 미만	(64)	26.6	25.0	29.7	18.8	11.1
	550만원 이상	(59)	20.3	37.3	22.0	20.3	11.7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31.1	31.1	22.1	15.6	10.2
	아니오	(108)	25.0	28.7	30.6	15.7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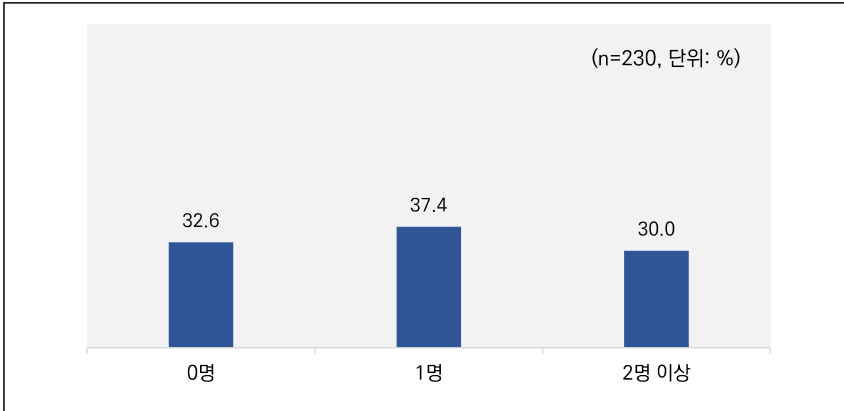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

귀하의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에 대해 물었을 때, '1명'이 37.4%로 가장 많았고, '0명'(32.6%), '2명 이상'(30.0%)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업종별로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에서 상용직원의 수 '0명'이 41.7%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6]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7〉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

(단위: 명, %, 명)

구분		사례 수	0명	1명	2명 이상	평균
전체		(230)	32.6	37.4	30.0	1.2
성별	남자	(117)	29.9	35.0	35.0	1.3
	여자	(113)	35.4	39.8	24.8	1.2
연령대	30대 이하	(22)	36.4	31.8	31.8	1.6
	40대	(49)	32.7	40.8	26.5	1.1
	50대	(78)	33.3	41.0	25.6	1.1
	60대 이상	(81)	30.9	33.3	35.8	1.3
권역	서울	(39)	30.8	35.9	33.3	1.3
	경기/인천	(44)	38.6	38.6	22.7	1.3
	대전/충청/세종	(51)	49.0	31.4	19.6	0.7
	광주/전라	(32)	18.8	43.8	37.5	1.5
	대구/경북	(14)	0.0	35.7	64.3	1.7
	부산/울산/경남	(27)	22.2	40.7	37.0	1.5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39.1	39.1	21.7	0.9
	초졸	(0)	0.0	0.0	0.0	.
	중졸	(17)	29.4	35.3	35.3	1.2
	고졸	(134)	31.3	41.8	26.9	1.2
	대졸	(79)	35.4	30.4	34.2	1.3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
	유흥주점업	(36)	30.6	44.4	25.0	1.1
	일반음식점	(146)	30.1	37.7	32.2	1.3
월평균 가구 소득	휴게음식점	(48)	41.7	31.3	27.1	1.1
	450만원 미만	(58)	60.3	20.7	19.0	0.8
	450만~600만원 미만	(45)	42.2	31.1	26.7	1.0
	600만~800만원 미만	(59)	25.4	50.8	23.7	1.1
월평균 개인 소득	800만원 이상	(68)	8.8	44.1	47.1	1.8
	250만원 미만	(60)	53.3	28.3	18.3	0.8
	250만~400만원 미만	(47)	55.3	17.0	27.7	0.9
	400만~550만원 미만	(64)	20.3	54.7	25.0	1.3
제도 사용 경험	550만원 이상	(59)	6.8	44.1	49.2	1.8
	네	(122)	43.4	33.6	23.0	0.9
제도 사용 경험	아니오	(108)	20.4	41.7	38.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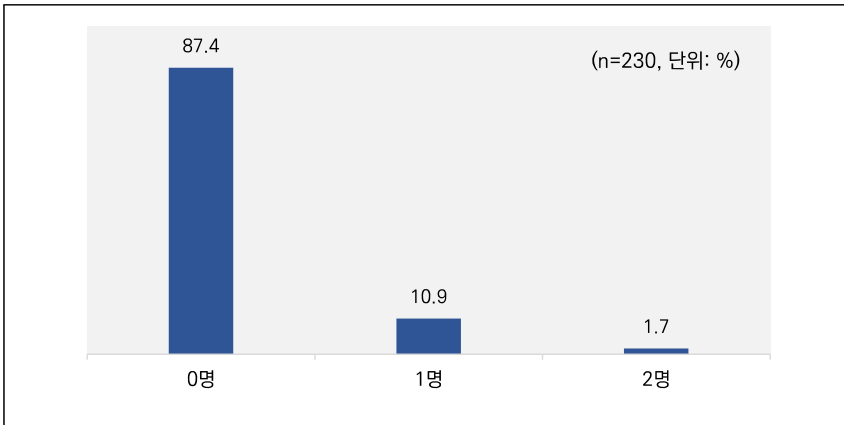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

귀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를 물었을 때, '0명'이 87.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명'(10.9%), '2명'(1.7%)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0명'이 95.9%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7]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8〉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

(단위: 명, %, 명)

구분		사례 수	0명	1명	2명	평균
전체		(230)	87.4	10.9	1.7	0.1
성별	남자	(117)	88.9	9.4	1.7	0.1
	여자	(113)	85.8	12.4	1.8	0.2
연령대	30대 이하	(22)	95.5	4.5	0.0	0.0
	40대	(49)	95.9	2.0	2.0	0.1
	50대	(78)	87.2	11.5	1.3	0.1
	60대 이상	(81)	80.2	17.3	2.5	0.2
권역	서울	(39)	94.9	5.1	0.0	0.1
	경기/인천	(44)	86.4	13.6	0.0	0.1
	대전/충청/세종	(51)	90.2	9.8	0.0	0.1
	광주/전라	(32)	90.6	6.3	3.1	0.1
	대구/경북	(14)	85.7	14.3	0.0	0.1
	부산/울산/경남	(27)	77.8	18.5	3.7	0.3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78.3	13.0	8.7	0.3
	초졸	(0)	0.0	0.0	0.0	.
	중졸	(17)	70.6	17.6	11.8	0.4
	고졸	(134)	86.6	12.7	0.7	0.1
	대졸	(79)	92.4	6.3	1.3	0.1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
	유흥주점업	(36)	97.2	2.8	0.0	0.0
	일반음식점	(146)	84.2	13.7	2.1	0.2
	휴게음식점	(48)	89.6	8.3	2.1	0.1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8)	89.7	10.3	0.0	0.1
	450만~600만원 미만	(45)	84.4	15.6	0.0	0.2
	600만~800만원 미만	(59)	88.1	11.9	0.0	0.1
	800만원 이상	(68)	86.8	7.4	5.9	0.2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91.7	8.3	0.0	.
	250만~400만원 미만	(47)	83.0	14.9	2.1	0.1
	400만~550만원 미만	(64)	82.8	15.6	1.6	0.2
	550만원 이상	(59)	91.5	5.1	3.4	0.2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91.8	6.6	1.6	0.1
	아니오	(108)	82.4	15.7	1.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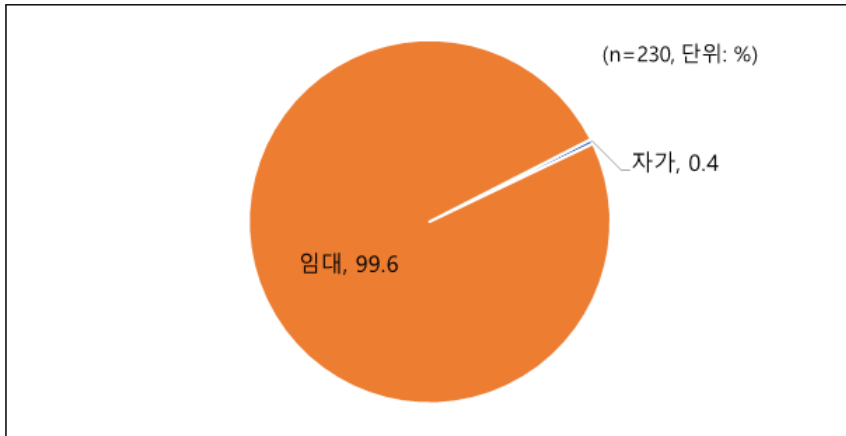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사업장의 점유 형태

귀하의 사업장은 자가입니까? 임대입니까?

- 사업장의 점유 형태에 대해 물었을 때, '임대'가 99.6%, '자가'가 0.4%였다.

[부그림 8] 사업장의 점유 형태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9〉 사업장의 점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가	임대
전체		(230)	0.4	99.6
성별	남자	(117)	0.9	99.1
	여자	(113)	0.0	100.0
연령대	30대 이하	(22)	0.0	100.0
	40대	(49)	0.0	100.0
	50대	(78)	1.3	98.7
	60대 이상	(81)	0.0	100.0
권역	서울	(39)	0.0	100.0
	경기/인천	(44)	0.0	100.0
	대전/충청/세종	(51)	2.0	98.0
	광주/전라	(32)	0.0	100.0
	대구/경북	(14)	0.0	100.0
	부산/울산/경남	(27)	0.0	100.0
최종학력	강원/제주	(23)	0.0	100.0
	초졸	(0)	0.0	0.0
	중졸	(17)	0.0	100.0
	고졸	(134)	0.7	99.3
	대졸	(79)	0.0	100.0
사업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유흥주점업	(36)	0.0	100.0
	일반음식점	(146)	0.7	99.3
월평균 가구소득	휴게음식점	(48)	0.0	100.0
	450만원 미만	(58)	1.7	98.3
	450만~600만원 미만	(45)	0.0	100.0
	600만~800만원 미만	(59)	0.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800만원 이상	(68)	0.0	100.0
	250만원 미만	(60)	0.0	100.0
	250만~400만원 미만	(47)	2.1	97.9
	400만~550만원 미만	(64)	0.0	100.0
제도 사용경험	550만원 이상	(59)	0.0	100.0
	네	(122)	0.8	99.2
	아니오	(10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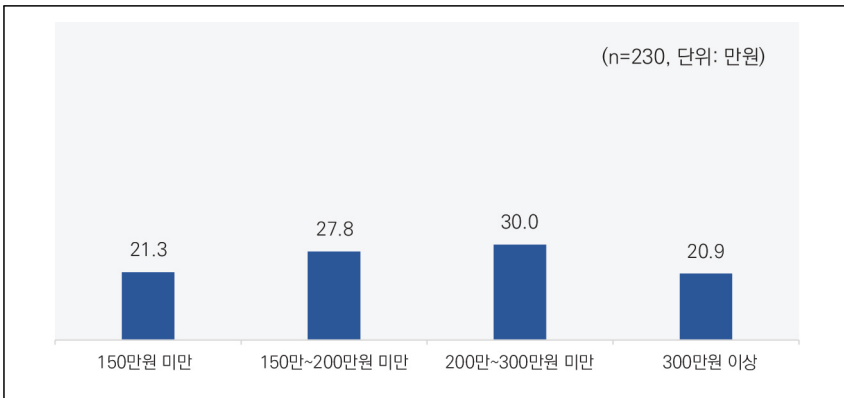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 월 임차료

(임대인 경우) 월 임차료는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 임대인 경우 월 임차료에 대해 물었을 때, '200만~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150만~200만원 미만'(27.8%), '150만원 미만'(21.3%), '300만원 이상'(20.9%)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에서 '150만~200만원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9] 월 임차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0〉 월 임차료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150만원 미만	15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230)	21.3	27.8	30.0	20.9	206
성별	남자	(117)	16.2	30.8	31.6	21.4	216
	여자	(113)	26.5	24.8	28.3	20.4	196
연령대	30대 이하	(22)	22.7	45.5	4.5	27.3	192
	40대	(49)	26.5	24.5	32.7	16.3	206
	50대	(78)	21.8	32.1	23.1	23.1	197
	60대 이상	(81)	17.3	21.0	42.0	19.8	218
권역	서울	(39)	10.3	25.6	23.1	41.0	260
	경기/인천	(44)	25.0	29.5	34.1	11.4	190
	대전/충청/세종	(51)	41.2	27.5	19.6	11.8	149
	광주/전라	(32)	6.3	15.6	34.4	43.8	276
	대구/경북	(14)	0.0	7.1	78.6	14.3	245
	부산/울산/경남	(27)	7.4	37.0	40.7	14.8	227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39.1	47.8	8.7	4.3	132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7)	17.6	17.6	41.2	23.5	214
	고졸	(134)	17.9	24.6	31.3	26.1	222
	대졸	(79)	27.8	35.4	25.3	11.4	178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유형주점업	(36)	16.7	25.0	33.3	25.0	239
	일반음식점	(146)	16.4	24.0	34.9	24.7	219
	휴게음식점	(48)	39.6	41.7	12.5	6.3	142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8)	36.2	27.6	15.5	20.7	168
	450만~600만원 미만	(45)	37.8	15.6	22.2	24.4	189
	600만~800만원 미만	(59)	16.9	28.8	35.6	18.6	211
	800만원 이상	(68)	1.5	35.3	42.6	20.6	244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31.7	31.7	18.3	18.3	170
	250만~400만원 미만	(47)	36.2	14.9	21.3	27.7	192
	400만~550만원 미만	(64)	15.6	25.0	39.1	20.3	220
	550만원 이상	(59)	5.1	37.3	39.0	18.6	238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35.2	29.5	19.7	15.6	171
	아니오	(108)	5.6	25.9	41.7	26.9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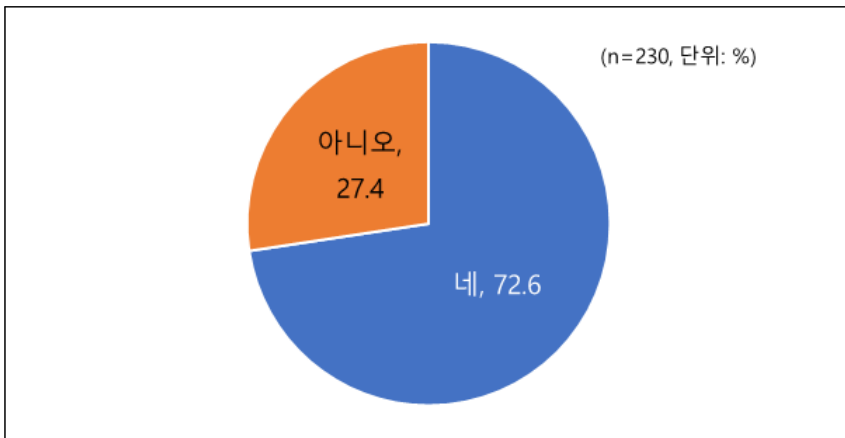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

귀하는 세무 대리인을 사용하십니까?

-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72.6%, '아니오'라는 응답이 27.4%로 나타났다.

[부그림 10]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1〉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오
전체		(230)	72.6	27.4
성별	남자	(117)	88.9	11.1
	여자	(113)	55.8	44.2
연령대	30대 이하	(22)	81.8	18.2
	40대	(49)	81.6	18.4
	50대	(78)	79.5	20.5
	60대 이상	(81)	58.0	42.0
권역	서울	(39)	94.9	5.1
	경기/인천	(44)	72.7	27.3
	대전/충청/세종	(51)	58.8	41.2
	광주/전라	(32)	75.0	25.0
	대구/경북	(14)	57.1	42.9
	부산/울산/경남	(27)	74.1	25.9
최종학력	강원/제주	(23)	69.6	30.4
	초졸	(0)	0.0	0.0
	중졸	(17)	70.6	29.4
	고졸	(134)	70.9	29.1
	대졸	(79)	75.9	24.1
사업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유흥주점업	(36)	86.1	13.9
	일반음식점	(146)	75.3	24.7
	휴게음식점	(48)	54.2	45.8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미만	(58)	69.0	31.0
	450만~600만원 미만	(45)	64.4	35.6
	600만~800만원 미만	(59)	72.9	27.1
	800만원 이상	(68)	80.9	19.1
월평균 개인소득	250만원 미만	(60)	73.3	26.7
	250만~400만원 미만	(47)	53.2	46.8
	400만~550만원 미만	(64)	75.0	25.0
	550만원 이상	(59)	84.7	15.3
제도 사용경험	네	(122)	76.2	23.8
	아니오	(108)	68.5	31.5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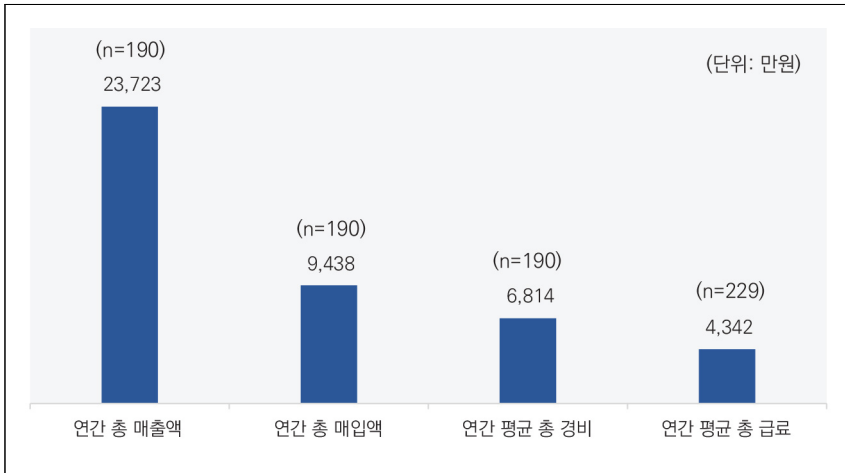
11)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귀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비용들은 각각 얼마입니까?(작년 기준)

- 1) 연간 평균 총 매출액(총 수입금액)
- 2) 연간 평균 총 매입액(상품 매입 또는 제조비용)
- 3) 연간 평균 총 매입액 중 현금 매입액 비중
- 4) 연간 평균 총 경비(필요경비 금액)
- 5) 연간 평균 총 급료(근로자에게 지급)

-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연간 총 매출액’은 23,723만원, ‘연간 총 매입액’은 9,438만원, ‘연간 평균 총 경비’ 6,814만원, ‘연간 평균 총 급료’ 4,342만원이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총 매입액 중 현금 매입액 비중’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6.2%였다.

[부그림 11]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2〉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비용

(단위: 명, 만원, %)

구분		총 매출액		총 매입액		평균 총 경비		평균 총 급료		현금 매입액 비중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전체		(190)	23,723	(190)	9,438	(190)	6,814	(229)	4,342	(230)	6.2
성별	남자	(92)	26,813	(92)	10,743	(92)	7,510	(117)	4,738	(117)	6.6
	여자	(98)	20,823	(98)	8,213	(98)	6,161	(112)	3,929	(113)	5.9
연령대	30대 이하	(18)	23,679	(18)	8,724	(18)	7,781	(22)	5,140	(22)	5.7
	40대	(36)	25,292	(36)	10,011	(36)	7,166	(49)	3,931	(49)	6.0
	50대	(68)	20,961	(68)	8,408	(68)	5,931	(78)	4,029	(78)	6.4
	60대 이상	(68)	25,667	(68)	10,354	(68)	7,256	(80)	4,680	(81)	6.3
권역	서울	(34)	31,750	(34)	13,465	(34)	10,254	(39)	4,644	(39)	7.0
	경기/인천	(38)	21,723	(38)	8,624	(38)	6,356	(44)	4,138	(44)	6.1
	대전/충청/세종	(43)	14,833	(43)	5,005	(43)	3,693	(50)	2,756	(51)	5.7
	광주/전라	(22)	27,891	(22)	11,422	(22)	7,204	(32)	5,823	(32)	5.8
	대구/경북	(9)	27,289	(9)	10,935	(9)	7,929	(14)	6,268	(14)	5.6
	부산/울산/경남	(21)	30,490	(21)	12,121	(21)	8,454	(27)	5,401	(27)	5.4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20,225	(23)	8,186	(23)	6,016	(23)	3,194	(23)	8.3
	초졸	(0)	.	(0)	.	(0)	.	(0)	.	(0)	.
	중졸	(10)	24,290	(10)	9,931	(10)	6,745	(17)	5,414	(17)	5.9
	고졸	(114)	23,377	(114)	9,400	(114)	6,932	(133)	4,283	(134)	6.3
	대졸	(66)	24,236	(66)	9,429	(66)	6,622	(79)	4,211	(79)	6.1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	(0)	.	(0)	.	(0)	.	(0)	.
	유휴주점업	(24)	17,473	(24)	6,692	(24)	4,617	(36)	3,642	(36)	6.2
	일반음식점	(127)	27,771	(127)	11,453	(127)	8,068	(145)	4,783	(146)	6.8
월평균 가구 소득	휴게음식점	(39)	14,389	(39)	4,566	(39)	4,084	(48)	3,536	(48)	4.7
	450만원 미만	(52)	13,044	(52)	5,425	(52)	4,432	(57)	2,757	(58)	7.2
	450만~600만원 미만	(37)	18,269	(37)	6,827	(37)	5,063	(45)	3,902	(45)	6.4
	600만~800만원 미만	(45)	21,036	(45)	8,251	(45)	5,869	(59)	3,887	(59)	6.3
월평균 개인 소득	800만원 이상	(56)	39,404	(56)	15,845	(56)	10,943	(68)	6,358	(68)	5.1
	250만원 미만	(56)	11,435	(56)	4,646	(56)	3,580	(59)	2,789	(60)	7.2
	250만~400만원 미만	(38)	15,643	(38)	5,818	(38)	4,466	(47)	3,285	(47)	5.8
	400만~550만원 미만	(42)	25,244	(42)	9,927	(42)	7,225	(64)	4,607	(64)	5.7
제도 사용 경험	550만원 이상	(54)	40,971	(54)	16,576	(54)	11,500	(59)	6,450	(59)	6.2
	네	(122)	25,297	(122)	10,338	(122)	7,580	(121)	3,433	(122)	6.9
제도 사용 경험	아니오	(68)	20,900	(68)	7,824	(68)	5,440	(108)	5,361	(108)	5.5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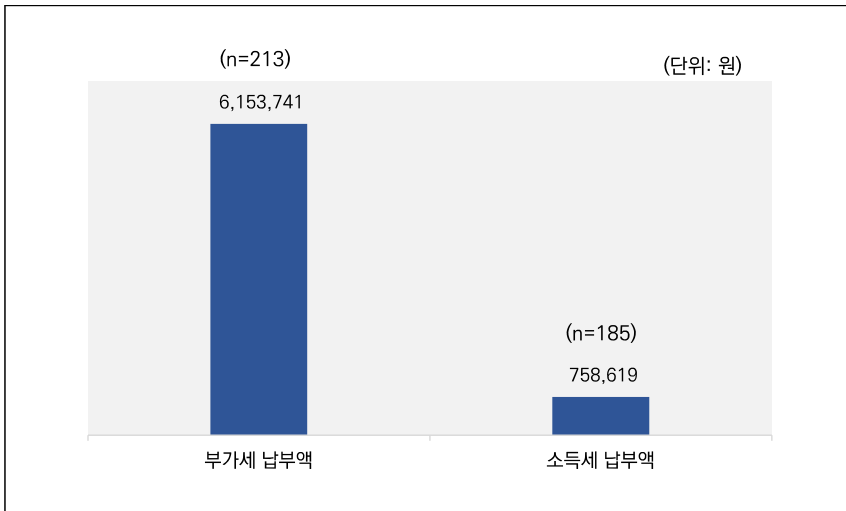
12) 작년 기준 납부세액

귀하께서는 작년 기준으로 다음 세금들을 각각 얼마나 내셨습니까?

-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2) 소득세 납부세액

- 작년 기준 납부세액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615만 3,741원, ‘소득세 납부세액’은 75만 8,619원 이었다.

[부그림 12] 작년 기준 납부세액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3〉 작년 기준 납부세액

(단위: 명, 원)

구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소득세 납부세액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전체		(213)	6,153,741	(185)	758,619
성별	남자	(110)	7,041,333	(89)	994,614
	여자	(103)	5,205,827	(96)	539,833
연령대	30대 이하	(20)	7,063,794	(18)	930,806
	40대	(46)	6,058,086	(35)	847,955
	50대	(73)	5,312,072	(65)	651,962
	60대 이상	(74)	6,797,536	(67)	769,166
권역	서울	(39)	8,207,152	(34)	1,057,910
	경기/인천	(41)	6,143,330	(35)	712,146
	대전/충청/세종	(47)	2,922,045	(42)	493,690
	광주/전라	(27)	6,271,204	(22)	710,391
	대구/경북	(11)	6,835,909	(9)	647,470
	부산/울산/경남	(25)	8,443,335	(21)	873,334
	강원/제주	(23)	6,341,490	(22)	859,985
최종 학력	초졸	(0)	.	(0)	.
	중졸	(14)	5,524,987	(10)	600,812
	고졸	(120)	6,188,108	(110)	691,085
	대졸	(79)	6,212,962	(65)	897,187
	대학원 졸업 이상	(0)	.	(0)	.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31)	3,698,692	(24)	540,499
	일반음식점	(134)	7,860,481	(122)	897,473
	휴게음식점	(48)	2,974,643	(39)	458,483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5)	2,934,122	(48)	191,872
	450만~600만원 미만	(41)	3,735,390	(36)	334,682
	600만~800만원 미만	(54)	4,585,661	(45)	583,193
	800만원 이상	(63)	11,882,434	(56)	1,657,901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2,525,301	(52)	76,571
	250만~400만원 미만	(41)	3,627,887	(37)	296,857
	400만~550만원 미만	(53)	5,105,463	(42)	557,317
	550만원 이상	(59)	12,540,607	(54)	1,888,367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7,264,611	(117)	1,164,439
	아니오	(91)	4,664,442	(68)	60,37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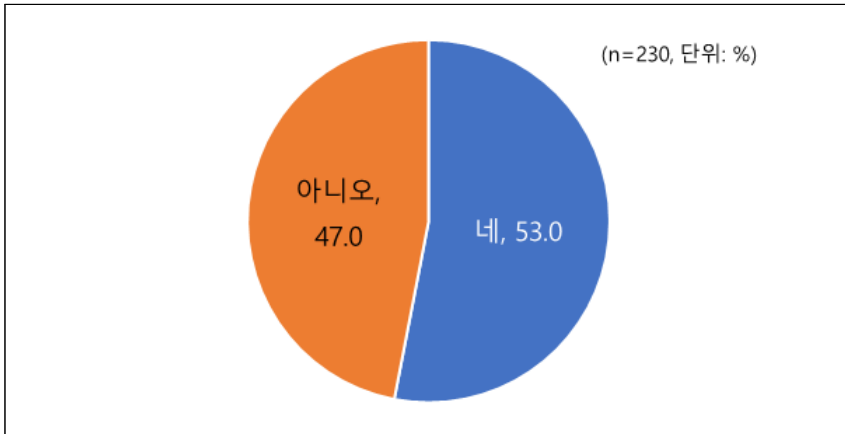
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사용 경험(일반업종)

13)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 면세농산물 혹은 중고차 거래 등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일정 금액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53.0%, ‘아니오’라는 응답이 47.0%였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강원/제주’에서 ‘네’라는 응답이 74.4%, 78.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그림 13]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오
전체		(230)	53.0	47.0
성별	남자	(117)	55.6	44.4
	여자	(113)	50.4	49.6
연령대	30대 이하	(22)	63.6	36.4
	40대	(49)	61.2	38.8
	50대	(78)	55.1	44.9
	60대 이상	(81)	43.2	56.8
권역	서울	(39)	74.4	25.6
	경기/인천	(44)	56.8	43.2
	대전/충청/세종	(51)	54.9	45.1
	광주/전라	(32)	34.4	65.6
	대구/경북	(14)	21.4	78.6
	부산/울산/경남	(27)	29.6	70.4
	강원/제주	(23)	78.3	21.7
최종학력	초졸	(0)	0.0	0.0
	중졸	(17)	41.2	58.8
	고졸	(134)	49.3	50.7
	대졸	(79)	62.0	38.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36)	30.6	69.4
	일반음식점	(146)	58.9	41.1
	휴게음식점	(48)	52.1	47.9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미만	(58)	62.1	37.9
	450만~600만원 미만	(45)	42.2	57.8
	600만~800만원 미만	(59)	40.7	59.3
	800만원 이상	(68)	63.2	36.8
월평균 개인소득	250만원 미만	(60)	45.0	55.0
	250만~400만원 미만	(47)	48.9	51.1
	400만~550만원 미만	(64)	34.4	65.6
	550만원 이상	(59)	84.7	15.3
제도 사용경험	네	(122)	100.0	0.0
	아니오	(10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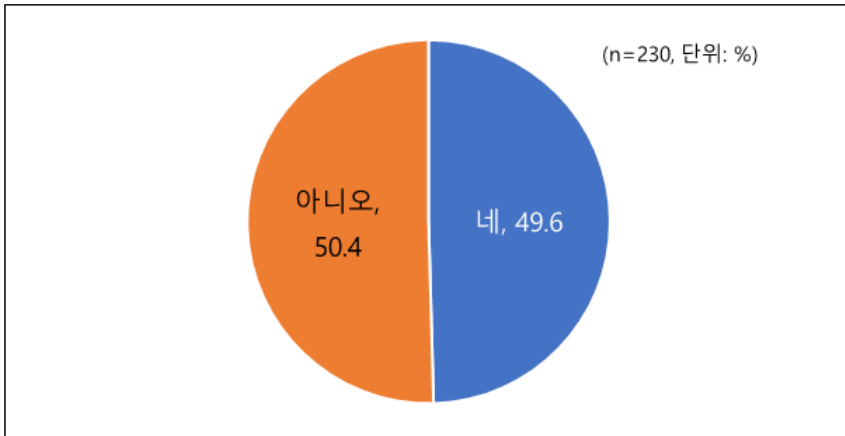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49.6%, ‘아니오’라는 응답이 50.4%였다.
- 사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네’라는 응답이 55.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그림 14]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5〉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오
전체		(230)	49.6	50.4
성별	남자	(117)	54.7	45.3
	여자	(113)	44.2	55.8
연령대	30대 이하	(22)	59.1	40.9
	40대	(49)	55.1	44.9
	50대	(78)	51.3	48.7
	60대 이상	(81)	42.0	58.0
권역	서울	(39)	66.7	33.3
	경기/인천	(44)	52.3	47.7
	대전/충청/세종	(51)	49.0	51.0
	광주/전라	(32)	34.4	65.6
	대구/경북	(14)	21.4	78.6
	부산/울산/경남	(27)	29.6	70.4
최종학력	강원/제주	(23)	78.3	21.7
	초졸	(0)	0.0	0.0
	중졸	(17)	41.2	58.8
	고졸	(134)	45.5	54.5
	대졸	(79)	58.2	41.8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유흥주점업	(36)	30.6	69.4
	일반음식점	(146)	55.5	44.5
월평균 가구소득	휴게음식점	(48)	45.8	54.2
	450만원 미만	(58)	53.4	46.6
	450만~600만원 미만	(45)	40.0	60.0
	600만~800만원 미만	(59)	39.0	61.0
월평균 개인소득	800만원 이상	(68)	61.8	38.2
	250만원 미만	(60)	40.0	60.0
	250만~400만원 미만	(47)	44.7	55.3
	400만~550만원 미만	(64)	32.8	67.2
제도 사용경험	550만원 이상	(59)	81.4	18.6
	네	(122)	93.4	6.6
	아니오	(10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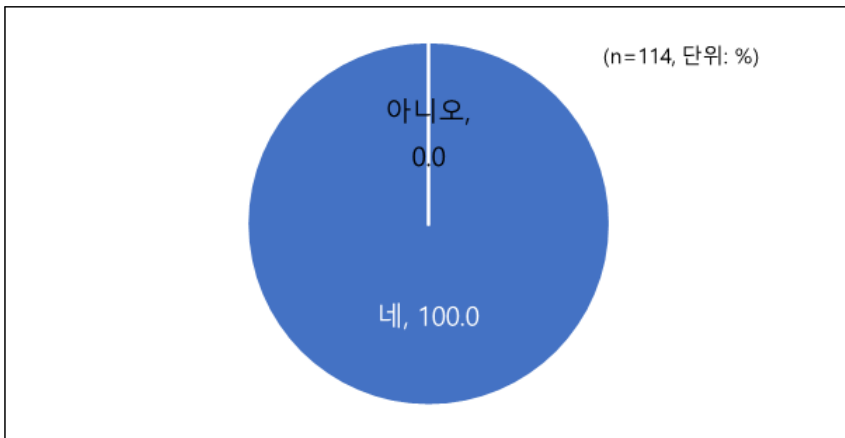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

귀하께서는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를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15]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 인지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 1) 귀하의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3) 귀하의 연간 총 매입액 가운데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은 몇 %입니까?

-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총 매입액 가운데 의제매입과 관련된 매입의 비중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391만 2,842원,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은 31.9%로 나타났다.

〈부표 16〉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총 매입액 가운데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단위: 명, 원, %)

구분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전체		(119)	3,912,842	(114)	31.9
성별	남자	(65)	3,683,316	(64)	30.9
	여자	(54)	4,189,124	(50)	33.2
연령대	30대 이하	(14)	3,438,989	(13)	25.7
	40대	(28)	4,751,258	(27)	26.1
	50대	(42)	2,863,227	(40)	30.6
	60대 이상	(35)	4,691,189	(34)	40.4
권역	서울	(27)	7,475,848	(26)	38.1
	경기/인천	(25)	3,299,119	(23)	36.3
	대전/충청/세종	(27)	847,080	(25)	15.3
	광주/전라	(11)	5,734,411	(11)	41.7
	대구/경북	(3)	7,148,538	(3)	44.7
	부산/울산/경남	(8)	3,384,973	(8)	20.8
최종학력	강원/제주	(18)	2,601,516	(18)	37.1
	초졸	(0)	.	(0)	.
	중졸	(7)	2,898,485	(7)	36.3
	고졸	(63)	4,392,513	(61)	34.6
	대졸	(49)	3,441,031	(46)	27.5
사업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	(0)	.
	유흥주점업	(11)	4,544,941	(11)	17.5
	일반음식점	(83)	4,902,973	(81)	40.2
월평균 가구소득	휴게음식점	(25)	347,484	(22)	8.4
	450만원 미만	(34)	3,138,558	(31)	33.0
	450만~600만원 미만	(19)	1,477,681	(18)	24.5
	600만~800만원 미만	(24)	2,939,814	(23)	30.5
월평균 개인소득	800만원 이상	(42)	6,197,280	(42)	34.9
	250만원 미만	(25)	2,810,253	(24)	39.6
	250만~400만원 미만	(23)	1,956,834	(21)	21.1
	400만~550만원 미만	(22)	2,694,054	(21)	27.5
제도 사용경험	550만원 이상	(49)	5,940,725	(48)	34.7
	네	(119)	3,912,842	(114)	31.9
	아니오	(0)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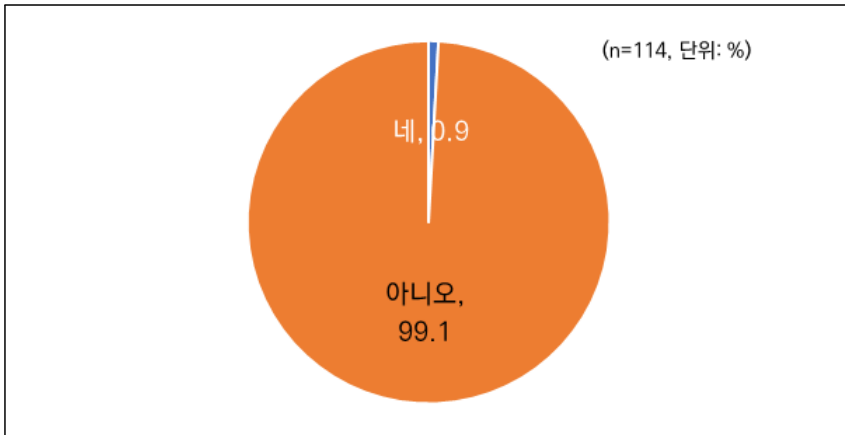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7)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귀하께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더 많이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더 많이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0.9%, ‘아니오’라는 응답이 99.1%로 나타났다.

[부그림 16]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7〉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오
전체		(114)	0.9	99.1
성별	남자	(64)	0.0	100.0
	여자	(50)	2.0	98.0
연령대	30대 이하	(13)	0.0	100.0
	40대	(27)	0.0	100.0
	50대	(40)	0.0	100.0
	60대 이상	(34)	2.9	97.1
권역	서울	(26)	0.0	100.0
	경기/인천	(23)	4.3	95.7
	대전/충청/세종	(25)	0.0	100.0
	광주/전라	(11)	0.0	100.0
	대구/경북	(3)	0.0	100.0
	부산/울산/경남	(8)	0.0	100.0
	강원/제주	(18)	0.0	100.0
최종학력	초졸	(0)	0.0	0.0
	중졸	(7)	0.0	100.0
	고졸	(61)	1.6	98.4
	대졸	(46)	0.0	100.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11)	0.0	100.0
	일반음식점	(81)	1.2	98.8
	휴게음식점	(22)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미만	(31)	3.2	96.8
	450만~600만원 미만	(18)	0.0	100.0
	600만~800만원 미만	(23)	0.0	100.0
	800만원 이상	(42)	0.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50만원 미만	(24)	4.2	95.8
	250만~400만원 미만	(21)	0.0	100.0
	400만~550만원 미만	(21)	0.0	100.0
	550만원 이상	(48)	0.0	100.0
제도 사용경험	네	(114)	0.9	99.1
	아니오	(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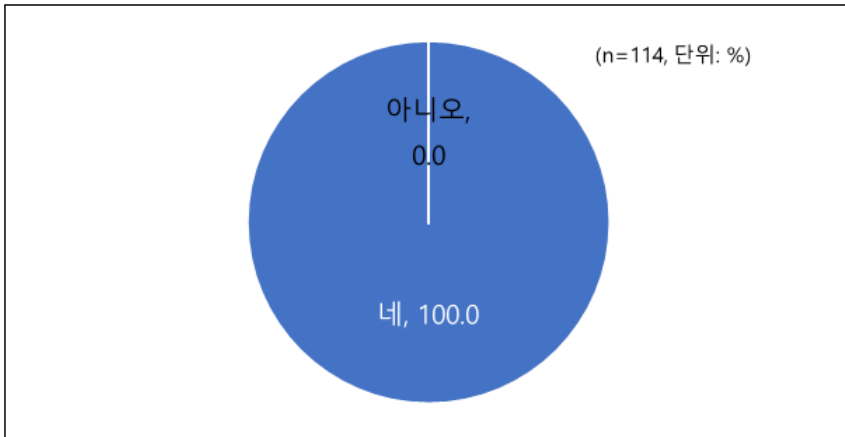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8-1) 의제매입공제율에 대한 인지

의제매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17] 의제매입공제율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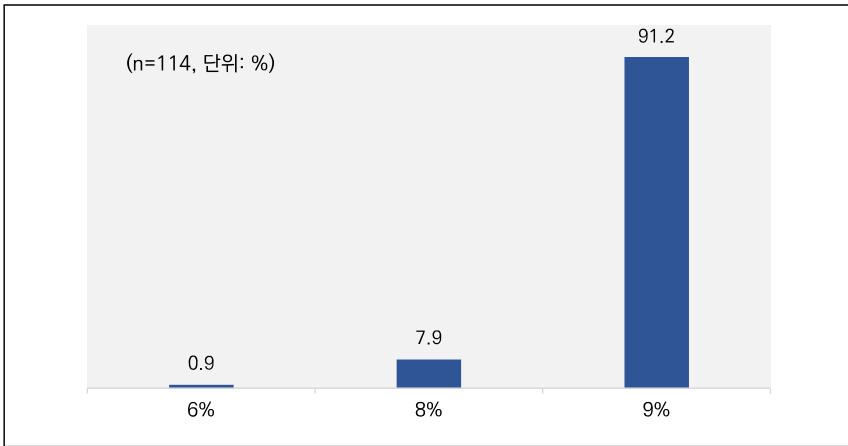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8-2)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

(‘네’라고 응답한 경우) 의제매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에 대해 물었을 때, ‘9%’라는 응답이 91.2%, ‘8%’(7.9%), ‘6%’(0.9%)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18]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8〉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6%	8%	9%	평균
전체		(114)	0.9	7.9	91.2	8.9
성별	남자	(64)	1.6	6.3	92.2	8.9
	여자	(50)	0.0	10.0	90.0	8.9
연령대	30대 이하	(13)	0.0	15.4	84.6	8.8
	40대	(27)	0.0	14.8	85.2	8.9
	50대	(40)	0.0	7.5	92.5	8.9
	60대 이상	(34)	2.9	0.0	97.1	8.9
권역	서울	(26)	3.8	23.1	73.1	8.7
	경기/인천	(23)	0.0	8.7	91.3	8.9
	대전/충청/세종	(25)	0.0	0.0	100.0	9.0
	광주/전라	(11)	0.0	9.1	90.9	8.9
	대구/경북	(3)	0.0	0.0	100.0	9.0
	부산/울산/경남	(8)	0.0	0.0	100.0	9.0
	강원/제주	(18)	0.0	0.0	100.0	9.0
최종학력	초졸	(0)	0.0	0.0	0.0	.
	중졸	(7)	0.0	0.0	100.0	9.0
	고졸	(61)	1.6	11.5	86.9	8.8
	대졸	(46)	0.0	4.3	95.7	9.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11)	0.0	9.1	90.9	8.9
	일반음식점	(81)	1.2	7.4	91.4	8.9
	휴게음식점	(22)	0.0	9.1	90.9	8.9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미만	(31)	0.0	6.5	93.5	8.9
	450만~600만원 미만	(18)	0.0	0.0	100.0	9.0
	600만~800만원 미만	(23)	4.3	13.0	82.6	8.7
	800만원 이상	(42)	0.0	9.5	90.5	8.9
월평균 개인소득	250만원 미만	(24)	0.0	0.0	100.0	9.0
	250만~400만원 미만	(21)	4.8	14.3	81.0	8.7
	400만~550만원 미만	(21)	0.0	4.8	95.2	9.0
	550만원 이상	(48)	0.0	10.4	89.6	8.9
제도 사용경험	네	(114)	0.9	7.9	91.2	8.9
	아니오	(0)	0.0	0.0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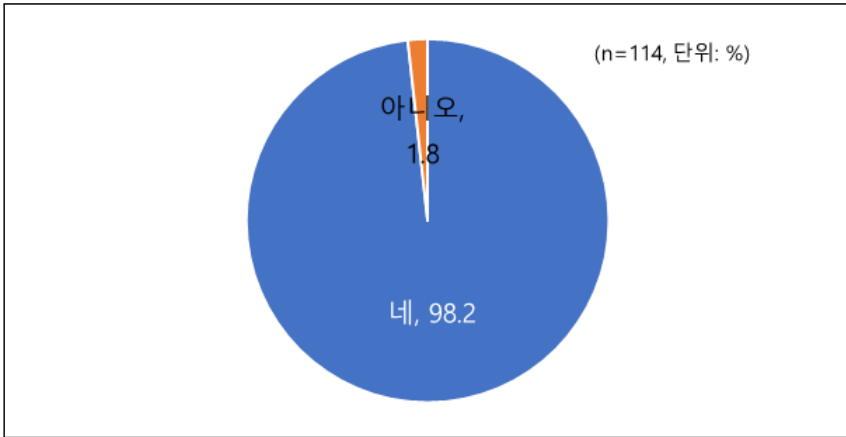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9)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십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98.2%였고 ‘아니오’라는 응답이 1.8%였다.

[부그림 19]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9〉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오
	전체	(114)	98.2	1.8
성별	남자	(64)	96.9	3.1
	여자	(50)	100.0	0.0
연령대	30대 이하	(13)	100.0	0.0
	40대	(27)	100.0	0.0
	50대	(40)	95.0	5.0
	60대 이상	(34)	100.0	0.0
권역	서울	(26)	100.0	0.0
	경기/인천	(23)	95.7	4.3
	대전/충청/세종	(25)	100.0	0.0
	광주/전라	(11)	90.9	9.1
	대구/경북	(3)	100.0	0.0
	부산/울산/경남	(8)	100.0	0.0
최종학력	강원/제주	(18)	100.0	0.0
	초졸	(0)	0.0	0.0
	중졸	(7)	100.0	0.0
	고졸	(61)	100.0	0.0
	대졸	(46)	95.7	4.3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유흥주점업	(11)	100.0	0.0
	일반음식점	(81)	97.5	2.5
월평균 가구소득	휴게음식점	(22)	100.0	0.0
	450만원 미만	(31)	100.0	0.0
	450만~600만원 미만	(18)	100.0	0.0
	600만~800만원 미만	(23)	95.7	4.3
월평균 개인소득	800만원 이상	(42)	97.6	2.4
	250만원 미만	(24)	100.0	0.0
	250만~400만원 미만	(21)	100.0	0.0
	400만~550만원 미만	(21)	100.0	0.0
제도 사용경험	550만원 이상	(48)	95.8	4.2
	네	(114)	98.2	1.8
	아니오	(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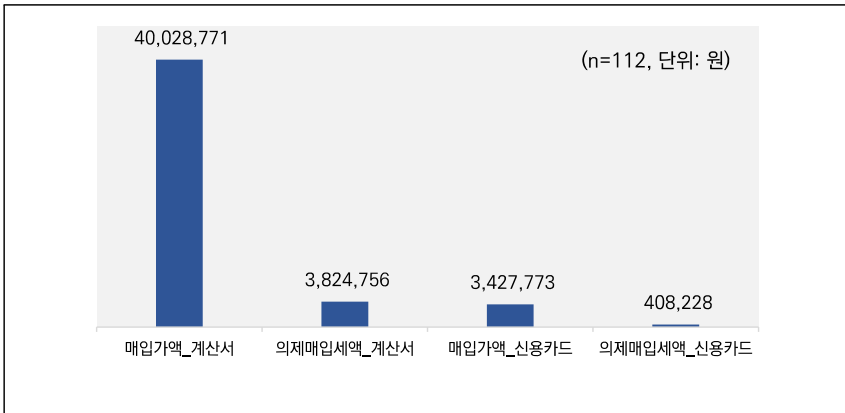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신용카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 1) 계산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사업자로 부터의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 2) 신용카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사업자 로부터의 매입분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입니 까?

-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의 평균을 계산 했을 때, ‘매입가액’은 4,002만 8,771원, ‘의제매입세액’은 382만 4,756원 이었다.
- 매입분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의 평균을 계 산했을 때, ‘매입가액’은 342만 7,773원, ‘의제매입세액’은 40만 8,228원 이었다.

[부그림 20]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신용카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0〉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신용카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단위: 명, 원)

구분		사례 수	매입가액 (계산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서)	매입가액 (신용카드)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전체		(112)	40,028,771	3,824,756	3,427,773	408,228
성별	남자	(62)	40,639,097	3,681,547	2,837,465	243,298
	여자	(50)	39,271,967	4,003,037	4,159,756	613,548
연령대	30대 이하	(13)	42,040,566	3,706,318	3,633,188	305,836
	40대	(27)	41,917,307	4,768,728	4,238,872	348,011
	50대	(38)	31,784,364	2,616,747	2,597,099	547,873
	60대 이상	(34)	46,974,173	4,494,825	3,633,525	334,340
권역	서울	(26)	70,651,539	6,901,295	5,005,829	862,086
	경기/인천	(22)	39,000,669	3,375,559	4,456,977	373,439
	대전/충청/세종	(25)	9,812,374	901,241	961,546	93,158
	광주/전라	(10)	58,452,731	6,068,680	2,827,717	239,172
	대구/경북	(3)	73,262,887	6,838,721	3,430,749	309,817
	부산/울산/경남	(8)	34,653,413	2,934,911	5,264,970	450,061
	강원/제주	(18)	25,634,166	2,312,023	2,832,096	289,493
최종 학력	초졸	(0)
	중졸	(7)	29,630,707	2,634,833	2,932,831	263,652
	고졸	(61)	39,789,875	4,056,215	3,172,732	480,314
	대졸	(44)	42,014,206	3,686,910	3,860,094	327,627
	대학원 졸업 이상	(0)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11)	17,180,263	4,482,146	724,534	62,796
	일반음식점	(79)	53,301,366	4,609,814	4,552,571	541,411
	휴게음식점	(22)	3,792,343	362,212	740,347	72,142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31)	26,267,371	3,179,647	3,402,677	262,643
	450만~600만원 미만	(18)	17,135,187	1,420,604	1,600,838	139,171
	600만~800만원 미만	(22)	36,809,392	3,332,118	2,199,764	195,659
	800만원 이상	(41)	62,212,045	5,608,314	4,907,749	740,119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24)	17,454,282	2,814,424	1,347,927	112,922
	250만~400만원 미만	(21)	23,517,305	1,791,688	4,716,624	351,511
	400만~550만원 미만	(21)	30,928,639	2,770,136	2,085,482	193,324
	550만원 이상	(46)	63,499,017	5,781,085	4,537,307	687,705
제도 사용 경험	네	(112)	40,028,771	3,824,756	3,427,773	408,228
	아니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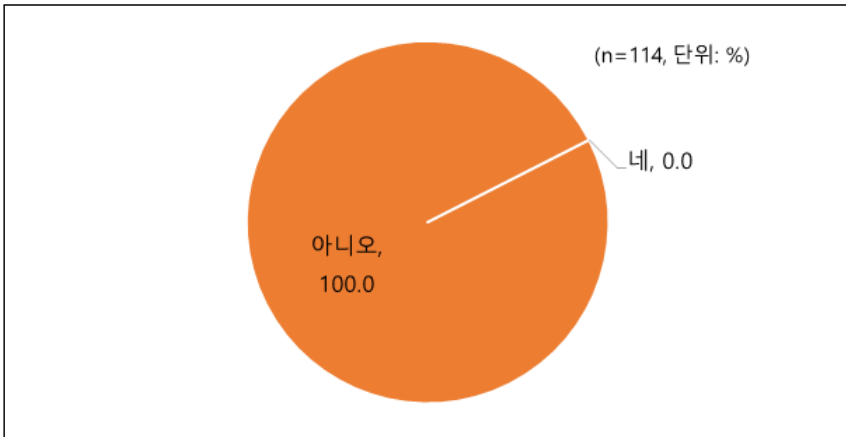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2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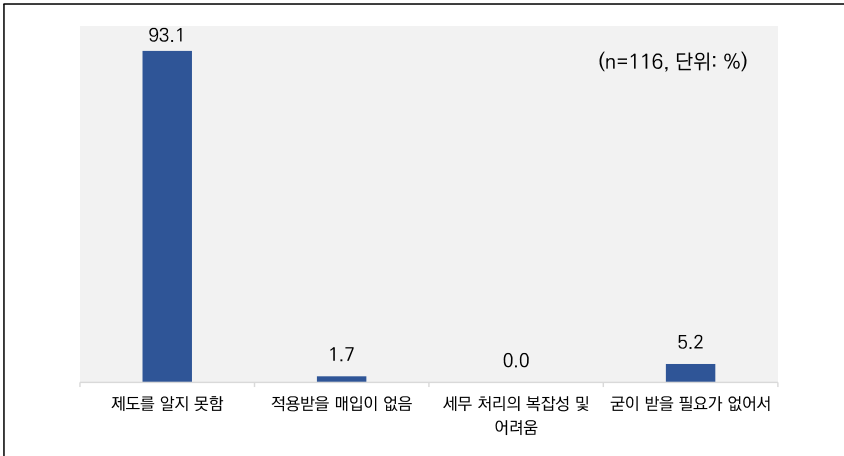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제도를 알지 못함’이 93.1%,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서’(5.2%), ‘적용받을 때 입이 없음’(1.7%)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2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1〉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제도를 알지 못함	적용받을 매입이 없음	세무 처리의 복잡성 및 어려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서
전체		(116)	93.1	1.7	0.0	5.2
성별	남자	(53)	98.1	0.0	0.0	1.9
	여자	(63)	88.9	3.2	0.0	7.9
연령대	30대 이하	(9)	100.0	0.0	0.0	0.0
	40대	(22)	95.5	0.0	0.0	4.5
	50대	(38)	94.7	2.6	0.0	2.6
	60대 이상	(47)	89.4	2.1	0.0	8.5
권역	서울	(13)	92.3	0.0	0.0	7.7
	경기/인천	(21)	90.5	4.8	0.0	4.8
	대전/충청/세종	(26)	88.5	0.0	0.0	11.5
	광주/전라	(21)	100.0	0.0	0.0	0.0
	대구/경북	(11)	10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19)	94.7	5.3	0.0	0.0
	강원/제주	(5)	80.0	0.0	0.0	20.0
최종 학력	초졸	(0)	0.0	0.0	0.0	0.0
	중졸	(10)	100.0	0.0	0.0	0.0
	고졸	(73)	91.8	2.7	0.0	5.5
	대졸	(33)	93.9	0.0	0.0	6.1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25)	100.0	0.0	0.0	0.0
	일반음식점	(65)	93.8	3.1	0.0	3.1
	휴게음식점	(26)	84.6	0.0	0.0	15.4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27)	88.9	3.7	0.0	7.4
	450~600만원 미만	(27)	88.9	0.0	0.0	11.1
	600~800만원 미만	(36)	97.2	2.8	0.0	0.0
	800만원 이상	(26)	96.2	0.0	0.0	3.8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36)	91.7	2.8	0.0	5.6
	250~400만원 미만	(26)	88.5	3.8	0.0	7.7
	400~550만원 미만	(43)	97.7	0.0	0.0	2.3
	550만원 이상	(11)	90.9	0.0	0.0	9.1
제도 사용 경험	네	(8)	62.5	12.5	0.0	25.0
	아니오	(108)	95.4	0.9	0.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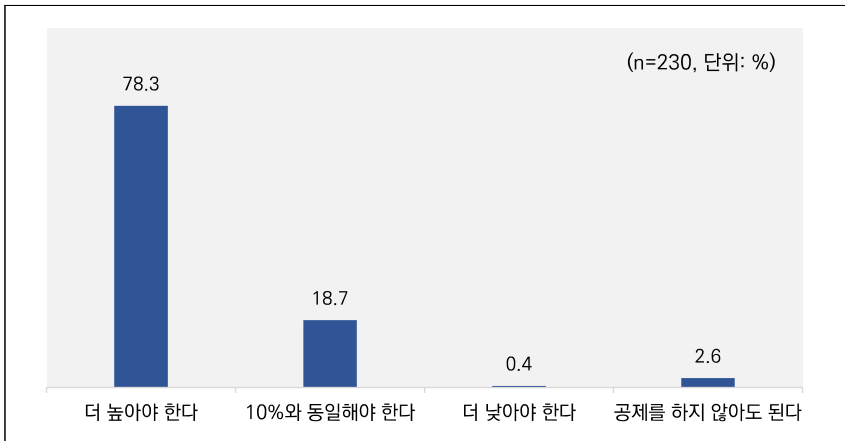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귀하께서는 현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더 높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78.3%, '10%와 동일해야 한다'(18.7%),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2.6%), '더 낮아야 한다'(0.4%) 순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에서 '10%와 동일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1.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사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에서 '10%와 동일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3.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그림 23]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2〉 현재 의세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더 높아야 한다	10%와 동일해야 한다	더 낮아야 한다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230)	78.3	18.7	0.4	2.6
성별	남자	(117)	80.3	15.4	0.9	3.4
	여자	(113)	76.1	22.1	0.0	1.8
연령대	30대 이하	(22)	63.6	31.8	0.0	4.5
	40대	(49)	75.5	22.4	0.0	2.0
	50대	(78)	79.5	17.9	1.3	1.3
	60대 이상	(81)	82.7	13.6	0.0	3.7
권역	서울	(39)	84.6	12.8	0.0	2.6
	경기/인천	(44)	86.4	11.4	2.3	0.0
	대전/충청/세종	(51)	52.9	41.2	0.0	5.9
	광주/전라	(32)	87.5	12.5	0.0	0.0
	대구/경북	(14)	10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27)	88.9	7.4	0.0	3.7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69.6	26.1	0.0	4.3
	초졸	(0)	0.0	0.0	0.0	0.0
	중졸	(17)	94.1	5.9	0.0	0.0
	고졸	(134)	83.6	13.4	0.0	3.0
	대졸	(79)	65.8	30.4	1.3	2.5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유흥주점업	(36)	97.2	2.8	0.0	0.0
	일반음식점	(146)	82.9	14.4	0.7	2.1
	휴게음식점	(48)	50.0	43.8	0.0	6.3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8)	72.4	24.1	0.0	3.4
	450만~600만원 미만	(45)	73.3	24.4	0.0	2.2
	600만~800만원 미만	(59)	83.1	11.9	1.7	3.4
	800만원 이상	(68)	82.4	16.2	0.0	1.5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76.7	16.7	0.0	6.7
	250만~400만원 미만	(47)	74.5	25.5	0.0	0.0
	400만~550만원 미만	(64)	87.5	12.5	0.0	0.0
	550만원 이상	(59)	72.9	22.0	1.7	3.4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65.6	32.0	0.8	1.6
	아니오	(108)	92.6	3.7	0.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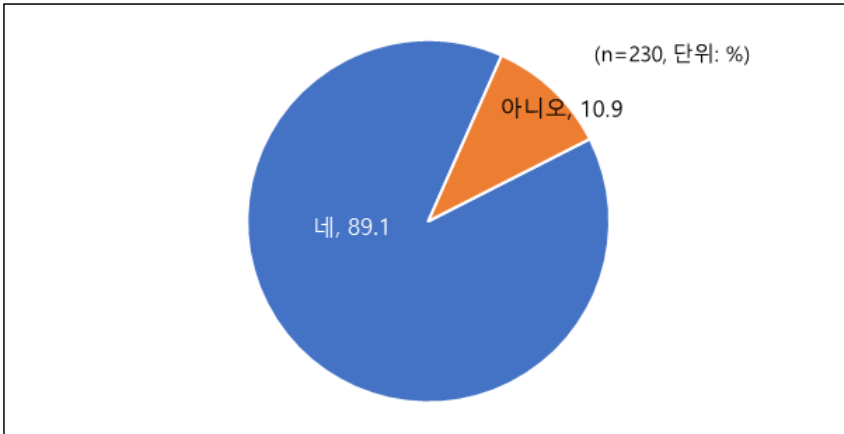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4)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납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경우,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89.1%, ‘아니오’라는 응답이 10.9%였다.
- 사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에서 ‘네’라는 응답이 77.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그림 24]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납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3〉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납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오
전체		(230)	89.1	10.9
성별	남자	(117)	91.5	8.5
	여자	(113)	86.7	13.3
연령대	30대 이하	(22)	86.4	13.6
	40대	(49)	87.8	12.2
	50대	(78)	89.7	10.3
	60대 이상	(81)	90.1	9.9
지역	서울	(39)	89.7	10.3
	경기/인천	(44)	86.4	13.6
	대전/충청/세종	(51)	86.3	13.7
	광주/전라	(32)	93.8	6.3
	대구/경북	(14)	92.9	7.1
	부산/울산/경남	(27)	88.9	11.1
	강원/제주	(23)	91.3	8.7
최종학력	초졸	(0)	0.0	0.0
	중졸	(17)	94.1	5.9
	고졸	(134)	91.8	8.2
	대졸	(79)	83.5	16.5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사업 업종	유흥주점업	(36)	94.4	5.6
	일반음식점	(146)	91.8	8.2
	휴게음식점	(48)	77.1	22.9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미만	(58)	87.9	12.1
	450만~600만원 미만	(45)	82.2	17.8
	600만~800만원 미만	(59)	88.1	11.9
	800만원 이상	(68)	95.6	4.4
월평균 개인소득	250만원 미만	(60)	85.0	15.0
	250만~400만원 미만	(47)	80.9	19.1
	400만~550만원 미만	(64)	92.2	7.8
	550만원 이상	(59)	96.6	3.4
제도 사용경험	네	(122)	92.6	7.4
	아니오	(108)	85.2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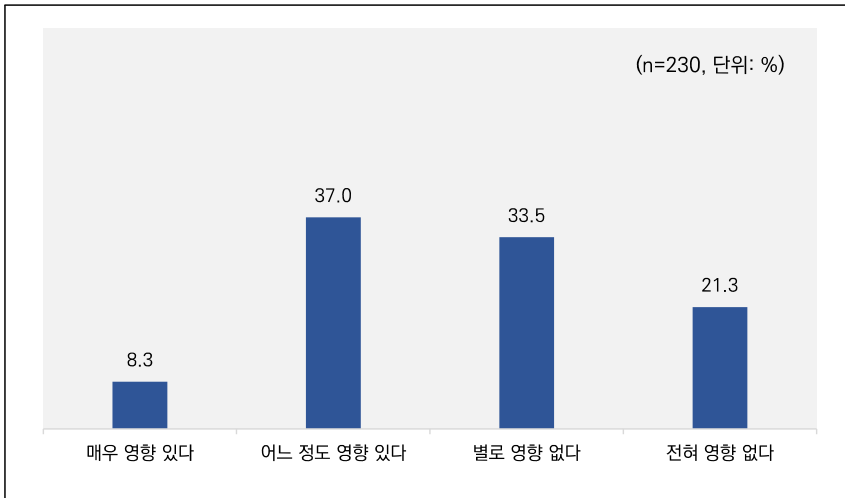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5)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귀하께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귀하가 매입하시는 면세농산물 혹은 중고자동차 등의 매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어느 정도 영향 있다’라는 응답이 37.0%, ‘별로 영향 없다’(33.5%), ‘전혀 영향 없다’(21.3%), ‘매우 영향 있다’(8.3%)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⁵⁾은 2.3점이었다.
- 사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주점업’에서 ‘별로 영향 없다’라는 응답이 75.0%로 가장 많았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별로 영향 없다’라는 응답이 57.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그림 25]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전혀 영향 없다’ 1~‘매우 영향 있다’ 4로 하여 산출한 평균

〈부표 2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점수)

구분		사례 수	매우 영향 있다	어느 정도 영향 있다	별로 영향 없다	전혀 영향 없다	평균 ¹⁾
전체		(230)	8.3	37.0	33.5	21.3	2.3
성별	남자	(117)	7.7	37.6	35.0	19.7	2.3
	여자	(113)	8.8	36.3	31.9	23.0	2.3
연령대	30대 이하	(22)	0.0	36.4	27.3	36.4	2.0
	40대	(49)	10.2	36.7	28.6	24.5	2.3
	50대	(78)	3.8	34.6	37.2	24.4	2.2
	60대 이상	(81)	13.6	39.5	34.6	12.3	2.5
권역	서울	(39)	5.1	66.7	15.4	12.8	2.6
	경기/인천	(44)	9.1	38.6	34.1	18.2	2.4
	대전/충청/세종	(51)	2.0	23.5	39.2	35.3	1.9
	광주/전라	(32)	12.5	21.9	43.8	21.9	2.3
	대구/경북	(14)	7.1	21.4	57.1	14.3	2.2
	부산/울산/경남	(27)	7.4	29.6	40.7	22.2	2.2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21.7	52.2	13.0	13.0	2.8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7)	5.9	29.4	29.4	35.3	2.1
	고졸	(134)	7.5	38.1	38.1	16.4	2.4
	대졸	(79)	10.1	36.7	26.6	26.6	2.3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유흥주점업	(36)	0.0	8.3	75.0	16.7	1.9
	일반음식점	(146)	13.0	46.6	22.6	17.8	2.5
월평균 가구 소득	휴게음식점	(48)	0.0	29.2	35.4	35.4	1.9
	450만원 미만	(58)	5.2	44.8	27.6	22.4	2.3
	450만~600만원 미만	(45)	2.2	28.9	37.8	31.1	2.0
	600만~800만원 미만	(59)	6.8	33.9	40.7	18.6	2.3
월평균 개인 소득	800만원 이상	(68)	16.2	38.2	29.4	16.2	2.5
	250만원 미만	(60)	8.3	40.0	33.3	18.3	2.4
	250만~400만원 미만	(47)	2.1	36.2	40.4	21.3	2.2
	400만~550만원 미만	(64)	3.1	25.0	45.3	26.6	2.0
제도 사용 경험	550만원 이상	(59)	18.6	47.5	15.3	18.6	2.7
	네	(122)	14.8	55.7	17.2	12.3	2.7
	아니오	(108)	0.9	15.7	51.9	31.5	1.9

주: 1) '전혀 영향 없다' 1~'매우 영향 있다' 4로 하여 산출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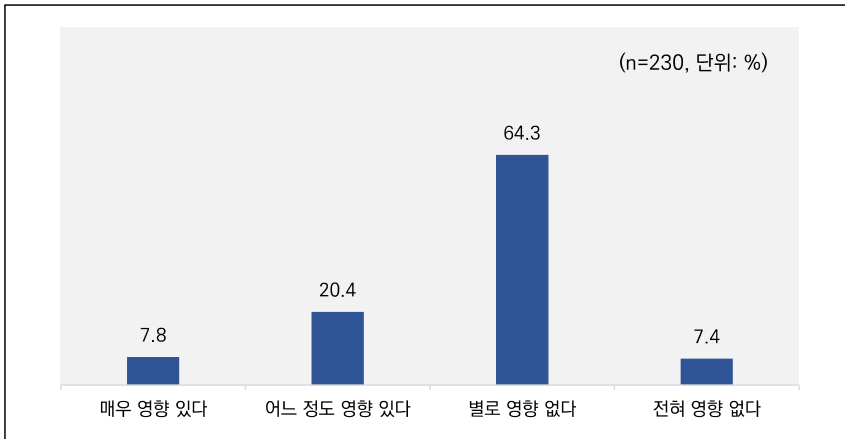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6)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귀하께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귀하가 판매하는 서비스 혹은 제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별로 영향 없다'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 있다'(20.4%), '매우 영향 있다'(7.8%), '전혀 영향 없다'(7.4%) 순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 있다'가 47.8%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26]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5〉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점수)

구분		사례 수	매우 영향 있다	어느 정도 영향 있다	별로 영향 없다	전혀 영향 없다	평균 ¹⁾
전체		(230)	7.8	20.4	64.3	7.4	2.3
성별	남자	(117)	7.7	20.5	69.2	2.6	2.3
	여자	(113)	8.0	20.4	59.3	12.4	2.2
연령대	30대 이하	(22)	0.0	13.6	72.7	13.6	2.0
	40대	(49)	10.2	12.2	67.3	10.2	2.2
	50대	(78)	2.6	20.5	67.9	9.0	2.2
	60대 이상	(81)	13.6	27.2	56.8	2.5	2.5
권역	서울	(39)	5.1	12.8	79.5	2.6	2.2
	경기/인천	(44)	9.1	20.5	65.9	4.5	2.3
	대전/충청/세종	(51)	0.0	19.6	58.8	21.6	2.0
	광주/전라	(32)	12.5	18.8	68.8	0.0	2.4
	대구/경북	(14)	7.1	14.3	78.6	0.0	2.3
	부산/울산/경남	(27)	7.4	14.8	74.1	3.7	2.3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21.7	47.8	21.7	8.7	2.8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7)	5.9	29.4	64.7	0.0	2.4
	고졸	(134)	6.7	20.1	70.1	3.0	2.3
	대졸	(79)	10.1	19.0	54.4	16.5	2.2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유형주점업	(36)	0.0	2.8	97.2	0.0	2.0
	일반음식점	(146)	12.3	26.7	58.2	2.7	2.5
월평균 가구 소득	휴게음식점	(48)	0.0	14.6	58.3	27.1	1.9
	450만원 미만	(58)	3.4	19.0	69.0	8.6	2.2
	450~600만원 미만	(45)	2.2	17.8	66.7	13.3	2.1
	600~800만원 미만	(59)	6.8	16.9	71.2	5.1	2.3
월평균 개인 소득	800만원 이상	(68)	16.2	26.5	52.9	4.4	2.5
	250만원 미만	(60)	6.7	16.7	73.3	3.3	2.3
	250~400만원 미만	(47)	2.1	19.1	68.1	10.6	2.1
	400~550만원 미만	(64)	3.1	12.5	76.6	7.8	2.1
제도 사용 경험	550만원 이상	(59)	18.6	33.9	39.0	8.5	2.6
	네	(122)	13.9	34.4	39.3	12.3	2.5
	아니오	(108)	0.9	4.6	92.6	1.9	2.0

주: 1) '전혀 영향 없다' 1~'매우 영향 있다' 4로 하여 산출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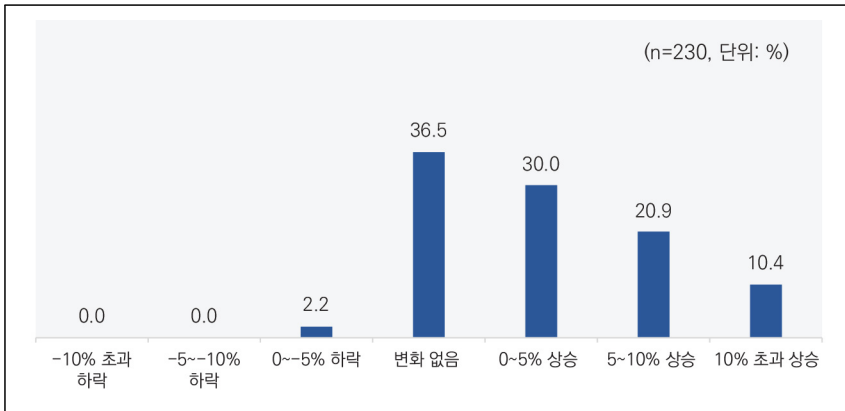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7) 의제매입공제제도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경우, 의제매입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판매가격 (예를 들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음식가격)은 얼마나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의제매입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0~5% 상승'(30.0%), '5~10% 상승'(20.9%), '10% 초과 상승'(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5~10% 상승'이 42.9%로 가장 많았다.
- 제도 사용 경험으로 살펴보면, '아니오'에서 '5~10% 상승'이 30.6%로 가장 많았다.

[부그림 27] 의제매입공제제도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6〉 의제매입공제제도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0% 초과 하락	-5~ -10% 하락	0~ -5% 하락	변화 없음	0~ 5% 상승	5~ 10% 상승	10% 초과 상승
전체		(230)	0.0	0.0	2.2	36.5	30.0	20.9	10.4
성별	남자	(117)	0.0	0.0	1.7	36.8	30.8	21.4	9.4
	여자	(113)	0.0	0.0	2.7	36.3	29.2	20.4	11.5
연령대	30대 이하	(22)	0.0	0.0	4.5	54.5	18.2	13.6	9.1
	40대	(49)	0.0	0.0	6.1	46.9	24.5	20.4	2.0
	50대	(78)	0.0	0.0	0.0	41.0	30.8	16.7	11.5
	60대 이상	(81)	0.0	0.0	1.2	21.0	35.8	27.2	14.8
권역	서울	(39)	0.0	0.0	2.6	59.0	25.6	12.8	0.0
	경기/인천	(44)	0.0	0.0	2.3	34.1	29.5	27.3	6.8
	대전/충청/세종	(51)	0.0	0.0	3.9	49.0	29.4	9.8	7.8
	광주/전라	(32)	0.0	0.0	0.0	15.6	28.1	28.1	28.1
	대구/경북	(14)	0.0	0.0	0.0	0.0	35.7	42.9	21.4
	부산/울산/경남	(27)	0.0	0.0	3.7	37.0	18.5	25.9	14.8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0.0	0.0	0.0	26.1	52.2	17.4	4.3
	초졸	(0)	0.0	0.0	0.0	0.0	0.0	0.0	0.0
	중졸	(17)	0.0	0.0	0.0	17.6	29.4	35.3	17.6
	고졸	(134)	0.0	0.0	0.0	35.1	28.4	23.1	13.4
	대졸	(79)	0.0	0.0	6.3	43.0	32.9	13.9	3.8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0.0	0.0	0.0
	유흥주점업	(36)	0.0	0.0	0.0	41.7	19.4	30.6	8.3
	일반음식점	(146)	0.0	0.0	0.0	29.5	30.8	25.3	14.4
	휴게음식점	(48)	0.0	0.0	10.4	54.2	35.4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8)	0.0	0.0	1.7	53.4	20.7	17.2	6.9
	450~600만원 미만	(45)	0.0	0.0	2.2	31.1	20.0	33.3	13.3
	600~800만원 미만	(59)	0.0	0.0	3.4	27.1	33.9	22.0	13.6
	800만원 이상	(68)	0.0	0.0	1.5	33.8	41.2	14.7	8.8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0.0	0.0	0.0	40.0	26.7	21.7	11.7
	250~400만원 미만	(47)	0.0	0.0	4.3	42.6	27.7	19.1	6.4
	400~550만원 미만	(64)	0.0	0.0	3.1	32.8	23.4	25.0	15.6
	550만원 이상	(59)	0.0	0.0	1.7	32.2	42.4	16.9	6.8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0.0	0.0	1.6	50.0	34.4	12.3	1.6
	아니오	(108)	0.0	0.0	2.8	21.3	25.0	30.6	20.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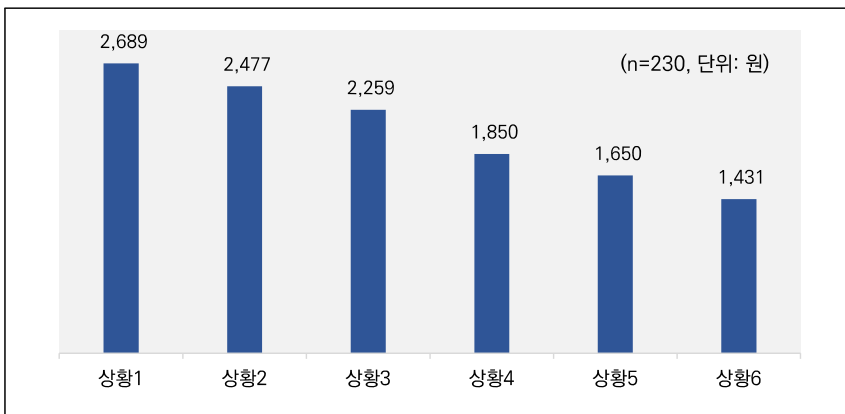
28-1)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

귀하께서는 상품을 A원에 매입하여, B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본 상황에 더해 몇 가지 다른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상황 3을 예로 들면, 상품 매입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한 경우, 귀하께서는 이제 얼마에 판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의 상황에 대해 판매금액 B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매입(A)	판매(B)	부가가치세 납부
기본 1	1,000	2,000	100원
상황 1	1,300	()	매입세액은 130원
상황 2	1,200	()	매입세액은 120원
상황 3	1,100	()	매입세액은 110원
상황 4	900	()	매입세액은 90원
상황 5	800	()	매입세액은 80원
상황 6	700	()	매입세액은 70원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각 매입가격에 따른 판매가격에 대한 평균을 계산했을 때, '상황 1'은 2,689원, '상황 2'(2,477원), '상황 3'(2,259원), '상황 4'(1,850원), '상황 5'(1,650원), '상황 6'(1,431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28]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7〉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

(단위: 명, 원)

구분		사례 수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6
전체		(230)	2,689	2,477	2,259	1,850	1,650	1,431
성별	남자	(117)	2,718	2,512	2,291	1,871	1,668	1,448
	여자	(113)	2,658	2,441	2,227	1,828	1,631	1,413
연령대	30대 이하	(22)	2,682	2,473	2,264	1,841	1,645	1,432
	40대	(49)	2,720	2,512	2,292	1,876	1,676	1,447
	50대	(78)	2,651	2,438	2,222	1,821	1,662	1,413
	60대 이상	(81)	2,707	2,494	2,274	1,865	1,663	1,438
권역	서울	(39)	2,682	2,479	2,262	1,846	1,646	1,426
	경기/인천	(44)	2,675	2,448	2,230	1,825	1,634	1,420
	대전/충청/세종	(51)	2,627	2,420	2,208	1,818	1,618	1,400
	광주/전라	(32)	2,684	2,481	2,259	1,853	1,653	1,438
	대구/경북	(14)	2,686	2,479	2,264	1,843	1,643	1,421
	부산/울산/경남	(27)	2,763	2,548	2,330	1,900	1,696	1,474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2,783	2,565	2,339	1,917	1,704	1,474
	초졸	(0)
	중졸	(17)	2,776	2,559	2,335	1,912	1,712	1,471
	고졸	(134)	2,656	2,443	2,227	1,826	1,627	1,413
	대졸	(79)	2,725	2,518	2,297	1,877	1,676	1,453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유흥주점업	(36)	2,606	2,381	2,167	1,781	1,586	1,372
	일반음식점	(146)	2,723	2,512	2,292	1,875	1,673	1,453
월평균 가구 소득	휴게음식점	(48)	2,646	2,442	2,227	1,825	1,627	1,408
	450만원 미만	(58)	2,672	2,466	2,247	1,847	1,647	1,426
	450만~600만원 미만	(45)	2,673	2,464	2,251	1,849	1,647	1,433
	600만~800만원 미만	(59)	2,659	2,446	2,234	1,824	1,627	1,408
월평균 개인 소득	800만원 이상	(68)	2,738	2,522	2,297	1,876	1,675	1,453
	250만원 미만	(60)	2,650	2,443	2,228	1,830	1,628	1,413
	250만~400만원 미만	(47)	2,711	2,509	2,283	1,870	1,672	1,445
	400만~550만원 미만	(64)	2,700	2,472	2,258	1,848	1,647	1,430
제도 사용 경험	550만원 이상	(59)	2,698	2,492	2,273	1,856	1,658	1,439
	네	(122)	2,691	2,484	2,265	1,858	1,658	1,438
	아니오	(108)	2,686	2,469	2,253	1,841	1,641	1,4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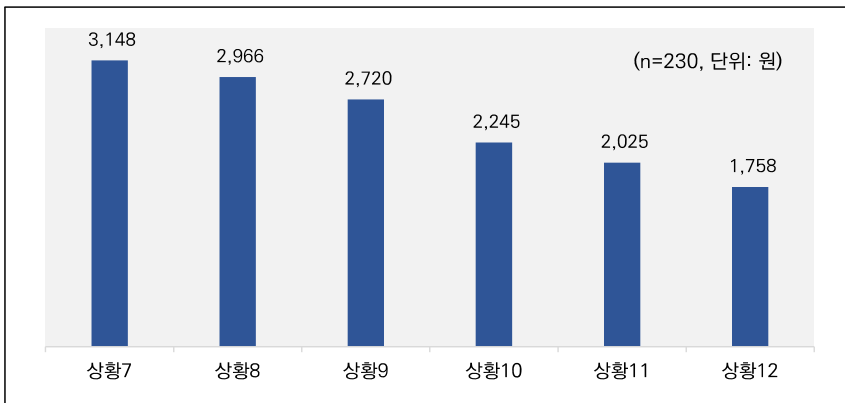
28-2)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상황

귀하께서는 상품을 A원에 매입하여, B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본 상황에 더해 몇 가지 다른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상황 3을 예로 들면, 상품 매입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한 경우, 귀하께서는 이제 얼마에 판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의 상황에 대해 판매금액 B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매입(A)	판매(B)	부가가치세 납부
기본 2	1,000	2,000	200원
상황 7	1,3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8	1,2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9	1,1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0	9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1	800	()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2	700	()	매입세액은 0원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매입가격에 따른 판매가격에 대한 평균을 계산했을 때, '상황 7'은 3,148원, '상황 8'(2,966원), '상황 9'(2,720원), '상황 10'(2,245원), '상황 11'(2,025원), '상황 12'(1,758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29]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상황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8〉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상황

(단위: 명, 원)

구분		사례 수	상황 7	상황 8	상황 9	상황 10	상황 11	상황 12
전체		(230)	3,148	2,966	2,720	2,245	2,025	1,758
성별	남자	(117)	3,200	3,000	2,752	2,252	2,031	1,769
	여자	(113)	3,094	2,930	2,686	2,238	2,019	1,746
연령대	30대 이하	(22)	3,173	2,950	2,723	2,264	2,009	1,755
	40대	(49)	3,214	3,024	2,763	2,255	2,076	1,790
	50대	(78)	3,094	2,910	2,669	2,204	1,981	1,737
	60대 이상	(81)	3,153	2,988	2,741	2,274	2,042	1,759
권역	서울	(39)	3,149	2,985	2,723	2,215	2,010	1,762
	경기/인천	(44)	3,120	2,945	2,702	2,243	2,023	1,750
	대전/충청/세종	(51)	3,078	2,886	2,639	2,192	1,982	1,706
	광주/전라	(32)	3,147	2,947	2,756	2,250	2,013	1,797
	대구/경북	(14)	3,121	3,029	2,771	2,250	2,043	1,757
	부산/울산/경남	(27)	3,215	3,063	2,763	2,293	2,074	1,793
최종 학력	강원/제주	(23)	3,291	3,022	2,791	2,352	2,100	1,787
	초졸	(0)
	중졸	(17)	3,288	3,076	2,806	2,347	2,118	1,841
	고졸	(134)	3,093	2,922	2,683	2,209	1,993	1,737
	대졸	(79)	3,211	3,015	2,763	2,285	2,061	1,775
사업 업종	대학원 졸업 이상	(0)
	유흥주점업	(36)	3,053	2,872	2,600	2,181	1,953	1,708
	일반음식점	(146)	3,179	2,998	2,757	2,260	2,041	1,775
	휴게음식점	(48)	3,123	2,938	2,696	2,248	2,031	1,742
월평균 가구 소득	450만원 미만	(58)	3,119	2,933	2,697	2,233	2,010	1,750
	450만~600만원 미만	(45)	3,109	2,938	2,678	2,231	2,002	1,771
	600만~800만원 미만	(59)	3,117	2,961	2,707	2,237	2,010	1,732
	800만원 이상	(68)	3,225	3,016	2,778	2,272	2,066	1,778
월평균 개인 소득	250만원 미만	(60)	3,113	2,928	2,677	2,227	1,993	1,727
	250만~400만원 미만	(47)	3,181	3,013	2,745	2,277	2,051	1,760
	400만~550만원 미만	(64)	3,119	2,963	2,716	2,248	2,031	1,795
	550만원 이상	(59)	3,188	2,969	2,747	2,236	2,031	1,747
제도 사용 경험	네	(122)	3,156	2,962	2,724	2,235	2,023	1,757
	아니오	(108)	3,139	2,969	2,715	2,256	2,028	1,759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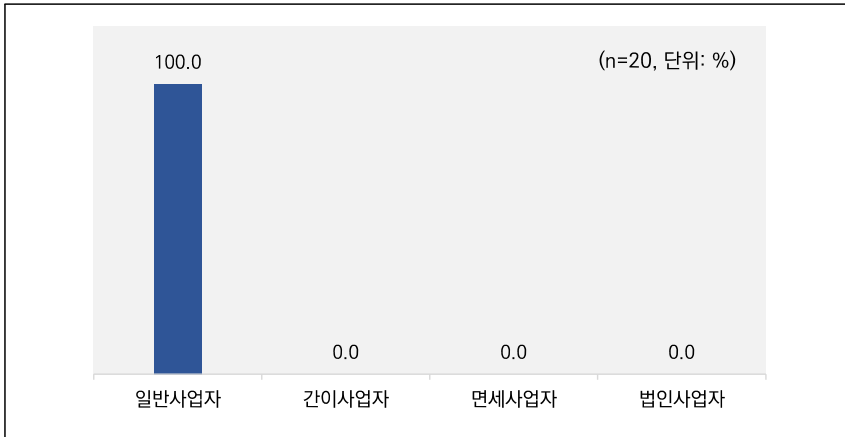
3. 사업자 현황(중고차판매업)

1) 사업 유형

귀하의 사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 사업 유형에 대해 물었을 때, '일반사업자'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30] 사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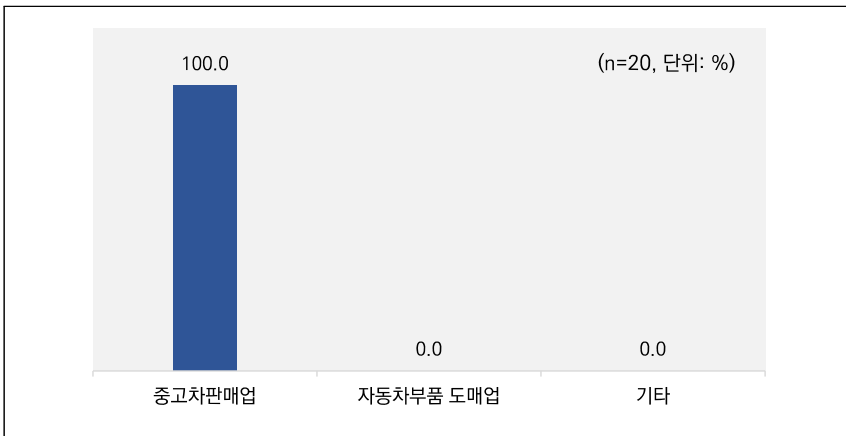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사업 업종

귀하의 사업 업종은 무엇입니까?

- 사업 업종에 대해 물었을 때, ‘중고차판매업’이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31] 사업 업종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사업의 주력 분야

귀하의 사업의 주력 분야는 무엇입니까?(예시: 고깃집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의 소고기 판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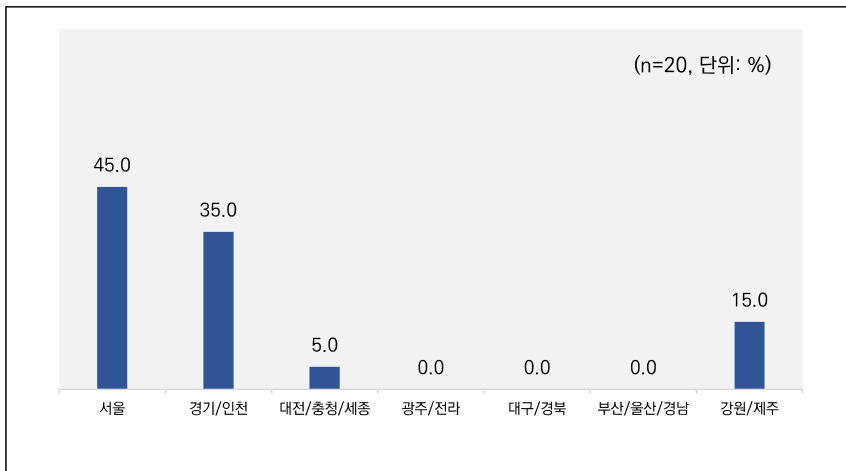
- 사업의 주력 분야를 물었을 때, '자동차'라는 응답이 100.0%였다.

4) 사업장 위치

귀하의 사업장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을 때, '서울'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경기/인천'(35.0%), '강원/제주'(15.0%), '대전/충청/세종'(5.0%)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32] 사업장 위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29〉 사업장 위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체		(20)	45.0	35.0	5.0	0.0	0.0	0.0	15.0
성별	남자	(11)	36.4	45.5	9.1	0.0	0.0	0.0	9.1
	여자	(9)	55.6	22.2	0.0	0.0	0.0	0.0	22.2
연령대	30대 이하	(2)	0.0	50.0	50.0	0.0	0.0	0.0	0.0
	40대	(4)	50.0	25.0	0.0	0.0	0.0	0.0	25.0
	50대	(11)	54.5	36.4	0.0	0.0	0.0	0.0	9.1
	60대 이상	(3)	33.3	33.3	0.0	0.0	0.0	0.0	33.3
최종 학력	초졸	(0)	0.0	0.0	0.0	0.0	0.0	0.0	0.0
	중졸	(1)	0.0	0.0	0.0	0.0	0.0	0.0	100.0
	고졸	(11)	45.5	54.5	0.0	0.0	0.0	0.0	0.0
	대졸	(8)	50.0	12.5	12.5	0.0	0.0	0.0	25.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66.7	16.7	0.0	0.0	0.0	0.0	16.7
	1천만~1,400만원 미만	(6)	33.3	50.0	0.0	0.0	0.0	0.0	16.7
	1,400만~1,800만원 미만	(5)	40.0	20.0	20.0	0.0	0.0	0.0	20.0
	1,800만원 이상	(3)	33.3	66.7	0.0	0.0	0.0	0.0	0.0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66.7	16.7	0.0	0.0	0.0	0.0	16.7
	900만~1,400만원 미만	(6)	33.3	50.0	0.0	0.0	0.0	0.0	16.7
	1,400만~1,750만원 미만	(4)	25.0	25.0	25.0	0.0	0.0	0.0	25.0
	1,750만원 이상	(4)	50.0	5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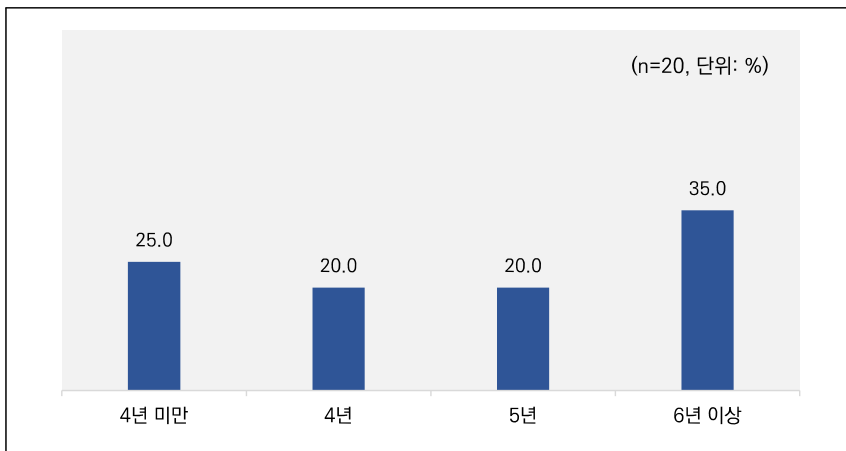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

귀하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운영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를 물었을 때, '6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년 미만'(25.0%), '4년'과 '5년'(20.0%)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33]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0〉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연수

(단위: 명, %, 연수)

구분		사례 수	4년 미만	4년	5년	6년 이상	평균
전체		(20)	25.0	20.0	20.0	35.0	4.7
성별	남자	(11)	27.3	27.3	27.3	18.2	4.4
	여자	(9)	22.2	11.1	11.1	55.6	5.1
연령대	30대 이하	(2)	0.0	0.0	100.0	0.0	5.0
	40대	(4)	50.0	0.0	0.0	50.0	4.8
	50대	(11)	27.3	27.3	18.2	27.3	4.5
	60대 이상	(3)	0.0	33.3	0.0	66.7	5.3
권역	서울	(9)	22.2	33.3	0.0	44.4	5.0
	경기/인천	(7)	42.9	14.3	28.6	14.3	3.7
	대전/충청/세종	(1)	0.0	0.0	100.0	0.0	5.0
	광주/전라	(0)	0.0	0.0	0.0	0.0	.
	대구/경북	(0)	0.0	0.0	0.0	0.0	.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0.0	0.0	33.3	66.7	6.0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	0.0	0.0	0.0	100.0	6.0
	고졸	(11)	36.4	9.1	18.2	36.4	4.6
	대졸	(8)	12.5	37.5	25.0	25.0	4.6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1천만원 미만	(6)	33.3	33.3	0.0	33.3	4.3
	1천만~1,400만원 미만	(6)	50.0	0.0	33.3	16.7	3.8
	1,400만~1,800만원 미만	(5)	0.0	20.0	20.0	60.0	6.0
월평균 개인 소득	1,800만원 이상	(3)	0.0	33.3	33.3	33.3	5.0
	900만원 미만	(6)	50.0	16.7	0.0	33.3	4.2
	900만~1,400만원 미만	(6)	33.3	16.7	33.3	16.7	4.0
	1,400만~1,750만원 미만	(4)	0.0	0.0	25.0	75.0	6.5
	1,750만원 이상	(4)	0.0	50.0	25.0	25.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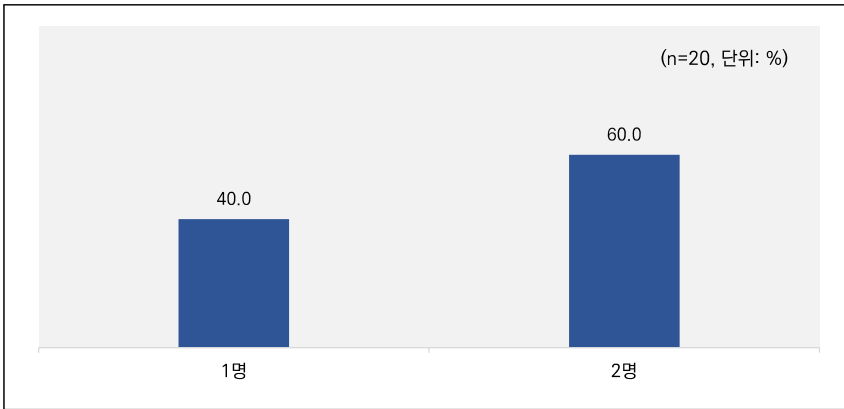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

귀하의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를 물었을 때, '2명'이라는 응답이 60.0%, '1명'이라는 응답이 40.0%였다.

[부그림 34]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1〉 사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원의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명	2명
전체		(20)	40.0	60.0
성별	남자	(11)	36.4	63.6
	여자	(9)	44.4	55.6
연령대	30대 이하	(2)	0.0	100.0
	40대	(4)	50.0	50.0
	50대	(11)	36.4	63.6
	60대 이상	(3)	66.7	33.3
권역	서울	(9)	55.6	44.4
	경기/인천	(7)	28.6	71.4
	대전/충청/세종	(1)	0.0	100.0
	광주/전라	(0)	0.0	0.0
	대구/경북	(0)	0.0	0.0
	부산/울산/경남	(0)	0.0	0.0
최종학력	강원/제주	(3)	33.3	66.7
	초졸	(0)	0.0	0.0
	중졸	(1)	100.0	0.0
	고졸	(11)	36.4	63.6
	대졸	(8)	37.5	62.5
월평균 가구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1천만원 미만	(6)	66.7	33.3
	1천만~1,400만원 미만	(6)	50.0	50.0
	1,400만~1,800만원 미만	(5)	20.0	80.0
월평균 개인소득	1,800만원 이상	(3)	0.0	100.0
	900만원 미만	(6)	83.3	16.7
	900만~1,400만원 미만	(6)	33.3	66.7
	1,400만~1,750만원 미만	(4)	0.0	100.0
	1,750만원 이상	(4)	25.0	75.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

귀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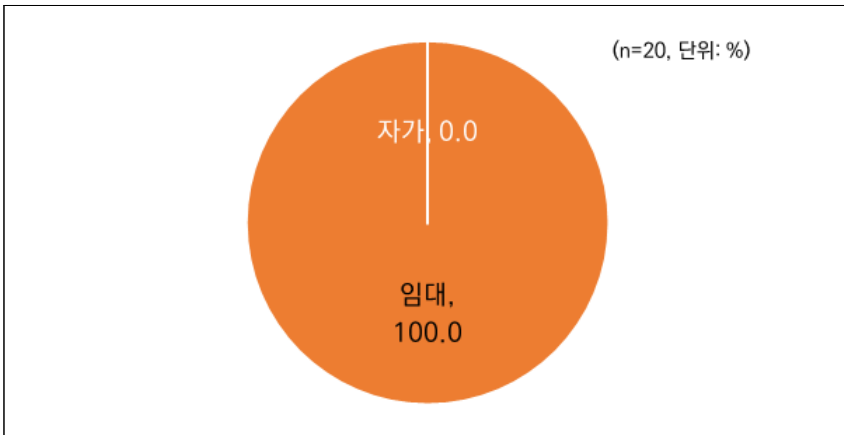
-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의 수를 물었을 때, '0명'이라는 응답이 100.0%였다.

8) 사업장의 점유 형태

귀하의 사업장은 자가입니까? 임대입니까?

- 사업장의 점유 형태에 대해 물었을 때, '임대'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35] 사업장의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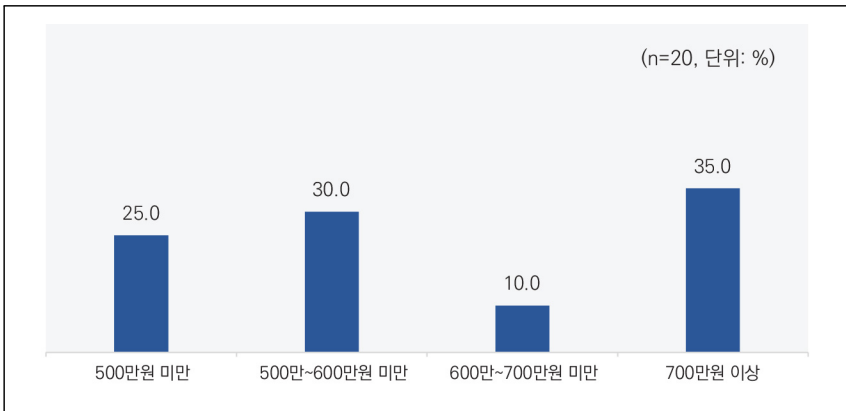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 월 임차료

(임대인 경우) 월 임차료는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 임대인 경우 월 임차료에 대해 물었을 때, '700만원 이상'이 3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500만~600만원 미만'(30.0%), '500만원 미만'(25.0%), '600만~700만원 미만'(10.0%)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36] 월 임차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2〉 월 임차료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500만원 미만	500만~600만원 미만	600만 ~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20)	25.0	30.0	10.0	35.0	558
성별	남자	(11)	9.1	9.1	18.2	63.6	632
	여자	(9)	44.4	55.6	0.0	0.0	467
연령대	30대 이하	(2)	0.0	50.0	0.0	50.0	600
	40대	(4)	75.0	0.0	25.0	0.0	438
	50대	(11)	18.2	18.2	9.1	54.5	609
	60대 이상	(3)	0.0	100.0	0.0	0.0	500
권역	서울	(9)	33.3	22.2	0.0	44.4	556
	경기/인천	(7)	0.0	28.6	28.6	42.9	629
	대전/충청/세종	(1)	0.0	100.0	0.0	0.0	500
	광주/전라	(0)	0.0	0.0	0.0	0.0	.
	대구/경북	(0)	0.0	0.0	0.0	0.0	.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66.7	33.3	0.0	0.0	417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	0.0	100.0	0.0	0.0	500
	고졸	(11)	27.3	27.3	18.2	27.3	555
	대졸	(8)	25.0	25.0	0.0	50.0	569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1천만원 미만	(6)	33.3	33.3	16.7	16.7	525
	1천만~1,400만원 미만	(6)	33.3	16.7	0.0	50.0	583
	1,400만~1,800만원 미만	(5)	20.0	60.0	0.0	20.0	500
월평균 개인 소득	1,800만원 이상	(3)	0.0	0.0	33.3	66.7	667
	900만원 미만	(6)	33.3	33.3	16.7	16.7	525
	900만~1,400만원 미만	(6)	33.3	16.7	0.0	50.0	583
	1,400만~1,750만원 미만	(4)	25.0	75.0	0.0	0.0	450
	1,750만원 이상	(4)	0.0	0.0	25.0	75.0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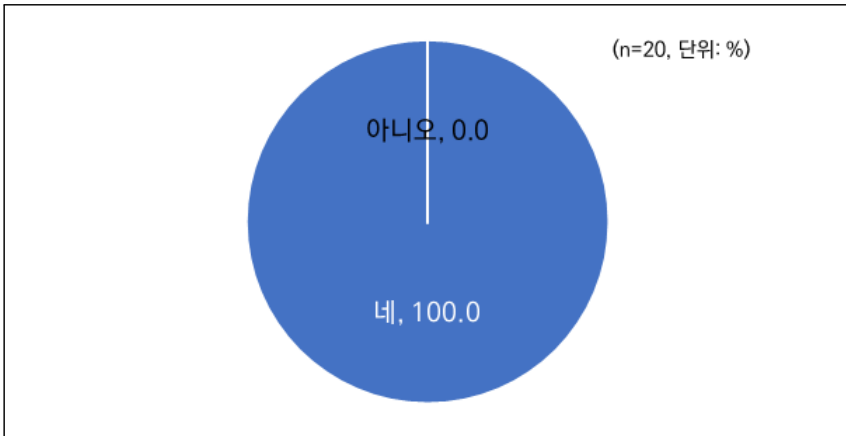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

귀하는 세무 대리인을 사용하십니까?

-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37]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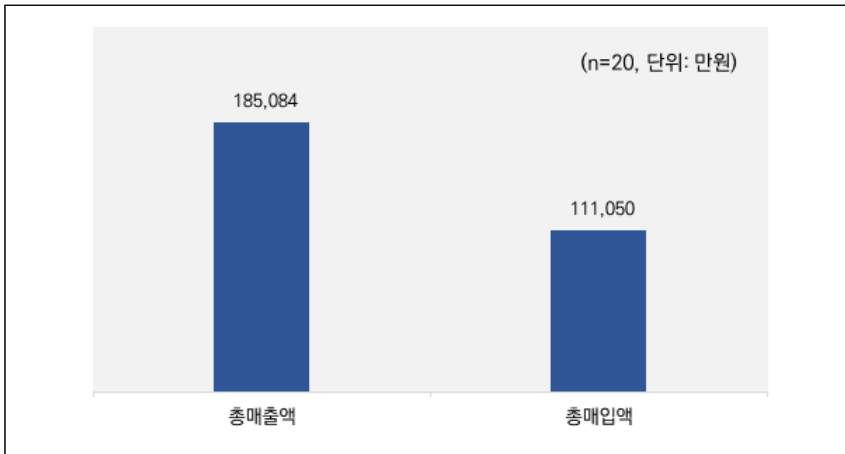
11)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귀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비용들은 각각 얼마입니까?(작년 기준)

- 1) 연간 평균 총 매출액
- 2) 연간 평균 총 매입액
- 3) 연간 평균 총 매입액 중 현금 매입액 비중

-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비용들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연간 평균 총 매출액’은 18억 5,084만원, ‘연간 평균 총 매입액’은 11억 1,050만원이었다.
- ‘연간 평균 총 매입액 중 현금 매입액 비중’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1.3%였다.

[부그림 38]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3〉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단위: 명, 만원, %)

구분		사례 수	총 매출액	총 매입액	현금 매입액 비중
전체		(20)	185,084	111,050	11.3
성별	남자	(11)	206,029	123,617	11.4
	여자	(9)	159,483	95,690	11.1
연령대	30대 이하	(2)	201,925	121,155	11.0
	40대	(4)	145,740	87,444	11.0
	50대	(11)	208,669	125,201	11.5
	60대 이상	(3)	139,833	83,900	10.7
지역	서울	(9)	168,463	101,078	11.3
	경기/인천	(7)	207,986	124,791	11.4
	대전/충청/세종	(1)	245,000	147,000	12.0
	광주/전라	(0)	.	.	.
	대구/경북	(0)	.	.	.
	부산/울산/경남	(0)	.	.	.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161,533	96,920	10.3
	초졸	(0)	.	.	.
	중졸	(1)	115,600	69,360	11.0
	고졸	(11)	182,155	109,293	11.4
	대졸	(8)	197,796	118,678	11.1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	.	.
	1천만원 미만	(6)	106,288	63,773	10.8
	1천만~1,400만원 미만	(6)	168,850	101,310	11.7
	1,400만~1,800만원 미만	(5)	231,240	138,744	11.4
월평균 개인 소득	1,800만원 이상	(3)	298,213	178,928	11.0
	900만원 미만	(6)	102,110	61,266	11.2
	900만~1,400만원 미만	(6)	173,028	103,817	11.3
	1,400만~1,750만원 미만	(4)	222,700	133,620	11.0
	1,750만원 이상	(4)	290,010	174,006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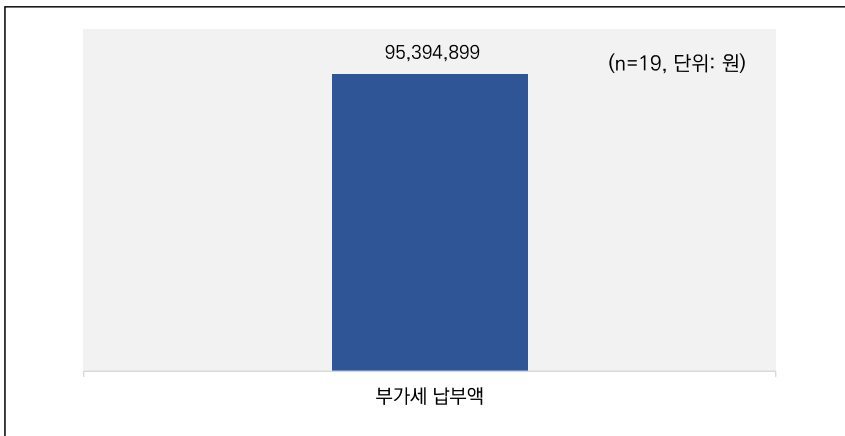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 연간 부가가치세 규모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연간 부가가치세 규모는 얼마입니까?(작년 기준)

- 연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규모에 대해 물었을 때, ‘부가가치세’는 9,539만 4,899원이었다.

[부그림 39] 연간 부가가치세 규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4〉 연간 부가가치세 규모

(단위: 명, 원)

구분		사례 수	부가세 납부
전체		(19)	95,394,899
성별	남자	(11)	111,911,216
	여자	(8)	72,684,963
연령대	30대 이하	(2)	119,386,397
	40대	(4)	93,786,513
	50대	(11)	97,652,990
	60대 이상	(2)	62,200,674
권역	서울	(9)	86,144,713
	경기/인천	(6)	97,310,519
	대전/충청/세종	(1)	188,547,135
	광주/전라	(0)	.
	대구/경북	(0)	.
	부산/울산/경남	(0)	.
	강원/제주	(3)	88,263,473
최종학력	초졸	(0)	.
	중졸	(1)	89,545,623
	고졸	(10)	82,672,835
	대졸	(8)	112,028,639
	대학원 졸업 이상	(0)	.
월평균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6)	54,124,203
	1천만~1,400만원 미만	(6)	76,013,520
	1,400만~1,800만원 미만	(4)	147,640,574
	1,800만원 이상	(3)	147,038,151
월평균 개인소득	900만원 미만	(6)	53,394,537
	900만~1,400만원 미만	(6)	76,743,185
	1,400만~1,750만원 미만	(3)	154,888,281
	1,750만원 이상	(4)	141,752,976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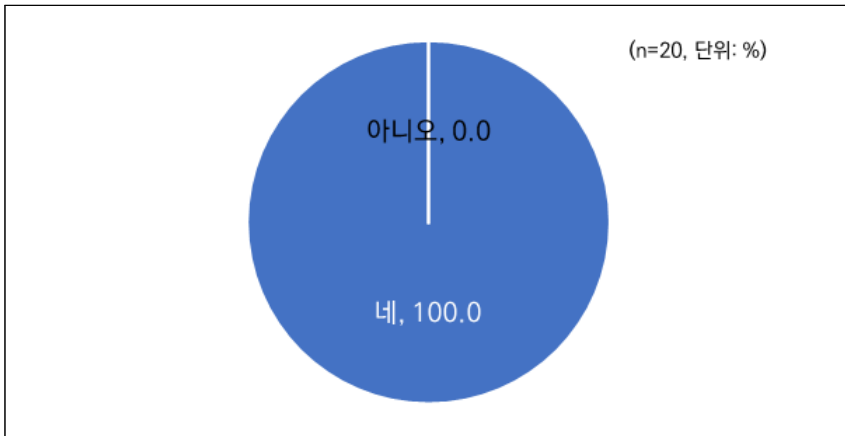
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사용 경험(중고차판매업)

1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 면세농산물 혹은 중고차 거래 등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일정 금액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0]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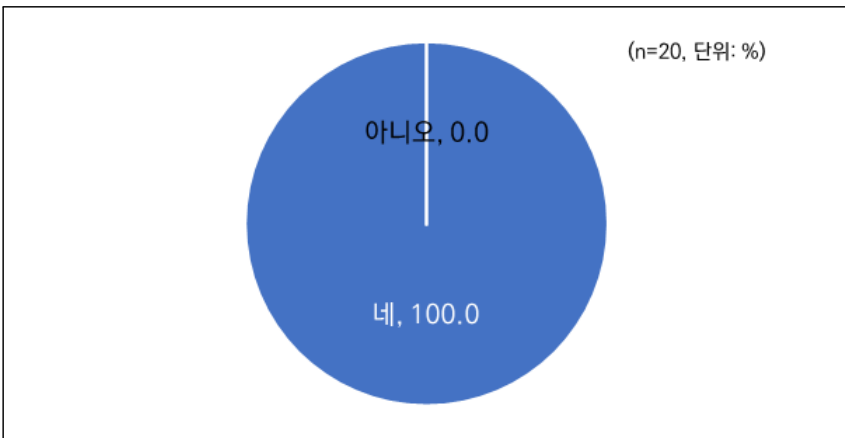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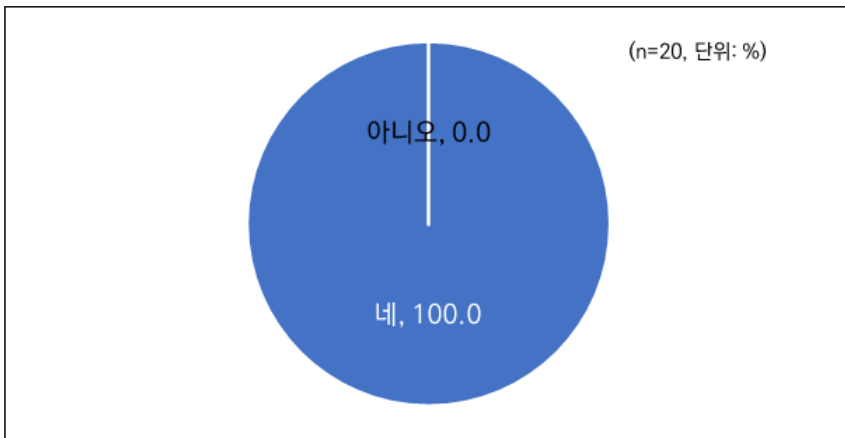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

귀하께서는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2]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 1) 귀하의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3) 귀하의 연간 총 매입액 가운데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은 몇 %입니까?

-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총 매입액 가운데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연간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3,628만 9,599원,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은 36.3%로 나타났다.

〈부표 35〉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의제매입 관련된 매입의 비중
전체		(20)	36,289,599	36.3
성별	남자	(11)	43,069,795	39.1
	여자	(9)	28,002,693	32.8
연령대	30대 이하	(2)	42,453,090	40.0
	40대	(4)	31,140,005	40.0
	50대	(11)	41,156,138	36.4
	60대 이상	(3)	21,202,755	28.3
권역	서울	(9)	34,136,011	36.1
	경기/인천	(7)	38,226,705	35.0
	대전/충청/세종	(1)	46,305,594	35.0
	광주/전라	(0)	.	.
	대구/경북	(0)	.	.
	부산/울산/경남	(0)	.	.
	강원/제주	(3)	34,891,785	40.0
최종 학력	초졸	(0)	.	.
	중졸	(1)	24,970,365	40.0
	고졸	(11)	34,633,333	35.9
	대졸	(8)	39,981,870	36.3
	대학원 졸업 이상	(0)	.	.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20,592,431	35.0
	1천만~1,400만원 미만	(6)	32,098,505	36.7
	1,400만~1,800만원 미만	(5)	46,569,017	37.0
	1,800만원 이상	(3)	58,933,761	36.7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19,689,903	35.0
	900만~1,400만원 미만	(6)	33,001,033	36.7
	1,400만~1,750만원 미만	(4)	42,088,120	35.0
	1,750만원 이상	(4)	60,323,472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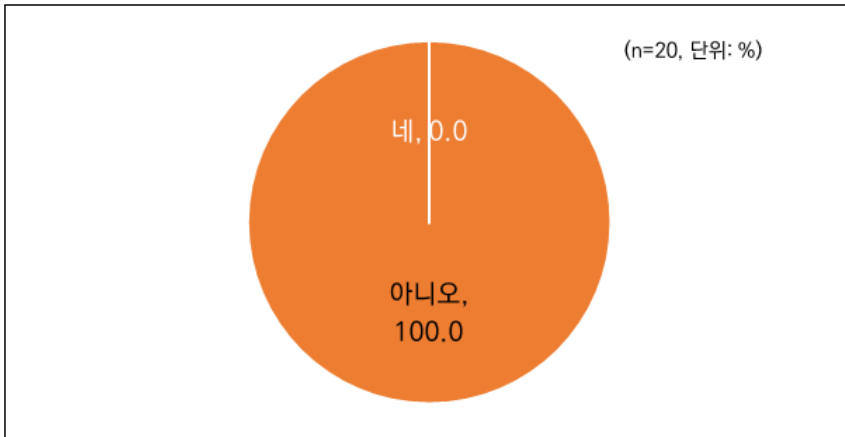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귀하께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더 많이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더 많이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3]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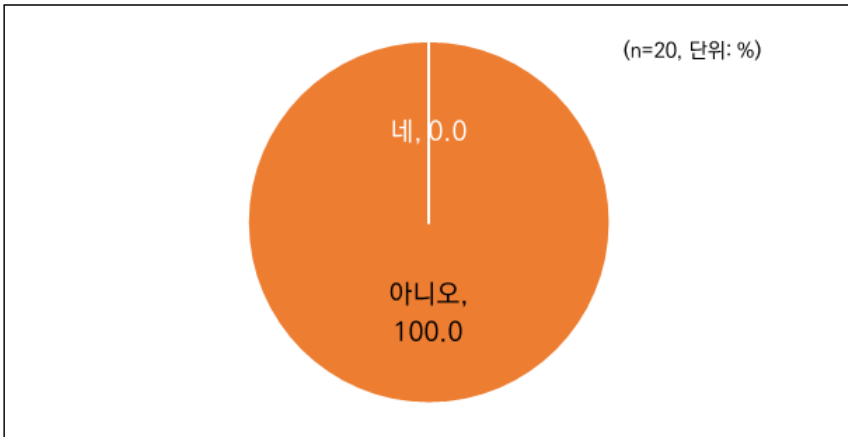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7-1)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에 대한 인지 여부

의제매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4]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에 대한 인지 여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7-2)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

(‘네’라고 응답한 경우) 의제매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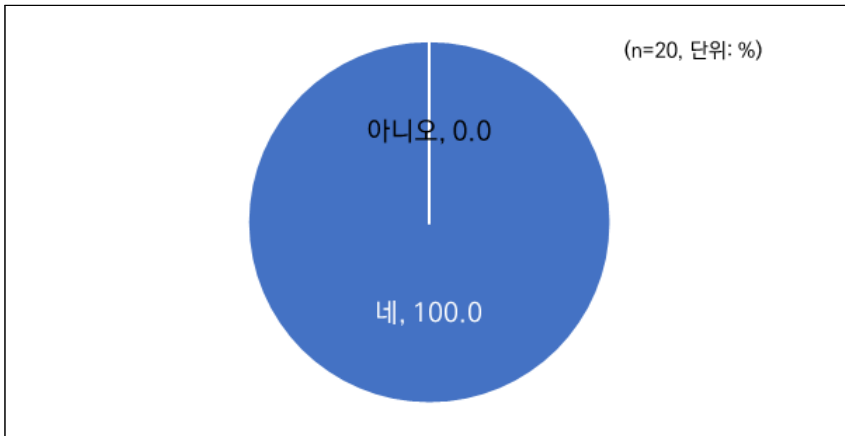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에 대해 물었을 때, ‘9%’라는 응답이 100.0%였다.

18)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십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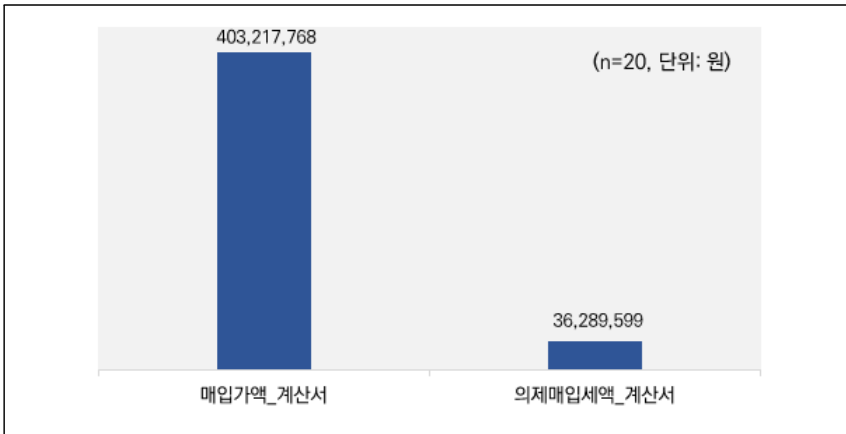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9)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매입가액'은 4억 321만 7,768원, '의제매입세액'은 3,628만 9,599원이었다.

[부그림 46]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6〉 매입분 가운데 계산서를 통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단위: 명, 원)

구분		사례 수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전체		(20)	403,217,768	36,289,599
성별	남자	(11)	478,553,279	43,069,795
	여자	(9)	311,141,033	28,002,693
연령대	30대 이하	(2)	471,701,000	42,453,090
	40대	(4)	346,000,050	31,140,005
	50대	(11)	457,290,424	41,156,138
	60대 이상	(3)	235,586,167	21,202,755
권역	서울	(9)	379,289,007	34,136,011
	경기/인천	(7)	424,741,171	38,226,705
	대전/충청/세종	(1)	514,506,600	46,305,594
	광주/전라	(0)	.	.
	대구/경북	(0)	.	.
	부산/울산/경남	(0)	.	.
	강원/제주	(3)	387,686,500	34,891,785
최종 학력	초졸	(0)	.	.
	중졸	(1)	277,448,500	24,970,365
	고졸	(11)	384,814,809	34,633,333
	대졸	(8)	444,242,996	39,981,870
	대학원 졸업 이상	(0)	.	.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228,804,794	20,592,431
	1천만~1,400만원 미만	(6)	356,650,050	32,098,505
	1,400만~1,800만원 미만	(5)	517,433,520	46,569,017
	1,800만원 이상	(3)	654,819,567	58,933,761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218,776,700	19,689,903
	900만~1,400만원 미만	(6)	366,678,144	33,001,033
	1,400만~1,750만원 미만	(4)	467,645,775	42,088,120
	1,750만원 이상	(4)	670,260,800	60,323,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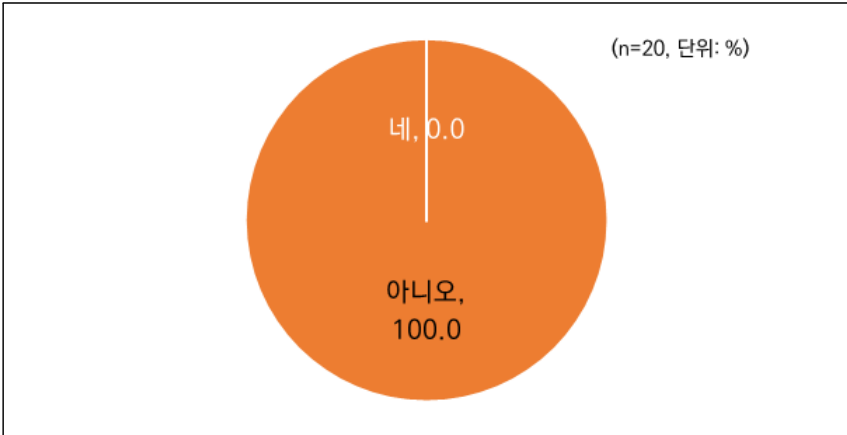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7]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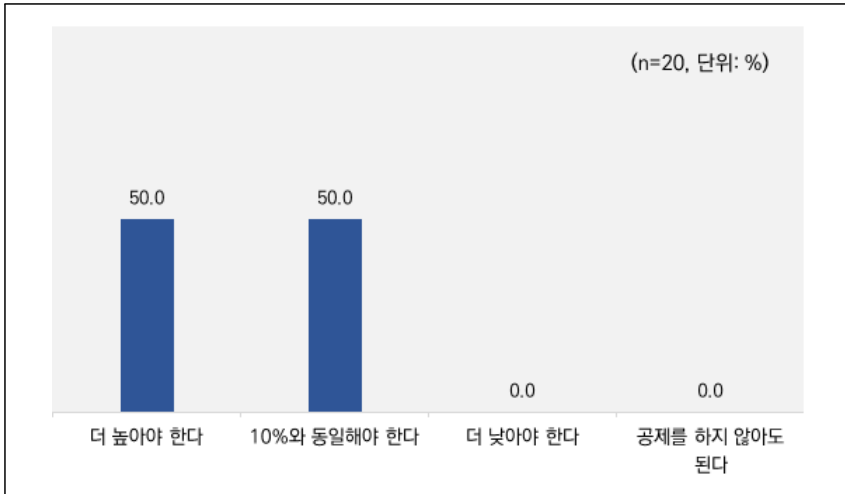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 현재 의세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귀하께서는 현재의 의세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의세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더 높아야 한다’와 ‘10%와 동일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0.0%로 나타났다.

[부그림 48] 현재 의세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7〉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더 높아야 한다	10%와 동일해야 한다	더 낮아야 한다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평균
전체		(20)	50.0	50.0	0.0	0.0	1.5
성별	남자	(11)	36.4	63.6	0.0	0.0	1.6
	여자	(9)	66.7	33.3	0.0	0.0	1.3
연령대	30대 이하	(2)	0.0	100.0	0.0	0.0	2.0
	40대	(4)	50.0	50.0	0.0	0.0	1.5
	50대	(11)	63.6	36.4	0.0	0.0	1.4
	60대 이상	(3)	33.3	66.7	0.0	0.0	1.7
권역	서울	(9)	55.6	44.4	0.0	0.0	1.4
	경기/인천	(7)	28.6	71.4	0.0	0.0	1.7
	대전/충청/세종	(1)	0.0	100.0	0.0	0.0	2.0
	광주/전라	(0)	0.0	0.0	0.0	0.0	.
	대구/경북	(0)	0.0	0.0	0.0	0.0	.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100.0	0.0	0.0	0.0	1.0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	100.0	0.0	0.0	0.0	1.0
	고졸	(11)	36.4	63.6	0.0	0.0	1.6
	대졸	(8)	62.5	37.5	0.0	0.0	1.4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1천만원 미만	(6)	66.7	33.3	0.0	0.0	1.3
	1천만~1,400만원 미만	(6)	50.0	50.0	0.0	0.0	1.5
	1,400만~1,800만원 미만	(5)	40.0	60.0	0.0	0.0	1.6
월평균 개인 소득	1,800만원 이상	(3)	33.3	66.7	0.0	0.0	1.7
	900만원 미만	(6)	50.0	50.0	0.0	0.0	1.5
	900만~1,400만원 미만	(6)	66.7	33.3	0.0	0.0	1.3
	1,400만~1,750만원 미만	(4)	50.0	50.0	0.0	0.0	1.5
	1,750만원 이상	(4)	25.0	75.0	0.0	0.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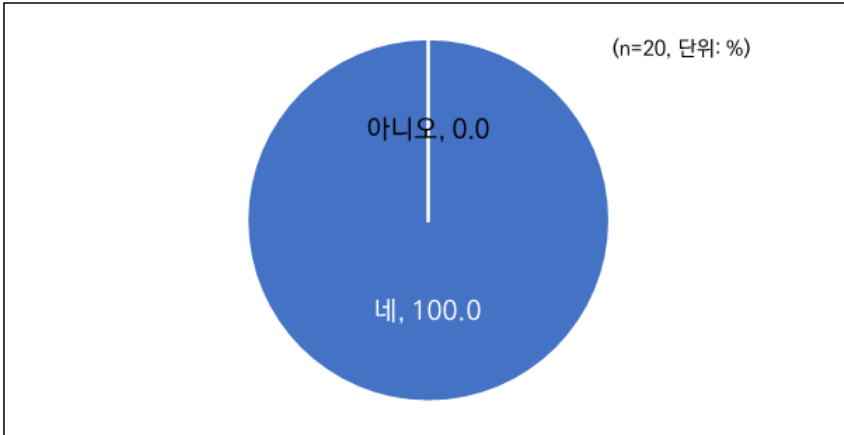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면세농산물 등 매입 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경우,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네'라는 응답이 100.0%였다.

[부그림 49] 면세농산물 등 매입 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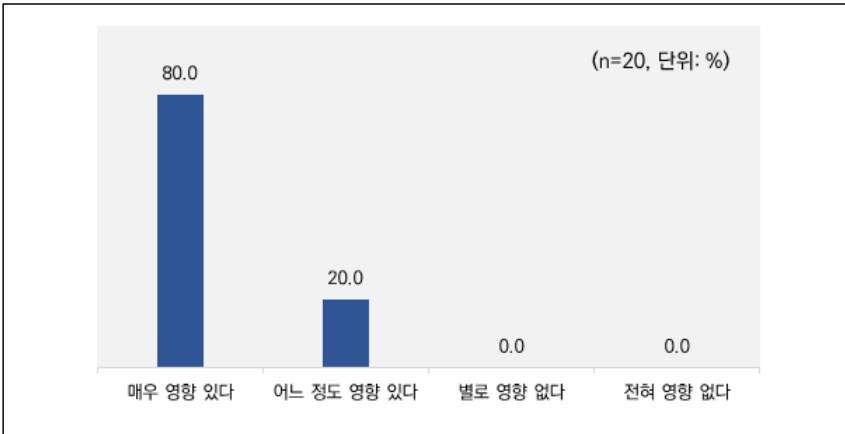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귀하께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귀하가 매입하시는 면세농산물 혹은 중고자동차 등의 매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영향 있다'라는 응답이 80.0%, '어느 정도 영향 있다'라는 응답이 20.0%였다.

[부그림 50]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8〉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매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영향 있다	어느 정도 영향 있다	별로 영향 없다	전혀 영향 없다	평균 ¹⁾
전체		(20)	80.0	20.0	0.0	0.0	3.8
성별	남자	(11)	81.8	18.2	0.0	0.0	3.8
	여자	(9)	77.8	22.2	0.0	0.0	3.8
연령대	30대 이하	(2)	100.0	0.0	0.0	0.0	4.0
	40대	(4)	50.0	50.0	0.0	0.0	3.5
	50대	(11)	81.8	18.2	0.0	0.0	3.8
	60대 이상	(3)	100.0	0.0	0.0	0.0	4.0
권역	서울	(9)	77.8	22.2	0.0	0.0	3.8
	경기/인천	(7)	71.4	28.6	0.0	0.0	3.7
	대전/충청/세종	(1)	100.0	0.0	0.0	0.0	4.0
	광주/전라	(0)	0.0	0.0	0.0	0.0	.
	대구/경북	(0)	0.0	0.0	0.0	0.0	.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100.0	0.0	0.0	0.0	4.0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	100.0	0.0	0.0	0.0	4.0
	고졸	(11)	63.6	36.4	0.0	0.0	3.6
	대졸	(8)	100.0	0.0	0.0	0.0	4.0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1천만원 미만	(6)	66.7	33.3	0.0	0.0	3.7
	1천만~1,400만원 미만	(6)	100.0	0.0	0.0	0.0	4.0
	1,400만~1,800만원 미만	(5)	80.0	20.0	0.0	0.0	3.8
월평균 개인 소득	1,800만원 이상	(3)	66.7	33.3	0.0	0.0	3.7
	900만원 미만	(6)	66.7	33.3	0.0	0.0	3.7
	900만~1,400만원 미만	(6)	100.0	0.0	0.0	0.0	4.0
	1,400만~1,750만원 미만	(4)	75.0	25.0	0.0	0.0	3.8
	1,750만원 이상	(4)	75.0	25.0	0.0	0.0	3.8

주: 1) '전혀 영향 없다' 1~'매우 영향 있다' 4로 하여 산출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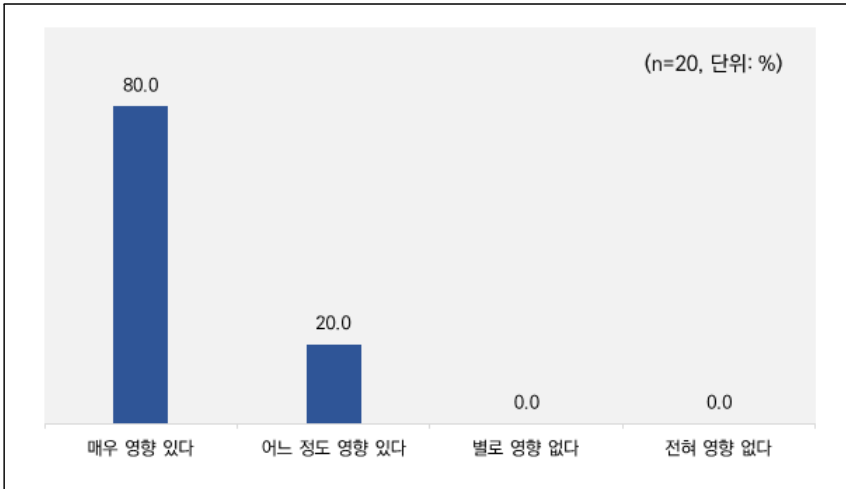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귀하께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귀하가 판매하는 서비스 혹은 제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영향 있다'라는 응답이 80.0%, '어느 정도 영향 있다'라는 응답이 20.0%였다.

[부그림 51]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9〉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영향 있다	어느 정도 영향 있다	별로 영향 없다	전혀 영향 없다	평균 ¹⁾
전체		(20)	80.0	20.0	0.0	0.0	3.8
성별	남자	(11)	81.8	18.2	0.0	0.0	3.8
	여자	(9)	77.8	22.2	0.0	0.0	3.8
연령대	30대 이하	(2)	100.0	0.0	0.0	0.0	4.0
	40대	(4)	50.0	50.0	0.0	0.0	3.5
	50대	(11)	81.8	18.2	0.0	0.0	3.8
	60대 이상	(3)	100.0	0.0	0.0	0.0	4.0
권역	서울	(9)	77.8	22.2	0.0	0.0	3.8
	경기/인천	(7)	71.4	28.6	0.0	0.0	3.7
	대전/충청/세종	(1)	100.0	0.0	0.0	0.0	4.0
	광주/전라	(0)	0.0	0.0	0.0	0.0	.
	대구/경북	(0)	0.0	0.0	0.0	0.0	.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
	강원/제주	(3)	100.0	0.0	0.0	0.0	4.0
최종 학력	초졸	(0)	0.0	0.0	0.0	0.0	.
	중졸	(1)	100.0	0.0	0.0	0.0	4.0
	고졸	(11)	63.6	36.4	0.0	0.0	3.6
	대졸	(8)	100.0	0.0	0.0	0.0	4.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66.7	33.3	0.0	0.0	3.7
	1천만~1,400만원 미만	(6)	100.0	0.0	0.0	0.0	4.0
	1,400만~1,800만원 미만	(5)	80.0	20.0	0.0	0.0	3.8
	1,800만원 이상	(3)	66.7	33.3	0.0	0.0	3.7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66.7	33.3	0.0	0.0	3.7
	900만~1,400만원 미만	(6)	100.0	0.0	0.0	0.0	4.0
	1,400만~1,750만원 미만	(4)	75.0	25.0	0.0	0.0	3.8
	1,750만원 이상	(4)	75.0	25.0	0.0	0.0	3.8

주: 1) '전혀 영향 없다' 1~'매우 영향 있다' 4로 하여 산출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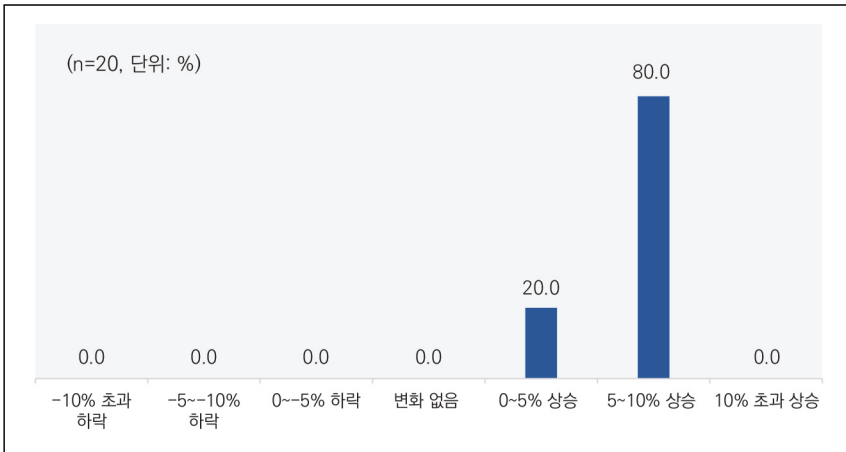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5) 의제매입공제 제도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경우, 의제매입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판매가격(예를 들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음식가격)은 얼마나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의제매입공제 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5~10% 상승'이라는 응답이 80.0%, '0~5% 상승'이라는 응답이 20.0%였다.

[부그림 52] 의제매입공제 제도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0〉 의제매입공제 제도 허용하지 않을 시 판매가격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0% 초과 하락	-5~ -10% 하락	0~ -5% 하락	변화 없음	0~ 5% 상승	5~ 10% 상승	10% 초과 상승
전체		(20)	0.0	0.0	0.0	0.0	20.0	80.0	0.0
성별	남자	(11)	0.0	0.0	0.0	0.0	18.2	81.8	0.0
	여자	(9)	0.0	0.0	0.0	0.0	22.2	77.8	0.0
연령대	30대 이하	(2)	0.0	0.0	0.0	0.0	0.0	100.0	0.0
	40대	(4)	0.0	0.0	0.0	0.0	50.0	50.0	0.0
	50대	(11)	0.0	0.0	0.0	0.0	18.2	81.8	0.0
	60대 이상	(3)	0.0	0.0	0.0	0.0	0.0	100.0	0.0
권역	서울	(9)	0.0	0.0	0.0	0.0	22.2	77.8	0.0
	경기/인천	(7)	0.0	0.0	0.0	0.0	28.6	71.4	0.0
	대전/충청/세종	(1)	0.0	0.0	0.0	0.0	0.0	100.0	0.0
	광주/전라	(0)	0.0	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0)	0.0	0.0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0.0	0.0	0.0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0.0	0.0	0.0	0.0	0.0	100.0	0.0
	초졸	(0)	0.0	0.0	0.0	0.0	0.0	0.0	0.0
	중졸	(1)	0.0	0.0	0.0	0.0	0.0	100.0	0.0
	고졸	(11)	0.0	0.0	0.0	0.0	36.4	63.6	0.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0.0	0.0	0.0	0.0	33.3	66.7	0.0
	1천만~1,400만원 미만	(6)	0.0	0.0	0.0	0.0	0.0	100.0	0.0
	1,400만~1,800만원 미만	(5)	0.0	0.0	0.0	0.0	20.0	80.0	0.0
	1,800만원 이상	(3)	0.0	0.0	0.0	0.0	33.3	66.7	0.0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0.0	0.0	0.0	0.0	33.3	66.7	0.0
	900만~1,400만원 미만	(6)	0.0	0.0	0.0	0.0	0.0	100.0	0.0
	1,400만~1,750만원 미만	(4)	0.0	0.0	0.0	0.0	25.0	75.0	0.0
	1,750만원 이상	(4)	0.0	0.0	0.0	0.0	25.0	7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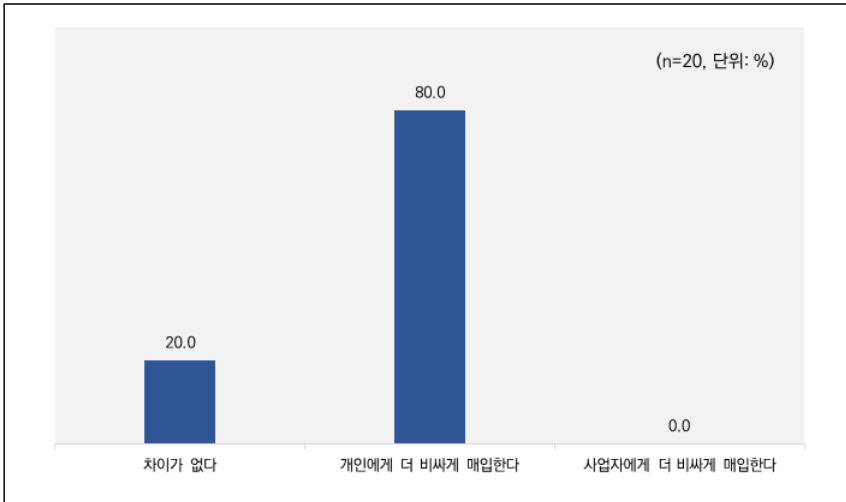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6) 중고자동차 매입 시 개인과 사업자 간에 매입가격 차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간에 매입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 중고자동차 매입 시 개인과 사업자 간에 매입가격 차이에 대해 물었을 때,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한다'라는 응답이 80.0%,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이 20.0%였다.

[부그림 53] 중고자동차 매입 시 개인과 사업자 간에 매입가격 차이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1〉 중고자동차 매입 시 개인과 사업자 간에 매입가격 차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차이가 없다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한다	사업자에게 더 비싸게 매입한다
전체		(20)	20.0	80.0	0.0
성별	남자	(11)	18.2	81.8	0.0
	여자	(9)	22.2	77.8	0.0
연령대	30대 이하	(2)	0.0	100.0	0.0
	40대	(4)	50.0	50.0	0.0
	50대	(11)	18.2	81.8	0.0
	60대 이상	(3)	0.0	100.0	0.0
권역	서울	(9)	22.2	77.8	0.0
	경기/인천	(7)	28.6	71.4	0.0
	대전/충청/세종	(1)	0.0	100.0	0.0
	광주/전라	(0)	0.0	0.0	0.0
	대구/경북	(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강원/제주	(3)	0.0	100.0	0.0
최종 학력	초졸	(0)	0.0	0.0	0.0
	중졸	(1)	0.0	100.0	0.0
	고졸	(11)	36.4	63.6	0.0
	대졸	(8)	0.0	100.0	0.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33.3	66.7	0.0
	1천만~1,400만원 미만	(6)	0.0	100.0	0.0
	1,400만~1,800만원 미만	(5)	20.0	80.0	0.0
	1,800만원 이상	(3)	33.3	66.7	0.0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33.3	66.7	0.0
	900만~1,400만원 미만	(6)	0.0	100.0	0.0
	1,400만~1,750만원 미만	(4)	25.0	75.0	0.0
	1,750만원 이상	(4)	25.0	7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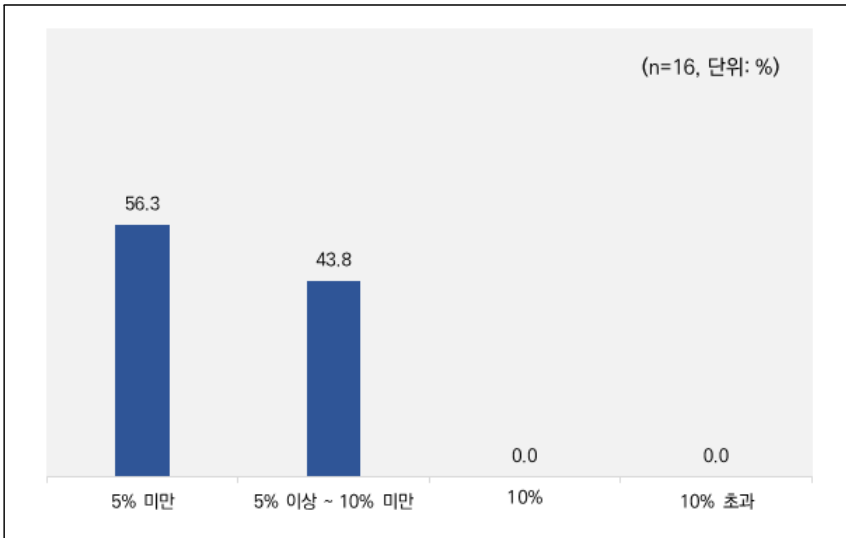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7)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하는 정도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한다’라고 답한 경우)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개인에게 얼마만큼 더 비싸게 매입하십니까?

-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 그 정도에 대해 물었을 때, ‘5% 미만’이라는 응답이 56.3%, ‘5% 이상~10% 미만’이라는 응답이 43.8%였다.

[부그림 54]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하는 정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2〉 개인에게 더 비싸게 매입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5% 미만	5~10% 미만	10%	10% 초과
전체		(16)	56.3	43.8	0.0	0.0
성별	남자	(9)	55.6	44.4	0.0	0.0
	여자	(7)	57.1	42.9	0.0	0.0
연령대	30대 이하	(2)	100.0	0.0	0.0	0.0
	40대	(2)	50.0	50.0	0.0	0.0
	50대	(9)	55.6	44.4	0.0	0.0
	60대 이상	(3)	33.3	66.7	0.0	0.0
권역	서울	(7)	42.9	57.1	0.0	0.0
	경기/인천	(5)	60.0	40.0	0.0	0.0
	대전/충청/세종	(1)	100.0	0.0	0.0	0.0
	광주/전라	(0)	0.0	0.0	0.0	0.0
	대구/경북	(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강원/제주	(3)	66.7	33.3	0.0	0.0
최종 학력	초졸	(0)	0.0	0.0	0.0	0.0
	중졸	(1)	100.0	0.0	0.0	0.0
	고졸	(7)	71.4	28.6	0.0	0.0
	대졸	(8)	37.5	62.5	0.0	0.0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4)	50.0	50.0	0.0	0.0
	1천만~1,400만원 미만	(6)	83.3	16.7	0.0	0.0
	1,400만~1,800만원 미만	(4)	25.0	75.0	0.0	0.0
	1,800만원 이상	(2)	50.0	50.0	0.0	0.0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4)	50.0	50.0	0.0	0.0
	900만~1,400만원 미만	(6)	83.3	16.7	0.0	0.0
	1,400만~1,750만원 미만	(3)	33.3	66.7	0.0	0.0
	1,750만원 이상	(3)	33.3	66.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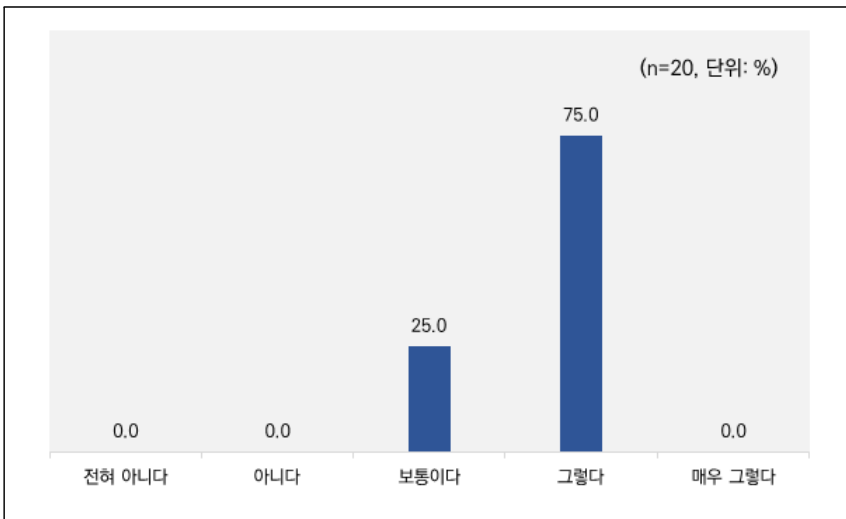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시행으로 업계에 현금영수증 발급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이 75.0%,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5.0%였다.

[부그림 5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¹⁾
전체		(20)	0.0	0.0	25.0	75.0	0.0	3.8
성별	남자	(11)	0.0	0.0	27.3	72.7	0.0	3.7
	여자	(9)	0.0	0.0	22.2	77.8	0.0	3.8
연령대	30대 이하	(2)	0.0	0.0	50.0	50.0	0.0	3.5
	40대	(4)	0.0	0.0	25.0	75.0	0.0	3.8
	50대	(11)	0.0	0.0	27.3	72.7	0.0	3.7
	60대 이상	(3)	0.0	0.0	0.0	100.0	0.0	4.0
권역	서울	(9)	0.0	0.0	22.2	77.8	0.0	3.8
	경기/인천	(7)	0.0	0.0	28.6	71.4	0.0	3.7
	대전/충청/세종	(1)	0.0	0.0	100.0	0.0	0.0	3.0
	광주/전라	(0)	0.0	0.0	0.0	0.0	0.0	.
	대구/경북	(0)	0.0	0.0	0.0	0.0	0.0	.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0.0	.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0.0	0.0	0.0	100.0	0.0	4.0
	초졸	(0)	0.0	0.0	0.0	0.0	0.0	.
	중졸	(1)	0.0	0.0	0.0	100.0	0.0	4.0
	고졸	(11)	0.0	0.0	36.4	63.6	0.0	3.6
	대졸	(8)	0.0	0.0	12.5	87.5	0.0	3.9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0.0	.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0.0	0.0	0.0	100.0	0.0	4.0
	1천만~1,400만원 미만	(6)	0.0	0.0	50.0	50.0	0.0	3.5
	1,400만~1,800만원 미만	(5)	0.0	0.0	20.0	80.0	0.0	3.8
	1,800만원 이상	(3)	0.0	0.0	33.3	66.7	0.0	3.7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0.0	0.0	16.7	83.3	0.0	3.8
	900만~1,400만원 미만	(6)	0.0	0.0	33.3	66.7	0.0	3.7
	1,400만~1,750만원 미만	(4)	0.0	0.0	25.0	75.0	0.0	3.8
	1,750만원 이상	(4)	0.0	0.0	25.0	75.0	0.0	3.8

주: 1) '전혀 아니다' 1~'매우 그렇다' 5로 하여 산출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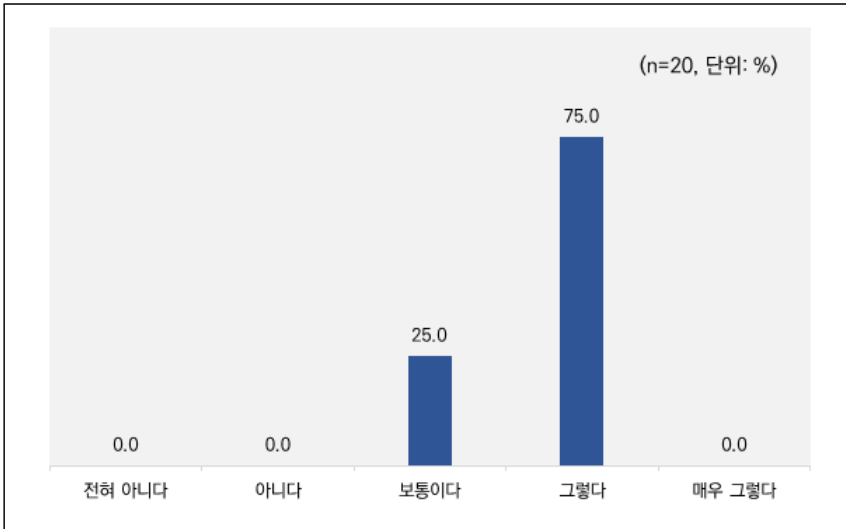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9) 매출신고 축소사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매출신고 축소사례가 줄어드는 등 거래 관행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거래 관행이 투명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이 75.0%,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5.0%였다.

[부그림 56] 매출신고 축소사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4〉 매출신고 축소사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¹⁾
전체		(20)	0.0	0.0	25.0	75.0	0.0	3.8
성별	남자	(11)	0.0	0.0	27.3	72.7	0.0	3.7
	여자	(9)	0.0	0.0	22.2	77.8	0.0	3.8
연령대	30대 이하	(2)	0.0	0.0	50.0	50.0	0.0	3.5
	40대	(4)	0.0	0.0	25.0	75.0	0.0	3.8
	50대	(11)	0.0	0.0	27.3	72.7	0.0	3.7
	60대 이상	(3)	0.0	0.0	0.0	100.0	0.0	4.0
권역	서울	(9)	0.0	0.0	22.2	77.8	0.0	3.8
	경기/인천	(7)	0.0	0.0	28.6	71.4	0.0	3.7
	대전/충청/세종	(1)	0.0	0.0	100.0	0.0	0.0	3.0
	광주/전라	(0)	0.0	0.0	0.0	0.0	0.0	.
	대구/경북	(0)	0.0	0.0	0.0	0.0	0.0	.
	부산/울산/경남	(0)	0.0	0.0	0.0	0.0	0.0	.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0.0	0.0	0.0	100.0	0.0	4.0
	초졸	(0)	0.0	0.0	0.0	0.0	0.0	.
	중졸	(1)	0.0	0.0	0.0	100.0	0.0	4.0
	고졸	(11)	0.0	0.0	36.4	63.6	0.0	3.6
	대졸	(8)	0.0	0.0	12.5	87.5	0.0	3.9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0.0	0.0	0.0	0.0	0.0	.
	1천만원 미만	(6)	0.0	0.0	0.0	100.0	0.0	4.0
	1천만~1,400만원 미만	(6)	0.0	0.0	50.0	50.0	0.0	3.5
	1,400만~1,800만원 미만	(5)	0.0	0.0	20.0	80.0	0.0	3.8
월평균 개인 소득	1,800만원 이상	(3)	0.0	0.0	33.3	66.7	0.0	3.7
	900만원 미만	(6)	0.0	0.0	16.7	83.3	0.0	3.8
	900만~1,400만원 미만	(6)	0.0	0.0	33.3	66.7	0.0	3.7
	1,400만~1,750만원 미만	(4)	0.0	0.0	25.0	75.0	0.0	3.8
	1,750만원 이상	(4)	0.0	0.0	25.0	75.0	0.0	3.8

주: 1) '전혀 아니다' 1~'매우 그렇다' 5로 하여 산출한 평균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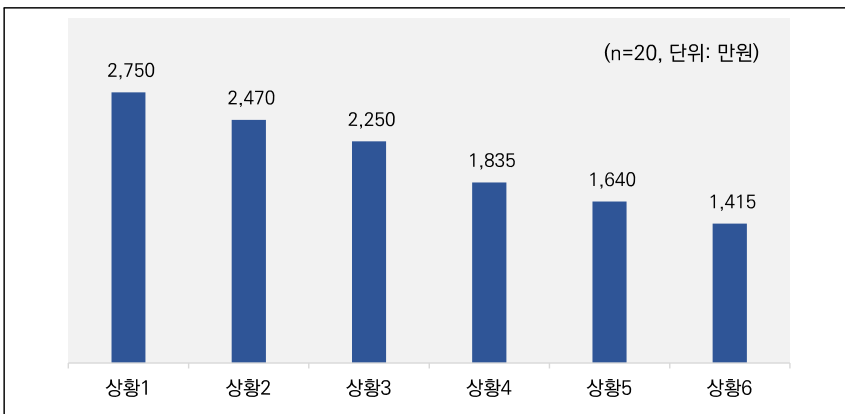
30-1)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A원에 매입하여, B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본 상황에 더해 몇 가지 다른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상황 3을 예로 들면, 상품 매입 가격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승한 경우, 귀하께서는 이제 얼마에 판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의 상황에 대해 판매금액 B에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구분	매입(A)	판매(B)	부가가치세 납부
기본 1	1,000만	2,000만	100만원
상황 1	1,300만		매입세액은 130만원
상황 2	1,200만		매입세액은 120만원
상황 3	1,100만		매입세액은 110만원
상황 4	900만		매입세액은 90만원
상황 5	800만		매입세액은 80만원
상황 6	700만		매입세액은 70만원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각 매입가격에 대한 판매가격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상황 1'은 2,750만원, '상황 2'(2,470만원), '상황 3'(2,250만원), '상황 4'(1,835만원), '상황 5'(1,640만원), '상황 6'(1,41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57]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5〉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상황

(단위: 명, 원)

구분		사례 수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6
전체		(20)	2,750	2,470	2,250	1,835	1,640	1,415
성별	남자	(11)	2,791	2,509	2,273	1,864	1,664	1,427
	여자	(9)	2,700	2,422	2,222	1,800	1,611	1,400
연령대	30대 이하	(2)	2,350	2,150	1,950	1,650	1,450	1,250
	40대	(4)	2,675	2,475	2,250	1,850	1,650	1,425
	50대	(11)	2,836	2,555	2,327	1,891	1,691	1,464
	60대 이상	(3)	2,800	2,367	2,167	1,733	1,567	1,333
권역	서울	(9)	2,711	2,411	2,200	1,789	1,600	1,378
	경기/인천	(7)	2,843	2,557	2,314	1,886	1,686	1,457
	대전/충청/세종	(1)	2,400	2,200	2,000	1,700	1,500	1,300
	광주/전라	(0)
	대구/경북	(0)
	부산/울산/경남	(0)
	강원/제주	(3)	2,767	2,533	2,333	1,900	1,700	1,467
최종 학력	초졸	(0)
	중졸	(1)	3,100	2,800	2,600	2,100	1,900	1,600
	고졸	(11)	2,764	2,436	2,209	1,809	1,618	1,400
	대졸	(8)	2,688	2,475	2,263	1,838	1,638	1,413
	대학원 졸업 이상	(0)
월평균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6)	2,733	2,517	2,300	1,867	1,667	1,433
	1천만~1,400만원 미만	(6)	2,650	2,317	2,117	1,717	1,533	1,333
	1,400만~1,800만원 미만	(5)	2,620	2,300	2,080	1,720	1,540	1,320
	1,800만원 이상	(3)	3,200	2,967	2,700	2,200	1,967	1,700
월평균 개인 소득	900만원 미만	(6)	2,833	2,483	2,267	1,833	1,650	1,417
	900만~1,400만원 미만	(6)	2,550	2,350	2,150	1,750	1,550	1,350
	1,400만~1,750만원 미만	(4)	2,475	2,125	1,925	1,600	1,425	1,225
	1,750만원 이상	(4)	3,200	2,975	2,700	2,200	1,975	1,7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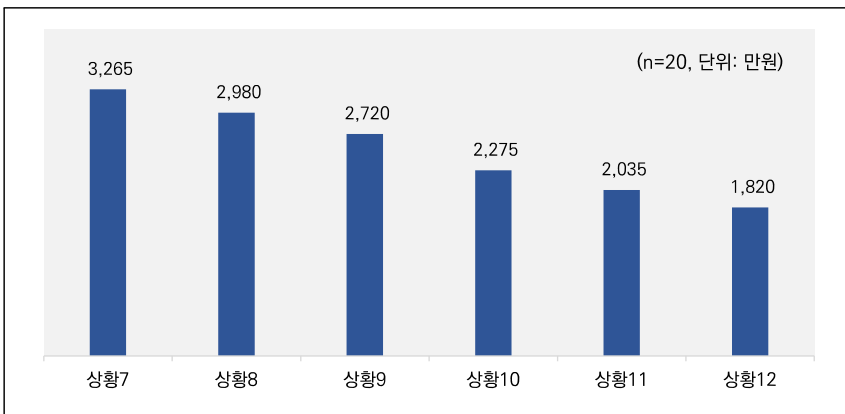
30-2)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상황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A원에 매입하여, B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본 상황에 더해 몇 가지 다른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상황 3을 예로 들면, 상품 매입 가격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승한 경우, 귀하께서는 이제 얼마에 판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의 상황에 대해 판매금액 B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매입(A)	판매(B)	부가가치세 납부
기본 2	1,000만	2,000만	200만원
상황 7	1,300만		매입세액은 0원
상황 8	1,200만		매입세액은 0원
상황 9	1,100만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0	900만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1	800만		매입세액은 0원
상황 12	700만		매입세액은 0원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매입가격에 대한 판매가격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상황 7'은 3,265만원, '상황 8'(2,980만원), '상황 9'(2,720만원), '상황 10'(2,275만원), '상황 11'(2,035만원), '상황 12'(1,8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 58]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상황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6〉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상황

(단위: 명, 원)

구분		사례 수	상황 7	상황 8	상황 9	상황 10	상황 11	상황 12
전체		(20)	3,265	2,980	2,720	2,275	2,035	1,820
성별	남자	(11)	3,300	3,036	2,736	2,309	2,073	1,818
	여자	(9)	3,222	2,911	2,700	2,233	1,989	1,822
연령대	30대 이하	(2)	2,750	2,700	2,400	2,050	1,850	1,650
	40대	(4)	3,200	3,025	2,725	2,275	2,075	1,850
	50대	(11)	3,373	3,073	2,809	2,364	2,091	1,864
	60대 이상	(3)	3,300	2,767	2,600	2,100	1,900	1,733
권역	서울	(9)	3,233	2,900	2,667	2,200	1,989	1,800
	경기/인천	(7)	3,386	3,129	2,814	2,371	2,114	1,843
	대전/충청/세종	(1)	2,900	2,700	2,500	2,100	1,900	1,700
	광주/전라	(0)
	대구/경북	(0)
	부산/울산/경남	(0)
최종 학력	강원/제주	(3)	3,200	2,967	2,733	2,333	2,033	1,867
	초졸	(0)
	중졸	(1)	3,600	3,100	2,900	2,400	2,100	2,000
	고졸	(11)	3,300	2,982	2,700	2,273	2,036	1,809
	대졸	(8)	3,175	2,963	2,725	2,263	2,025	1,813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0)
	1천만원 미만	(6)	3,283	3,017	2,767	2,283	2,050	1,850
	1천만~1,400만원 미만	(6)	3,100	2,833	2,583	2,167	1,933	1,733
	1,400만~1,800만원 미만	(5)	3,120	2,800	2,540	2,140	1,960	1,740
월평균 개인 소득	1,800만원 이상	(3)	3,800	3,500	3,200	2,700	2,333	2,067
	900만원 미만	(6)	3,367	2,967	2,733	2,250	2,033	1,833
	900만~1,400만원 미만	(6)	3,017	2,883	2,617	2,200	1,950	1,750
	1,400만~1,750만원 미만	(4)	2,950	2,600	2,375	2,000	1,825	1,650
	1,750만원 이상	(4)	3,800	3,525	3,200	2,700	2,375	2,075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다운 · 정재호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한다. 기존에 수많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도입, 공제율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부가가치세 실제 신고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사업체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제도 적용에 따른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행태를 살펴본 결과, 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추게 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제도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공제율 및 한도의 조정을 통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에 대한 명확한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부 혜택을 얻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공제율 및 한도 조정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확인할 수 없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린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의 예외 조항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제율의 적용은 단순할 필요가 있고 공제율의 변화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공제 한도를 역시 변화를 최소화하고 단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따른 중복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Impact evaluation of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system

Dawoon Jung and Jaeho Cheung

This study reviews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system in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regarding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system by touching on the parts that have never been discussed before. We study the impact of an introduction of the limits on deduction and a change in the deduction rate on the business owners' behavioral responses and the pass-through impact of the cost on consumers. We use micro-level VAT tax panel data provided by National Tax Service to estimate the business entity fixed effec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system reduce the cost pass-through. Given that the businesses are applied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we do not find the significant impact of an introduction of the limits on deduction and a change in the deduction rate on the business owners' behavioral responses. Consumers benefited from an introduction of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system, but the impact of an introduction of the limits on deduction and a change in the deduction rate is limited for consumers as well. Th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empirical results are a transition from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to the normal VAT system would lead to

additional burden for consumers. If we agree on maintaining the current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system, the deduction rate should be simple and the frequent change in the deduction rate needs to be restrained. In addition, a change in the limits on deduction needs to be restrained as well. The simple management of the tax system could minimiz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and the economic distortions.

저자약력

정다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학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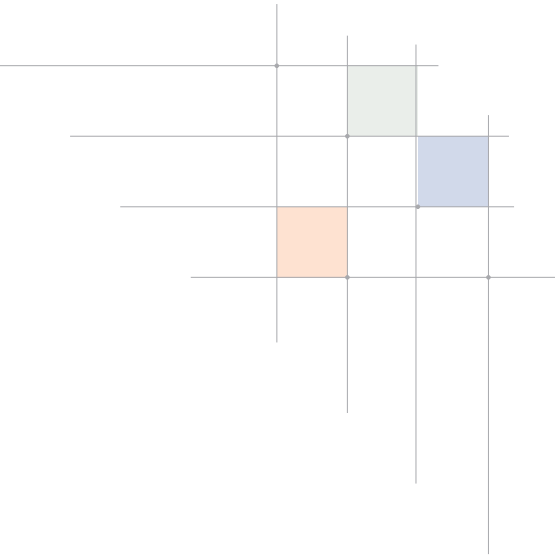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2-0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발행	행	2022년 12월 30일
저자	자	정다운 · 정재호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t.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18,000원
조판 및 인쇄	쇄	고려씨엔피
I S B N		979-11-6655-184-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9 791166 551840
ISBN 979-11-6655-184-0